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Grooming in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and
Future Policy Responses

윤정숙·이태헌·김현숙

최근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잠재적 피해자를 길들이는 그루밍(grooming) 성범죄가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은 행위의 부적절성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인지되지 못해 성추행을 더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들며, 피해자 측에서는 신뢰관계로 인정한 채 유인되는 경우가 많아 성폭행 결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서 나타나는 그루밍은 온라인 성범죄의 수법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미디어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으나 최근에 나타난 신종 범죄 수법이 아닌 전통적인 접촉형 아동 성범죄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성범죄 연구가 성범죄 행위의 결과에 집중되어 있어 범죄 이전의 과정 속에서 은밀히 존재하였던 그루밍에 대해서는 학계의 관심이 부족하였다고 보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그루밍 관련한 연구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어 성범죄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법들에 대해 주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성범죄의 사전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루밍에 대한 법적 논의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루밍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이에 대한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그루밍이라는 용어도 법적 용어가 아니어서 현행법에서 규제의 대상행위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서 가출 청소년의 궁박함을 이용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계기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그루밍 행위도 많기 때문에 대응방안이 더욱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에 최근 그 개념이 도입되어 아직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의 세부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그루밍 성범죄 연구와 관련 정책 마련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ii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됩니다.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에서 그루밍 관련 형사처벌 규정 및 적용의 예들을 확인한 결과, 많은 국가들이 그루밍을 성인이 의도적으로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하는 행위로 범죄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아동 성범죄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이 단시간에 일어나는 짧은 일회성의 과정만이 아닌 그루밍이라는 신뢰의 오용과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형사사법당국은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수사재판기록조사를 위해 자료를 제공해 주었던 전국의 검찰청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공동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이태현 교수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김현숙 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정리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은 최은진, 권도영 인턴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9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위원 윤정숙



목 차

국문요약 1

제1부

서 론 5

제1장 윤정숙

서 론 7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0

제2장 윤정숙·김현숙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의 개념 15

제2절 성적 그루밍의 특징 16

제3절 그루밍의 유형 18

1. 맥락에 의한 분류 18

2. 피해 대상에 의한 분류 18

3. 방식에 의한 분류 19

제4절 그루밍 피해자의 특성 20

제5절 그루밍 단계 21

제3장 윤정숙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나타난 그루밍 사례 23

제1절 오프라인 그루밍 25

1. 태권도장 관장에 의한 그루밍 사건: K-SORAS 14점의 고위험군 25
2. 아버지의 후배에 의한 그루밍 사건: 피해자와 연인관계임을 주장하는 가해자 27
3. 선생님의 잘못된 가르침: 국악 선생님과 그 제자들 28
4. 친족관계에 의한 그루밍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30

제2절 온라인상의 그루밍 31

1.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음란물 유포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그루밍 31
2. 성노예가 된 피해자의 자살: 왜곡된 성적 성향이 불러온 참사 32
3. 게임 상의 부부: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한 그루밍 33

제2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그루밍의 특성 및 유형 분석 35

제1장 윤정숙

그루밍 사건의 특성 연구방법 37

제2장 이태헌·윤정숙

기술 통계 분석 43

제1절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 분석 45

1. 그루밍 성범죄 유형별 사례 수 45

제2절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분석	46
1.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수	46
2.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47
3.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48
4. 성범죄 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지 차이	51
5.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51
6.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폭력 지속기간	52
7. 성범죄 유형에 따른 그루밍 지속기간	54
8. 그루밍 범죄여부에 따른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	54
제3절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55
1. 가해자의 성폭력 전과이력	55
2. 그루밍 유형과 가해자의 최종학력의 관계	56
3. 그루밍 유형과 가해자의 혼인상태	56
4. 그루밍 유형과 가해자의 직업	57
5. 그루밍 유형과 가해자의 정신질환력	58
제4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특성	58
1. 그루밍 유형과 피해자의 동거인 유형	58
2. 그루밍 유형과 피해자의 범행 시 음주상태	59

제3장 이태헌

잠재 계층 분석	61
----------------	----

제1절 잠재 계층 분석 소개	63
제2절 연구 방법	63
1. 전체 분석 과정	63
2. 주요 변수 선정	64
3. 자료의 특성 확인	64
제3절 연구 결과	66
1. 잠재 계층모형 적합도 비교	66
2. 잠재 계층이 2개인 잠재 계층모형	66
3. 잠재 계층이 4개인 잠재 계층모형	72
4. 최종 잠재 계층모형 선택	79

제3부

그루밍 관련 해외법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81

제1장 김현숙

국내의 처벌규정 도입 논의 83

제2장 김현숙

해외의 입법과 처벌사례 분석 89

제1절 성적 그루밍의 범죄화 논의 91

제2절 주요국의 관련 법제 및 판례 91

1. 영국 91

2. 네덜란드 97

3. 오스트레일리아 102

4. 미국 107

5. 기타 110

제3장 김현숙

소결 - 우리나라에서의 대응방안과 한계 117

제4부 윤정숙

결 론 123

참고문헌 131

Abstract 137

부 록 143

[부록] 수사재판기록조사표 143

표 차례

[표 2-1-1] 수사재판기록 조사 기관	40
[표 2-2-1] 수사재판기록 사례 수	46
[표 2-2-2]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수	46
[표 2-2-3]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 성별	47
[표 2-2-4]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교차빈도	48
[표 2-2-5]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연령	48
[표 2-2-6]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연령	49
[표 2-2-7]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차	50
[표 2-2-8] 성범죄 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지	51
[표 2-2-9]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52
[표 2-2-1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폭력 지속기간	53
[표 2-2-11] 성범죄 유형에 따른 그루밍 지속기간	54
[표 2-2-12] 그루밍 범죄여부와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의 관계	55
[표 2-2-13] 가해자의 성폭력 전과이력	56
[표 2-2-14] 그루밍 유형과 가해자의 최종학력의 관계	56
[표 2-2-15]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혼인상태	57
[표 2-2-16]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직업	57
[표 2-2-17]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정신질환력	58
[표 2-2-18]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동거인 유형	59
[표 2-2-19]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범행시 음주상태	60
[표 2-3-1] 전체 자료 응답 패턴	64
[표 2-3-2] 잠재 계층모형 모형 적합도	66
[표 2-3-3] 잠재 계층이 2개인 잠재 계층모형의 응답 패턴	67
[표 2-3-4] 잠재 계층이 4개인 잠재 계층모형의 응답 패턴	72



그림 차례

[그림 2-2-1]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수 분포	46
[그림 2-2-2]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연령	49
[그림 2-2-3]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연령	50
[그림 2-3-1]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	68
[그림 2-3-2]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 범행 발생지	68
[그림 2-3-3]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1단계_욕구 파악	69
[그림 2-3-4]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1단계_취약성 파악	69
[그림 2-3-5]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2~6단계	70
[그림 2-3-6]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71
[그림 2-3-7]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	73
[그림 2-3-8]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범행 발생지	74
[그림 2-3-9]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1단계_욕구 파악	75
[그림 2-3-10]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1단계_취약성 파악	76
[그림 2-3-11]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2~6단계	77
[그림 2-3-12]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78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은 잠재적 성학대 행위자가 아동의 신뢰를 얻어 성학대에 복종케 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적 그루밍은 1) 피해자 선택 및 관계 형성 단계 2) 비밀유지나 고립하기 등의 배타성 단계 3) 성적 단계 4)관계 유지를 위한 통제의 과정으로 발생한다. 특히, 성적단계에서 가해자는 (1) 아동과의 사이를 전형적으로 ‘연애’ 관계의 틀 내에서 부드럽게 형성하거나 (2) 아동을 음란물에 노출시키거나 아동의 이미지를 보내거나 요청함으로써 억제력을 감소시키거나 (3) 아동이 환상에 동참하도록 격려하여 상호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강압적인 혹은 공격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환상을 재강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그루밍 관련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수사재판기록을 조사하여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심리적 요인, 피해자 관련 요인, 성적 그루밍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일반 성범죄와 오프라인 성범죄, 온라인 성범죄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탐색해 볼 때,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하였다. 먼저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가지고 있고, 가해자 연령은 다소 젊은 경향을 보였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자와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간의 차이가 적었다.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 41명 중 결혼(재혼)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해자는 20명(47.6%)이었다. 이는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중 1명(8.3%)만이 기혼자이고, 일반 성범죄자 중 15명(27.8%)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직업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 성범죄자는 상대적으로 무직(53.7%)의 비율이 높은 반면,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모든 항목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범죄 지속 기간에서 세 가지 유형이 차이를 보였는데, 2일 이상 지속되는 오프라

2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인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의 약 4배 수준으로 많았고, 온라인 그루밍은 일반 성범죄의 약 3배 수준으로, 신뢰의 오용과 조종을 통한 지속적 성폭력은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에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지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긴 경우 친족관계 성폭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루밍 성범죄만을 놓고 볼 때 오프라인 그루밍의 경우 3년 이상의 그루밍 기간을 가진 사건의 비율은 40.4%로, 구체적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19.0%), 5년 이상(21.4%)으로 나타나, 온라인 그루밍에 비해 장기적으로 그루밍이 지속된 사건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온라인 그루밍에서는 1달 이상 3달 미만의 그루밍 지속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41.7%였다. 오프라인 그루밍이 성범죄 피해의 정도가 가장 심각하게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각 성범죄 유형 별 피해자의 동거인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오프라인 그루밍 피해자(86.1%)와 일반 성범죄 피해자(91.5%)의 대다수가 친족관계와 거주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들은 35.7%가 친족 관계는 물론 친족 관계 외의 보호자도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가출상태, 또래끼리 모여 사는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각 성범죄 유형 별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그루밍에서의 피해자 음주상태(26.7%)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가 가출, 자취 등 보호자가 없는 거주 환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속해 있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는 O'Connell(2003)과 Williams, Elliott, Beech (2013)가 지적하였듯이 아동이 삶에서 그들을 지지해주거나 수용해주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즐기거나 감정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 등 보호자가 부재한 상태에 처해진 청소년들이 온라인 그루밍에 더 노출되어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조사한 사건들을 잠재 계층 분석한 결과, 2개의 잠재 계층이 일반 성범죄와 그루밍 성범죄를 구분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4개의 잠재 계층은 일반 성범죄 사건과 그루밍 성범죄 사건을 구분할 뿐 아니라 그루밍 성범죄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4개의 잠재 계층을 설정한 모형을 최종 채택하고, 각 잠재 계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분석하고 명명하였다. 잠재 계층이 4개인 모형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가 적었고, 대부분 비면식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저연령이라는 취약점 파악을 하였다

는 점을 제외하면 가해자가 그루밍 단계를 거의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루밍 단계의 대부분이 시행되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의 과반수는 면식 관계, 일부는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였다.

그루밍 성범죄 집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먼저 [전형적 그루밍 유형]은 그루밍 과정 1단계 욕구파악으로 주로 진로(43.4%)와 성적 호기심(21.7%), 취미, 관심사, 종교 등에 관해 피해자가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해자 직업의 과반수가 학교/학원/보육원(53.9%)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가해자는 그루밍 과정 6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행하여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패턴을 보였다. 즉, 이 유형은 성적 호기심과 진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적장애, 외로움 등의 취약성을 지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집단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대다수 가족관계(75.3%)인 사건은 [유사 그루밍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경우 가해자가 방임(17.4%), 폭력 상황(8.7%) 혹은 지적장애(17.3%)를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파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욕구파악을 하는 경향성은 거의 없었으며 유사하게 신뢰 얻거나 욕구 충족 단계도 다른 그루밍 범죄 계층에 비해 적게 시행하였다. 대신 이 유형의 가해자는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거나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하였다.

[온라인 그루밍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가해자의 경우 가출(58.8%), 빈곤(49.3%), 폭력(17.4%), 방임(17.3%), 외로움(11.8%)을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파악하였다. 즉 이에 해당하는 가해자는 온라인에서 가출 혹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의 아동·청소년 혹은 폭력, 방임, 외로움 등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가해자는 욕구 파악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아동·청소년의 신뢰 얻기, 욕구 충족 등의 단계를 높은 수준으로 시행하였고,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거나 통제를 유지하는 경향성은 다른 그루밍 범죄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에서 그루밍 관련 형사처벌 규정 및 적용의 예들을 확인한 결과, 많은 국가들이 그루밍을 성인이 의도적으로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하는 행위로 범죄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성범죄의

4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고의를 가지고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현행법을 개정하여 성적 목적으로 아동과 접촉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범죄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입법안이 성적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보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여 영국형 그루밍처벌 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그루밍 행위를 찾을 수 있는 '합정수사(또는 위장수사)'기법을 제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그루밍 사건들은 지속기간이 몇 년 이상인 것이 상당하였다. 오랜 기간의 성적 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그루밍'이라는 과정을 '범죄화'하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은 요원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데이터 수집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그루밍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과 기소, 그리고 양형선고 및 가해자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등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기관적 협력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제 1 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서 론

제 1 장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서 론

윤 정 숙

제1절 | 연구목적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인천의 한 목사가 8년간 중고등학생 신도 20여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선물을 사주거나 고민을 상담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수법을 사용하여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대상의 성범죄에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착취·유인하기에 유리한 직업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계층(예: 종교지도자, 교사, 스포츠코치 등)에서 빈번히 있어왔고,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서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목표로 하는 성인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잠재적 피해자를 길들이는 그루밍은 행위의 부적절성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인지되지 못해 성추행을 더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들며, 피해자 측에서는 신뢰관계로 인지한 채 유인되는 경우가 많아 성폭행 결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그루밍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수법들을 분석하여 보다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서 나타나는 그루밍은 최근 온라인 성범죄의 수법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미디어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으나, 최근에 나타난 신종 범죄

10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수법이 아닌 전통적인 접촉형 아동 성범죄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다만, 그동안 성범죄 연구가 성범죄 행위의 결과에 집중되어 있어 범죄 이전의 과정 속에서 은밀히 존재하였던 그루밍에 대해서는 학계의 관심이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다행히도 최근 그루밍 관련한 연구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어 성범죄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법들에 대해 주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성범죄의 사전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루밍에 대한 법적 논의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영국 성범죄법(2003년) 제 15조에서는 18세 이상의 사람이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적어도 두 번(전화나 인터넷 포함) 이상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소통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루밍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이에 대한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그루밍이라는 용어도 법적 용어가 아니어서 현행법에서 규제의 대상행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출 청소년의 궁박함을 이용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계기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그루밍 행위도 많기 때문에 대응방안이 더욱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의 기본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고 이를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규제방식에 대한 논의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본 연구가 착수되었다.

제2절 |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그루밍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진 접촉형 성범죄의 그루밍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그루밍 성범죄 가·피해자 관련 특성 파악과 성범죄 범행 이전에 사용된 그루밍 수법 및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루밍을 행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

을 비교하여 그루밍 성범죄자들의 고유한 특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그루밍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형사정책적 개입을 위한 국내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주요국의 법제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입법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추진방법으로는 첫째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에는 그루밍 관련 문헌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국외의 그루밍 관련 학술논문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그루밍의 개념 및 측정관련 이슈나 그루밍의 단계에 관련한 선행연구, 그루밍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그루밍 관련 기초적 특성 파악을 위해 수사재판기록 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사 및 재판 기록 분석을 통해 그루밍 과정을 탐색하고 그루밍 성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과 그루밍 수법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선행연구 검토

윤정숙·김현숙

제1절 | 성적 그루밍(sexual grooming)의 개념

그루밍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몸을 치장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화장이나 손톱손질, 털손질 따위로 몸을 관리하는 것¹⁾'을 말하며, '손질하다', '다듬다', '대비시키다'²⁾와 같은 의미를 가진 'groom'의 파생형이다. 주로 고양이, 강아지, 말과 같은 애완동물들의 털을 고르고 기른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최근에는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그루밍족)이나 아동 성범죄자들이 신뢰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성적(性的) 그루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그루밍을 특히 아동 성범죄에 초점을 맞춰 성적 그루밍의 의미로 부르기로 하겠다.

아동 성범죄로서 그루밍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명확하지 않으나, 1995년에 Anna C. Salter라는 학자가 발표한 "Transforming Trauma: A Guide to Understanding and Treating Adult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라는 책에서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강조·사용되었다고 한다. Salter에 따르면 그루밍이란 학대자가 아이를 좀 더 쉽게 성적으로 학대할 수 있으면서 오히려 범죄 상황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성은 낮아지도록 교묘하게 조종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그루밍을 감정적인 유혹(emotional seduction)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Salter가 이 책을 출간한 후 인터넷 등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한 그루밍은

1) 네이버 국어사전(ko.dict.naver.com/#/entry/koko/c1ee11b590ad45de8b30979be64b0072)(2020.1.3. 최종검색)
2) 네이버 영어사전(en.dict.naver.com/#/entry/enko/d0d5a942062e4c7499eef74621e551c)(2020.1.3. 최종검색)

16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급속도로 그 세를 키웠고, 이에 학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아동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성적 그루밍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저서로는 2009년 Suzanne Ost가 출간한 “Child Pornography and Sexual Grooming”과 2012년 Anne-Marie McAlinden의 “Grooming and the Sexual Abuse of Children-Institutional, Internet, and Familial Dimensions”가 있다.

아동 성착취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유럽조약회(Council of Europe's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는 그루밍을 “아동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성적 학대의 준비”라고 정의하고 있다(McAlinden, 2012에서 재인용). 또한 Gillespie(2001)는 “잠재적 성학대 행위자가 아동의 신뢰를 얻어 아동에게 학대행위에 복종하게 하는 시도로 아동과 친밀해지는 과정”으로 정의하여 그루밍 과정에서 ‘신뢰(Trust)’가 핵심적 역할을 함을 강조하고 있다(McAlinden, 2012에서 재인용).

Craven, Brown, Gilchrist(2007)는 그루밍을 학대의 직접적 피해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성인 및 환경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들의 순응과 신뢰를 얻어내어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Craven 등의 정의에서는 그루밍에서 직접적 피해자인 아동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의 중요한 성인(예: 아동의 부모나 동거 친척 등)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2절 | 성적 그루밍의 특징

초기에 성적 그루밍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범해진다’는 특징에 주목하였다. 2000년대 초 만해도 온라인 채팅 앱 등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여서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루밍이 더 많았다. 가해자는 친근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서 피해자들이 마주치기 쉬운 환경에 있었으며, 이 때문에 아이들과 교류할 때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2015년 미국 법무부의 발간 자료(OJJDP)

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의 90% 이상이 자신의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³⁾고 하였고, 영국의 내무부(Home Office)의 자료에 따르면 94건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48%가 가족이거나 친척, 20%가 가족의 친구 또는 이웃, 15%가 전문직으로 청소년 상담사, 교사, 의사 등⁴⁾ 이었다고 한다.

2008년 미국 OJJDP(소년 사법 및 비행예방국,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에서 실시한 전국 아동의 폭력에의 노출조사(The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NatSCEV)에서는 온라인 아동폭력피해와 오프라인에서의 삶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예로 온라인에서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96%가 같은 기간에 오프라인에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답하였다. 즉, 최근까지는 주로 피해자-가해자간의 온라인-오프라인의 연관성 및 관계에 주목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피해는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이들이 범죄에 더 노출될 수 있도록 취약성을 띠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왔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성적인 학대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루밍을 주장하기가 어렵고, 설령 그루밍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성적인 의도 또는 고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동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성적 그루밍에 범죄행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동에 대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그들과 친밀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자신들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면서 본래 안전한 관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공유하지 못하게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조금씩 가해자들의 성적인 행동을 용인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교묘한 의사소통 전략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내용, 스타일, 지속시간, 밀접도에 따라 성적 그루밍이 성범죄로 발전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종종 범인의

3) David Finkelhor, Heather Turner, Anne Shattuck, SHerry Hamby, and Cristen Kracke,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2015.9., (ojjdp.ojp.gov/sites/g/files/xyckuh176/files/pubs/248547.pdf)

4) Anne-Marie McAlinden, "The Shaming of Sexual Offenders - Risk, Retribution and Reintegration", Hart Publishing, 2007, p.189, Note 18.(Davis et al, "An Assessment of the Admissibility and Sufficiency of Evidence in Child Abuse Prosecutions", A Report for the Home Office by the Department of Law, University of Bristol, 1999를 인용)

성격이나 행동이 반영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성적 그루밍은 각각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관계와 범위를 떨어뜨려 놓고 판단할 수 없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제3절 | 그루밍의 유형

1. 맥락에 의한 분류

그루밍의 유형으로는 우선 발생 맥락에 따라 가족 내(intra-familial) 그루밍과 가족 외(extra-familial) 그루밍으로 나뉜다(McAlinden, 2012). McAlinden(2012)은 가족 외 그루밍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경우를 지칭하며, 온라인, 대면상황, 시설 내, 길거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가족 내 그루밍은 아동이 가족 내의 친밀한 사람이나 이전에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 인식과 달리 아동 성범죄의 대다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만큼 가족 내 그루밍이 주목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McAlinden, 2012).

2. 피해 대상에 의한 분류

McAlinden(2012)은 그루밍의 유형을 피해 대상을 기준으로 아동 그루밍, 가족 및 사회 그루밍, 시설 내 그루밍(institutional grooming)으로 분류하는데, 피해대상에 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주변 환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McAlinden(2012)은 아동이 친밀감을 무기로 성학대의 대상으로 길들여지듯이, 아동의 부모나, 더 넓게는 사회, 혹은 아동과 관련한 시설 등의 기관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길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설 내 그루밍은 전혀 주목받지 못한 주제임을 주장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방식에 의한 분류

McAlinden(2012)은 그루밍의 시행 양식을 기준으로, 대면 그루밍(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스트리트 그루밍(street grooming), 또래끼리의 그루밍으로 분류한다. 대면 그루밍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그루밍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주로 가족 내 혹은 가족과 유사한 맥락에서의 그루밍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온라인과 스트리트 그루밍은 각각 잠재적 가해자들이 인터넷이나 혹은 기타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관계를 구축하거나 혹은 길거리의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접근하여 성폭행의 선행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 중 온라인 그루밍에 특별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온라인 공간의 특성(인터넷, SNS, 채팅 앱 등)이 잠재적 성범죄자에게 아동과 부적절한 대화를 하고 이후 오프라인 상에서의 범죄적 성 활동을 하는 것을 매우 용이하게 만든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온라인 피해자 조사(Finkelhor 등, 2000)에 의하면 10세 이상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19%가 인터넷 상에서 성적 유인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영국의 Carr(2004)는 한 연구에서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접근한 가해자로부터 3년 내에 성폭행을 당한 27명의 아동·청소년 사건을 서술하면서 일단 접촉을 시작한 후 잠재적 피해자를 길들여 신뢰와 친밀감을 구축하고 성폭행을 가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수법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루밍 또는 온라인에 기반한 그루밍은 오프라인을 통한 그루밍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로지 온라인에만 기반하여 성적 그루밍을 행하는 아동 성범죄자들은 오프라인에서보다 외모 등 보이는 측면에서는 다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지적인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은 훨씬 높아 보인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보다는 낯선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다.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 추구하는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 미성년자와 교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각각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가해자(contact-driven)라면 온라인에서 접촉하는 시간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지만, 성적 판타지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가해자(fantasy-driven)라면 평균 32.9일, 최대 180일 가량을 피해자들과 온라인

20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으로 소통한다는 연구결과⁵⁾가 있다.

해외의 온라인 그루밍을 메타분석한 연구를 보면(Black, Wollis, Woodworth & Hancock, 2015), 온라인 그루밍의 범의자는 백인이거나 성인 범의자보다 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변수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도가 높고 성적 일탈성이 높으며 타당도 척도 중 하나인 인상관리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의 내용에서는 오프라인 그루밍과 비슷한 전술을 쓰면서도 전체적인 전개 과정이 순서와 시기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여준다. Malesky(2007)와 O'connell(2003)의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상에서 아동을 성추행하는 자는 신체적으로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쉽고 취약성이 인지된 피해자를 고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온라인 가해자는 잠재적 피해자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가능성과 취약성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스트리트 그루밍은 보다 최근에 등장한 방식으로 조직범죄의 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대개 아동 성매매나 아동음란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이 개입하여 거리 상에서 취약한 여아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길들이는 경우이다(McAlinden, 2012). 포레끼리의 그루밍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포레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길들이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 그루밍 피해자의 특성

O'Connell(2003)은 온라인 그루밍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선택하는 전략에 있어 중시하는 3가지를 지적했다: (1) 접근성, (2) 기회, (3) 취약성. 특히 취약성의 경우 아동과 접촉을 유지하고 아동의 순응을 얻어내기 위해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아동이 가족이나 친구와 고립되어 있을 경우 낯선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보다 수용적일 것으로 보았다. Williams, Elliott, Beech (2013) 역시 아동이 삶에서 그들을 지지해주

5) Peter Briggs, Walter T. Simon, Stacy Simonsen, "An Exploratory Study of Internet-Initiated Sexual Offenses and the Chat Room Sex Offender: Has the Internet Enabled a New Typology of Sex Offender?", *Annals of sexual Research* 23(1), 2011, p.78, table 1.

거나 수용해주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낯선 사람과 대화를 즐기거나 의사소통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를 지니게 되고, 결국 낯선 사람과 감정적 관계를 맺게 됨을 지적하였다.

그루밍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해자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피해자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취약점은 가족문제, 신체적, 경제적 혹은 심리적인 문제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갈등이 있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인지나 경계심 부족과 같은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이런 취약적인 요소들은 성적 그루밍 범죄로 나아가게 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루밍의 과정은 때에 따라 짧은 기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과거의 경험이나 교육을 통하여 위험을 인지하거나 경계심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성범죄자인 가해자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루밍 성범죄자들은 경계심을 느슨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동으로 이루어지며, 성적인 학대나 성적 행위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떠한 행위를 성적인 의도로 한 그루밍이라고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국내에 그루밍 관련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2017년 탁틴내일에서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루밍 피해자 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명(35.2%)으로 그 비율이 적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계선 지능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지적장애 등 인지능력이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5절 | 그루밍 단계

O'Connell(2003)은 그루밍이 7단계로 이뤄진다고 보았다: (1) 사귀기 (2) 관계 형성 단계, (3) 위험 평가, (4) 배타성 단계, (5) 성적 단계, (6) 환상 재강화 단계, (7) 손해 제한(damage limitation). 초기단계(1,2)에서는 가해자가 아동에 관해 가능한 많은

22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정보를 얻어서 아동의 일상에 관한 통찰을 얻고 어떤 측면이 아동을 취약하게 만드는 상황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가해자는 아동과 관계를 맺고 자신을 아동과 유사한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둘 사이의 나이가 주는 장벽을 깨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아동은 가해자를 어른이 아닌 친구 이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루밍 과정에서 감정이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단계에서는 비밀스러움과 보안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령 가해자는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동 집의 컴퓨터 위치나 보호자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물을 수 있다.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후 가해자는 아동과 자신 사이에 '배타적 느낌'을 만들어 내어 자신을 아동이 어떤 문제건 판단 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로 표현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 과정은 아동이 가해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특히 위험할 수 있다(3~4단계)(O'Connell, 2003).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피드백을 구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아동이 자신에 대해 신뢰를 형성했는지를 평가하려할 것이다. 이 때 함정 역시 가능한데, 아동이 가해자에게 정서적 애착을 느낄 때 불편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 성범죄자가 아동의 신뢰를 얻었다고 느끼면 성적 주제를 소개하여 대화에서 언급하는데 주력하게 된다(5~6단계). 성적단계에서 가해자가 사용하는 3가지 전략으로는 (1) 가해자와 아동 사이를 전형적으로 '연애' 관계의 틀 내에서 부드럽게 형성하거나 (2) 아동을 음란물에 노출시키거나 아동의 이미지를 보내거나 요청하므로써 억제력을 감소시키거나 (3) 아동이 환상에 동참하도록 격려하여 상호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강압적인 혹은 공격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환상을 재강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O'Connell, 2003).

한편, 성적 단계 이후에서 활용되는 신체적 그루밍은 이전의 그루밍 방법이 주로 심리적 그루밍에 집중되었던 것과 차별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의 머리를 간지럽히거나 쓰다듬는 것과 같은 성적인 접촉으로 시작하여 아동이 접촉에 둔감하게 만들며, 대화 역시 더욱 성적인 것으로 발전한다. 가해자는 아동을 성적으로 만지는 동안 그것과 관련이 없는 긍정적인 사안에 대해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아동이 뭔가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면서 성적 접촉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나간다(Craven, Brown, Gilchrist, 2006).

제 3 장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나타난 그루밍 사례

윤 정 숙

제3장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나타난 그루밍 사례

본 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재판기록 조사를 통해 파악한 그루밍 사례 중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발췌하여 그루밍이 개입된 성범죄 사건의 구체적 이해를 위해 돕도록 하겠다. 본 장과 이어지는 제 2부에서 사용되는 ‘그루밍’의 조작적 정의로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아동 성착취 및 학대방지를 위한 유럽조약회(Council of Europe's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2001, McAlinden, 2012에서 재인용)에서 정의한 “아동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성적 학대의 준비”를 기본적 정의로 삼았으며, Gillespie(2001, McAlinden, 2012에서 재인용)가 정의한 “잠재적 성학대 행위자가 아동의 신뢰를 얻어 아동에게 학대 행위에 복종하게 하는 시도로 아동과 친밀해지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제1절 | 오프라인 그루밍

1. 태권도장 관장에 의한 그루밍 사건: K-SORAS 14점의 고위험군

가. 범행 내용

가해자는 태권도장의 관장으로 2005. 2.경부터 관원인 피해자a(여, 11세), 피해자b(여, 15세)에게 수시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a는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가해자에게 4년간 지위를 이용하여 매주 4-5회 가랑 지속적으로 간음 당하였고 2009. 3.경까지 수 백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면 휴대폰을 부시고 길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강간을 한 뒤 둘만 아는 비밀이라며 비밀을 지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넌 유일하게 자신에게 순결을 바쳤으니 첫 남자라고 세뇌시키며 복종하게 한 뒤 피해자가 다른 곳을 가지 못하게 집 앞, 학교 앞, 학원 앞 등에서 매일 피해자를 기다렸다. 또한 피해자와 자신의 관계를 연인관계로 일반화하며 “사랑하니 나의 아이를 낳아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처가 쓴 편지를 보여주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며 으박지르고 “신고하거나 부모에게 알리면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비밀을 유지하였다. 가해자는 고작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a에게 “전처는 지갑이 비면 돈을 5만원이나 10만원씩 채워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며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태권도장의 청소나 빨래를 하라고 강요했으며 이에 피해자a가 5개월 동안 오지 않자 피해자의 학교 앞에 찾아가 “이게 청산가리다. 너랑 나랑 같이 죽자”며 협박한 뒤 겁먹은 피해자를 성 노리개로 삼았다. 이뿐만 아니라 2009년 1월경 가해자 소유인 스타렉스로 피해자b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유인한 뒤 외딴 곳에 차를 세우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간음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며 미수에 그쳤다.

나.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38세 남성인 가해자는 생모가 자신을 남자마자 친척들에게 쫓겨난 후 아버지와 계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어릴 적 지속된 아버지의 학대와 계모의 아이들과의 차별로 인해 집을 나와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자라왔는데 그마저도 환영받지 못해 항상 고립되고 곱돌았다. 두 번의 결혼을 하고 두 번 다 이혼을 하여 한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이혼의 이유로는 첫 번째 부인과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후 자신감이 떨어져 조루증이 생기고 전립선염까지 생겨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두 번째 부인과도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되자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이 생겨났으며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여 키우던 개나 고양이를 때려 죽였다고 한다. 왜 동물을 죽였냐고 물어보자 “아이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며

아무 감정 없이 되물었다. 이에 시행한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척도)에서 ‘고위험’에 속하는 점수 14점이 나타났다.

가해자는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기도 하며 생리 중일 때도 서슴없이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성노리개로 생각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가해자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2. 아버지의 후배에 의한 그루밍 사건: 피해자와 연인관계임을 주장하는 가해자

가. 범행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여, 15세)의 친부의 친한 후배이다. 가해자는 미국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친부의 부탁으로 한 달에 \$300-400 달러 정도를 받으며 피해자를 머물게 하였다. 가해자와 친부는 평소 의형제라고 칭할 만큼 친한 사이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가해자를 믿고 의지하였다. 가해자가 운영하는 홈스테이에는 피해자와 6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데 여자방과 남자방을 따로 쓰게 하며 자신의 방에는 여자아이들만 불러들여 함께 술을 먹곤 하였다. 2010년 경, 가해자는 자신의 방에서 다른 여자 아이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만 남게 한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그 후 이틀, 사흘에 한번 꼴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연인과의 관계로 일반화 시킨 후 한국에 가면 결혼하자며 피해자를 속이고 길들였다. 더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결혼시켜달라고 조르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모친이 아직 미성년자와 결혼을 어떻게 하나며 반대하자 모친에게도 꾸준히 신뢰를 쌓으며 결국 결혼 성인이 된 후에 결혼 허락까지 받았다. 가해자는 2011년 일자불상 피해자의 친부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여 피해자가 방에서 울고 있을 때에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부친의 자살소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일주일에 2~3번꼴로 피해자가 필요한 생필품을 사다주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의 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싫으면 어쩔거냐? 너네 아빠처럼 자살할거냐” 하며 조롱하였다. 가해자는 또한 피해자에게 항상 자신의 옆에 있어야 한다며 한국을 가면 너의 여권을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한국에 있는 친모와

전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통제를 유지하며 1년3개월 가까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서 간음하였다.

나.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31세 남성인 피해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3학년으로 휴학 중이다.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와 계모와 생활하였는데 계모와의 심적 거리감이 심해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로 인해 고교진학 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일탈과 비행 행위를 일삼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친부로 인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 후 교회를 다니며 한인들과 친목을 다지고 인맥을 이용해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받아 홈스테이를 운영하였다. 가해자는 위 피해자를 그루밍하기 전에도 같이 살고 있던 다른 여학생을 같은 수법으로 그루밍 하여 가해자와 연인관계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여학생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가해자는 매일 술을 먹는 등 AUDIT(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에서 '25점' 중독수준을 나타내며 음주로 인해 직면하는 어려움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에 시행한 검사들에서 높은 강간 통념 수용도를 보였고 PCL-R 검사에서는 정신병질성향을 보이는 등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나타냈다.

3. 선생님의 잘못된 가르침: 국악 선생님과 그 제자들

가. 범행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a(여, 11세), 피해자b(여, 15세)의 국악선생님으로 가해자의 동거녀는 가해자와 같이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다. 가해자는 2011년 여름 경 피해자a가 가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조용히 들어와 강제추행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후 2012년 여름 경 또다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a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010년 3월 경 피해자b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뒤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b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강간하였다. 2010. 봄. 피고인의 집에서 TV를 보는 피해자b를 방으로 불러들여 문을 잠그고 강간하였고

2020. 여름 경 단체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b를 강간하는 등, 자신의 보호·관리 하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수차례 위력으로써 강간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30살이나 차이나는 피해자b와 사랑해서 맺은 관계라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전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등 국악 선생님인 가해자 내외의 보호아래 있던 처지라 가해자의 범행을 빠르게 폭로하지 못하였다. 가해자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국악인으로 평소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이 나있었고 표창도 많이 받으며 국악인으로써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놓은 자로 지역주민들은 피해자인 아동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두둔하였고 수백 통의 탄원서를 보내기까지 했다. 가해자의 처 또한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가해자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신뢰'를 창출해 이를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는 54세 남자이며, 국악인이다. 어릴 적 부친은 주 3-4회 이상 만취 상태였으며 자신과 모친에게 상습적 폭행을 가했다. 그로 인해 모친이 집을 나가고 8살까지 부친의 손에서 자랐는데 자라면서도 꾸준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다. 그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였으며 출결 또한 불량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비행을 저질렀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심한데 특히 모친에게 양가감정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알코올 남용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자신 스스로 문제음주자라 칭한다. 가해자는 자녀가 셋인데 법적으로 부부인 처와는 이혼하지 않은 채 명성 있는 국악인인 동거녀와 10년째 동거중이다. 가해자는 피해자a에게 가한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b와는 성관계를 수시로 맺은 것은 맞지만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가르치는 3년 내내 피해자들에게 “사랑한다.”며 문자를 보내거나 옷과 고데기 등을 사주며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왜 땡기냐”, “정자를 묶었으니 임신은 안 될 것이다” 하며 피해자들을 훈련시키며 협박하는 등 아동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4. 친족관계에 의한 그루밍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가. 범행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여, 14세)가 초등학교 6학년일 무렵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강간하려 하였다.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어 과외를 해주며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 하였다. 피해자는 경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평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야단을 맞았는데, 피고인은 야단을 맞아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가슴이) 얼마나 많이 컸나. 한 번 안아보자.”며 피해자(당시 12세)를 추행하였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주로 과외시간이나 집 안 방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없는 것을 틈타 1년여 동안 수차례 이뤄졌다. 가해자는 성추행을 하다가 다른 가족이 오면 피해자에게 “큰일 났다. 빨리 가라.”며 몸을 피하는 등 비밀을 유지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2013년 11월 술에 취한 가해자가 처와 다른 가족이 다른 방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순간 처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또한 가해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 베란다로 도망가며 문을 잠가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 가해자는 “가슴이 많이 자랐는지 확인하려고 만졌다.”, “장난삼아 한 행동이 나쁘게 발전했다.”, “제 잘못이기는 한데 그러한 행동(옷을 벗기거나 가슴을 만짐)을 하면 딸이 반응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신적, 언어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나.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는 49세 남성이다. 8남매 중 막내로 성장기동안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AUDIT(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33점’으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을 나타내며, 평소 술에 취하면 가해자의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음주 생활을 하였다. 가해자는 결혼 전 성매매를 통한 성생활을 경험하였고, 강간통념 수용도 중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에서 평균 5.00의 점수를 보여 왜곡된 성인지 성향을 보였다.

제2절 | 온라인상의 그루밍

1.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음란물 유포까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그루밍

가. 범행 내용

가해자는 2011년 6월 경 피해자(여, 13살)와 인터넷 채팅인 ‘버디버디’를 통해 자신이 15세 중학생이라며 인터넷 카페에 친구를 구한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 후 피해자와 꾸준한 온라인상의 채팅을 통해 친해진 뒤 “직접 만나는 게 어떨겠냐.” 제안을 했고 이에 피해자는 아무 의심 없이 가해자의 집에서 만남을 가졌다. 처음에 가해자는 온라인상에서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다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의 두 손을 결박해 머리위로 올려 성기와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버디버디 아이디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피해자를 만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도망가지 못하게 손을 묶은 후 도망치기를 포기한 채 우는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협박에 의한 그루밍이다.

나.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27세 남성인 가해자는 부모, 형제를 포함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직장은 없으며 4년제 공대를 졸업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집안의 경제수준은 중간이다. 현재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현재 위에 명시한 사건과 병합되어 구속된 상태이다. 전과 범죄 또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다. 부모와의 애착도 정상이고 대인관계에서도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성교제는 한번 해봤으며 강간통념이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발견했다.

피해자의 전과범죄를 보면 피해자 3명이 모두 14세 미만의 여학생으로 소아성애적 성향이 의심된다.

2. 성노예가 된 피해자의 자살: 왜곡된 성적 성향이 불러온 참사

가. 범행 내용

가해자는 2017년 경 트위터에 게시된 당시 중학교 2학년의 피해자(여, 15세)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느껴 댓글을 달아 피해자의 관심을 산 후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된다. 피해자에게 "하루 봤지만 매력이 넘친다, 얼굴이 예쁘다, 귀엽다" 등의 충분한 칭찬을 건네며 친분을 쌓은 뒤 밥도 사주고, 공부도 도와주겠다고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친분을 유지하고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연락은 약 3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충분한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했을 때 첫 만남을 유도한 뒤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성관계를 맺은 후 그 대가로 현금 9만원을 지불하는 등 용돈을 주었고 헤어진 뒤에도 꾸준히 연락을 했다. 그 후 가해자 자신은 '주인' 피해자는 '노예'가 되어 주종관계를 맺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세 계정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벌을 주겠다.'며 가해자의 집으로 유인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 후배의 집인 줄 알고 자신의 친구와 함께 가해자의 집으로 갔다. 가해자는 스스로 자신을 주인님이라 부르라 칭하며 주인님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으라 한 뒤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가해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가해자는 이어 피해자의 강간 장면을 친구에게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의 강간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 이 후 동영상 폭로를 미끼삼은 협박과 비밀 유지 등으로 통제를 유지하며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적 학대행위 및 음란물을 제작하여 소지하였고 학대에 이기지 못한 피해자는 재판 진행 중에 자살하였다.

나.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는 20세이며 2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현재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어릴 적 가출을 해 소식을 모른다. 대학은 휴학 중이며 직업은 없다. 가해자는

잘못된 성적 성향, 즉 지배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가학적(sadist) 성애자이며 인터넷으로 항상 야한 상황극을 할 사람을 찾았다. 일단 피해자를 학습시켜 연인관계로 일반화 시킨 후 성적인 행동에 익숙하게 만들어 순종적인 개라는 것을 보여 달라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방법으로 확실히 그루밍하였다. 사건 조사 시 피해자의 컴퓨터에는 602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등 소아성애적 성향임을 예측할 수 있다.

3. 게임 상의 부부: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한 그루밍

가. 범행 내용

가해자는 2008년경 '오디션'이라는 음악 게임 사이트에서 만나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그 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여, 15세)는 매일 수차례 메시지로 연락을 해오며 친분을 맺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피해자와 연령대를 맞추어 대화를 나누어 피해자로 하여금 서로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게임 상에서 부부관계를 맺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오빠야~'라고 부르며 친분을 유지하였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지능이 낮은 것을 알아차리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중학생 피해자에게 소주 두병을 마시게 한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폭로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은 과거 폭행으로 유치장에 있었다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통제유지를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는 것을 알게 되자 두 차례 더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원룸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위력으로써 간음하여 약 1개월간 피해자를 그루밍하였다.

나.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는 30세 남성으로 혼자 살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34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월 200만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소심한 성격에 강박장애가 있고 이성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성친구를 만들었고, 외로움에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가해자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이유가 쉬운 여자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한다.

제 2 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그루밍의
특성 및 유형 분석**

제 1 장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그루밍 사건의 특성 연구방법

윤 정 숙

제1장

그루밍 사건의 특성 연구방법

그루밍 관련 특성은 아동과의 관계 수립 과정에서 이뤄진 대화 등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예: 채팅내용)가 가장 이상적이거나, 성범죄에서 함정수사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대화내용 등을 수집할 수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수사과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실시간 대화 내용 등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한정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루밍 관련 내용이 요약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관련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수사재판기록의 조사로 연구방법을 결정하였다.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검토된 사건의 기록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참고인 증언, 공소장, 판결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해자 특성에 따라 치료감호소 기록이나 병원 기록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요인, 피해자 관련 요인, 성적 그루밍 요인 등을 추출하여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를 위해 선행연구 결과 등을 참고하여 기록조사지를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기록조사지에는 사건의 간략한 개요와 가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 그리고 그루밍 과정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이 기입되도록 코딩항목을 구성하였다.

관련 자료의 선정으로 먼저, 온라인 판결문 검색시스템인 로앤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을 검색한 후, 제공된 판결문을 검토하여 그루밍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연구진이 이전의 성범죄관련 연구에서 수집한 판결문을 검토하여 역시 그루밍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수집하였다. 그루밍 성범죄 사건과 대조군을 형성할 비그루밍 성범죄 사건들도 역시 로앤비 판결문과 수집된 판결문 등을 검토하여 추출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루밍 성범죄 사건군에 90여건, 비그루밍 성범죄 사건군에 70여건을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기획하였다.

40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추출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수사재판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각 검찰지청에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수립하였다. 기록보존에 관한 검찰 지침에 따라 폐기되었거나,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건들을 제외하고 총 108건의 수사재판기록이 검토되었다. 본 연구의 기록 조사에는 조사 방법에 대해 훈련받은 인턴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총 2명이 투입되었으며,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 지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의 시작 시점에 연구책임자의 주도하에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코딩에 관한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조사의 중간 지점마다 연구 책임자의 주도로 참여 연구원의 코딩에 대한 감수가 이뤄졌다. 한편, 코딩에 대한 이견 등이 있을 때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일치되는 방향으로 조율하도록 하였다.

» [표 2-1-1] 수사재판기록 조사 기관

NO	소재	유형		소계	조사여부
		그루밍	비그루밍		
1	광주지방검찰청	2	2	4	0
2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	-	2	0
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	-	2	0
4	대구지방검찰청	3	-	3	0
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	1	2	0
6	대전지방검찰청	3	2	5	0
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1	1	0
8	부산지방검찰청	-	3	3	0
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3	2	5	0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	1	0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	4	7	0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	-	1	0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	1	3	0
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	-	2	0
15	수원지방검찰청	9	9	18	0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	1	3	0
17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1	2	3	0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1	1	2	0
1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1	-	1	0
2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	-	2	0

NO	소재	유형		소계	조사여부
		그루밍	비그루밍		
21	울산지방검찰청	5	6	11	0
22	의정부지방검찰청	1	4	5	0
2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1	-	1	0
24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3	3	0
26	전주지방검찰청	2	1	3	0
2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	2	4	0
28	제주지방검찰청	-	5	5	0
29	창원지방검찰청	-	3	3	0
3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	-	1	0
3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1	1	0
3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	-	1	0
합계		54	54	108	

제 2 장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기술 통계 분석

이태헌·윤정숙

제2장

기술 통계 분석

제1절 |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 분석

1. 그루밍 성범죄 유형별 사례 수

그루밍 성범죄와 다른 일반적인 성범죄와의 차별성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뢰 관계에 있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신뢰와 믿음 혹은 애정을 보일 수 있다. 가해자는 그러한 피해자의 심리를 오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뢰 여부를 통해 그루밍 범죄가 분류되었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 그루밍 성범죄는 54건으로 108개의 자료 중 50.0%였고 일반 성범죄 또한 54건으로 50.0%였다.

또한 그루밍 성범죄로 분류되었던 54건의 사례 중 그루밍 유형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여 관계를 구축한 ‘오프라인 그루밍’이 42건으로 전체 자료 중 39.8%를 차지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온라인 매체(SNS, 채팅 앱, 온라인 카페 등)를 통해 처음 만난 ‘온라인 그루밍’은 12건(11.1%)이었다.⁶⁾

⁶⁾ 자료에서의 ‘온라인 그루밍’과 ‘온오프라인 그루밍’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기 때문에 ‘온라인 그루밍’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음

46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 [표 2-2-1] 수사재판기록 사례 수

성범죄 유형		사례 빈도(%)		사례 수(건)	
일반 성범죄		50.0		54	
그루밍 성범죄	오프라인 그루밍	50.0	39.8	54	42
	온라인 그루밍		11.1		12

제2절 |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분석

1.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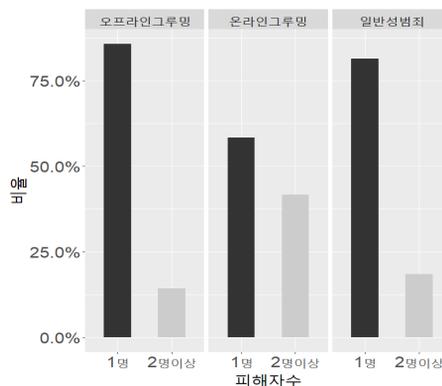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수를 살펴보면, 각 유형 별로 피해자 수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110, p=.126$).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1.1명으로 가장 적었고, 일반 성범죄의 경우 1.3명이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서는 1.6명으로 평균적으로 사건 당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표 2-2-2]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수

(단위: 명)

피해자의 수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피해자의 수 평균	1.1	1.6	1.3
피해자의 수 표준편차	.43	.79	.72

» [그림 2-2-1]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수 분포



또한 피해자의 수를 1명 혹은 2명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루밍 유형에 따라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일반 성범죄와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 가해자는 108명 중 4명으로 낮은 비율(3.7%)이었다. 여성 가해자는 모두 오프라인 그루밍으로 분류되었다.

▶▶ [표 2-2-3]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 성별

가해자 성별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남자	35.2	38	11.1	12	50.0	54
여자	3.7	4	-	-	-	-

이를 피해자의 성별과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자료에서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이었고 여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은 1건만 존재하였다.

이외에 일반 성범죄에서 남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자인 사건이 2건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남성 가해자는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자로, 주로 남자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남성 가해자의 경우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면식 관계인 이웃 남자 아이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한편 여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경우, 3건 모두 여성 가해자와 남성 가해자가 함께 가담한 범죄이다. 여성 가해자는 주로 그루밍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성매매나 조건만남을 알선하였고, 직접적인 성적 가해를 한 것은 아니다.

48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 [표 2-2-4]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교차빈도

(단위: 명)

성별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남성 가해자	남성 피해자	-	-	4
	여성 피해자	44	19	66
여성 가해자	남성 피해자	1	-	-
	여성 피해자	4	-	-

3.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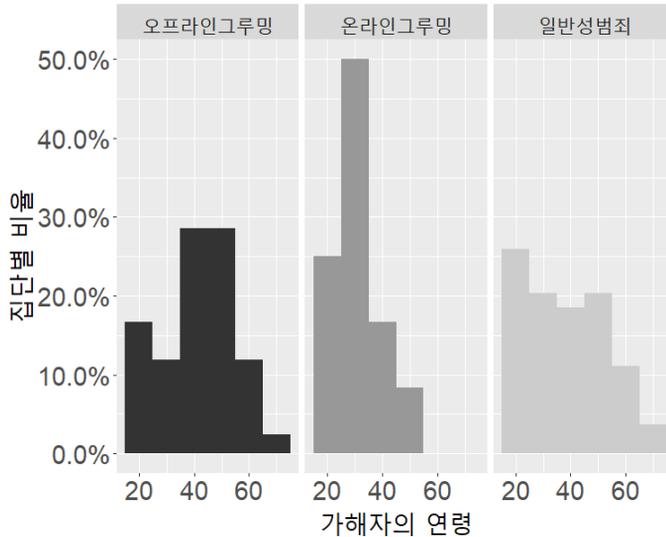
먼저 <표 2-2-5>에 제시된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각 유형별로 연령의 평균은 오프라인 그루밍 41.7세, 온라인 그루밍 31.2세, 일반 성범죄 38.1세로 이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3.032, p=.052$), 연령 분포의 패턴이 달랐다. 일반 성범죄의 경우 약 20세부터 약 50세까지 분포가 고른 형태를 띠었고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였다. 반면 온라인 그루밍을 보면 약 30세를 중심으로 빈도가 몰려있는 형태이며, 온라인 그루밍 중 대다수(83.3%)의 가해자가 40세 이하였다. 즉, 자료에서 온라인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물색, 유인하는 성범죄자들은 다소 젊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오프라인 그루밍의 경우 온라인에서 최빈치를 보였던 30세에서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40대 중후반에 데이터가 몰려 있었다(<그림 2-2-2> 참고).

▶▶ [표 2-2-5]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연령

(단위: 세)

가해자의 연령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연령평균	41.7	31.2	38.1
연령표준편차	12.9	8.7	14.4

▶▶ [그림 2-2-2]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연령



다음으로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각 유형 별로 연령의 평균은 오프라인 그루밍 13.7세, 온라인 그루밍 14.6세, 일반 성범죄 13.0세로 이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1.687, p=.189$), 연령의 분포가 달랐다. 일반 성범죄와 오프라인 그루밍의 경우 4세부터 18세까지 분포하였으며, 만 12세 이상의 피해자에 치우쳐 있다. 이 두 유형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게 된 기간과 성범죄 지속 시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반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13세부터 18세까지 분포하였으며, 주로 중학생에 해당하는 나이인 13세부터 15세에 몰려있었다(81.3%)([그림 2-2-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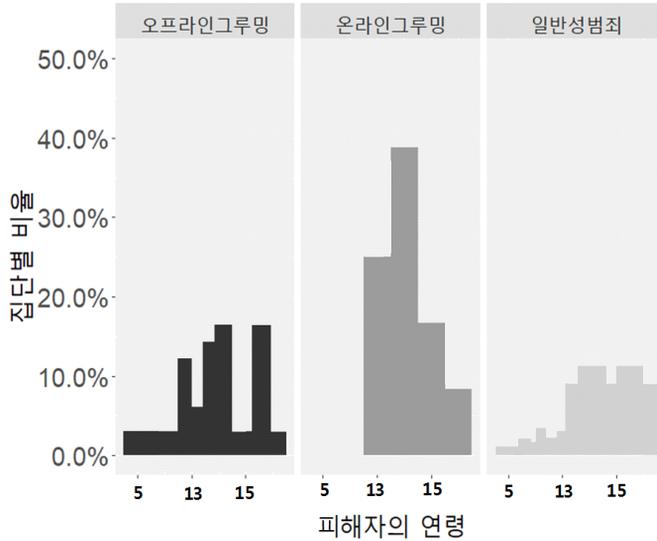
▶▶ [표 2-2-6]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연령

(단위: 세)

피해자의 연령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연령평균	13.7	14.6	13.0
연령표준편차	3.0	1.5	3.5

50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 [그림 2-2-3]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연령



마지막으로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차를 살펴보면, 각 유형 별로 오프라인 그루밍 27.8세, 온라인 그루밍 16.5세, 일반 성범죄 24.6세로 연령차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088, p=.019$). 구체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간의 차이가 적었다. 이는 앞서 <그림 2-2-2>에서 제시된 것처럼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의 대다수가 40세 이하이며, 그에 반해 피해자의 대부분은 13세에서 15세의 나이에 집중되어 분포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머지 두 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199, p=.233$)

» [표 2-2-7]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차

(단위: 세)

연령차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연령차 평균	27.8	16.5	24.6
연령차 표준편차	14.0	8.3	14.4

4. 성범죄 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지 차이

그루밍 성범죄자 54명 중 본인의 집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51.9%이었던 반면, 일반 성범죄자 54명 중 본인의 집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그루밍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31.5%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5.6%인데 반해, 그루밍 성범죄에서는 14.8%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피해자의 직장 혹은 학교, 학원과 같이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그루밍 성범죄 발생 비율의 합(16.7%)이 일반 성범죄(7.4%)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루밍 성범죄가 노상(길)이나 모텔에서 발생한 경우는 각 1.9%, 5.6%로 일반 성범죄의 7.4%, 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루밍 범죄의 심리적인 기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신뢰를 오용하는 것이다(McAlinden, 2012).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 가거나 혹은 가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들이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혹은 피해자의 가족과 가해자 간의 암묵적인 신뢰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향이 자료 분석 결과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 [표 2-2-8] 성범죄 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지

(복수응답)

사건 발생지	그루밍 성범죄		일반 성범죄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가해자의 집	51.9	28	31.5	17
피해자의 집	14.8	8	5.6	3
피해자의 직장	-	-	3.7	2
학교	7.4	4	3.7	2
학원	9.3	5	3.7	2
노상	1.9	1	7.4	4
모텔	5.6	3	7.4	4
기타	24.1	13	37.0	20

5.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루밍의 유형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 성범죄의 경우 비면식 관계가 62.1%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그루밍에서는 온라인 관계가 84.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오프라인 그루밍에서는 친족 외 면식관계

52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가 가장 많았고(40.8%), 다음으로는 친족관계가 36.7%로 그 뒤를 이었다.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친족을 포함한 면식 관계가 만연하며, 일반 성범죄는 비면식 관계에 의한 범행이 많음이 나타났다.

▶▶ [표 2-2-9]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단위: %)

가해자 피해자관계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친족관계 ⁷⁾	36.7	-	15.2
친족 외 면식관계 ⁸⁾	40.8	5.3	15.2
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	6.1	84.2	4.5
비면식 관계 (1회성 관계)	10.2	-	62.1
기타	6.1	10.5	3.0

6.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폭력 지속기간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범죄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그루밍은 다양한 기간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그 중 1년 이상 2년 미만과 3년 이상 5년 미만이 각 16.7%로 가장 많았고, 이틀~일주일 기간이 2.4%로 가장 짧았다. 반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에는 하루와 이틀~일주일 기간이 각 33.3%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8.3%로 가장 적었다.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2년 이상 성범죄가 지속된 경우는 없었다. 일반 성범죄는 하루가 50.0%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각 1.9%로 가장 적었다.

성범죄가 2일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로 성폭력 지속기간을 재범주화하여 살펴보면, 오프라인은 그루밍은 78.6%, 온라인 그루밍은 58.3%인데 반해 일반 성범죄는 20.4%이었다. 즉, 2일 이상 지속되는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의 약 4배 수준으로 많았고, 온라인 그루밍은 일반 성범죄의 약 3배 수준이었다.

7) '친자녀(손주)', '양자녀/동거애인의 자녀', '형제/친척' 관계가 포함됨

8) '친구/이웃의 아이', '학교/학원/보육원생', '고용주-피고용인' 관계가 포함됨

이는 그루밍 범죄가 범죄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발설을 막는 조종기술을 쓰고, 성 착취가 아동·청소년과 가해자의 관계에서 고착화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특히 이러한 신뢰의 오용과 조종을 통한 지속적 성폭력은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에서 더 뚜렷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폭력 지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긴 경우 친족관계 성폭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프라인 그루밍 유형에서 성폭력이 5년 이상 이어진 5건 중 4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였다. 일반 성범죄로 분류된 경우에는 5년 이상 2건의 사건 중 2건 모두 계부나 친모의 애인에 의한 성범죄였다. 앞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오프라인 성범죄에서 친족관계가 많이 나타났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친족 관계에서의 성범죄, 특히 그루밍 성범죄가 고착화되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 [표 2-2-10] 성범죄 유형에 따른 성폭력 지속기간

성폭력 지속기간 ⁹⁾				
분류	1일	2일 이상		
	비율(%)	비율 합계(%)	세부 항목	비율(%)
오프라인 그루밍	11.9	78.6	이틀~일주일	2.4
			1달 이상 3달 미만	9.5
			3달 이상 1년 미만	0.0
			1년 이상 2년 미만	16.7
			2년 이상 3년 미만	7.1
			3년 이상 5년 미만	16.7
			5년 이상	11.9
온라인 그루밍	33.3	58.3	이틀~일주일	33.3
			1달 이상 3달 미만	0.0
			3달 이상 1년 미만	16.7
			1년 이상 2년 미만	8.3
			2년 이상 3년 미만	0.0
			3년 이상 5년 미만	0.0
			5년 이상	0.0
일반 성범죄	50.0	20.4	이틀~일주일	5.8
			1달 이상 3달 미만	3.8
			3달 이상 1년 미만	0.0
			1년 이상 2년 미만	3.8
			2년 이상 3년 미만	1.9
			3년 이상 5년 미만	1.9
			5년 이상	3.8

7. 성범죄 유형에 따른 그루밍 지속기간¹⁰⁾

그루밍 성범죄 중 유형에 따른 그루밍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그루밍이 온라인 그루밍에 비해 장기적으로 그루밍이 지속된 사건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3년 이상의 그루밍 기간을 가진 사건의 비율은 40.4%로, 구체적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19.0%), 5년 이상(21.4%)였다. 반면 온라인 그루밍에서는 1달 이상 3달 미만의 그루밍 지속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41.7%였다.

▶▶ [표 2-2-11] 성범죄 유형에 따른 그루밍 지속기간

(단위: %)

그루밍 지속기간 ¹¹⁾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하루	2.4	8.3
이틀~일주일	4.8	8.3
1달 이상 3달 미만	9.5	41.7
3달 이상 1년 미만	9.5	25.0
1년 이상 2년 미만	11.9	8.3
2년 이상 3년 미만	7.1	0.0
3년 이상 5년 미만	19.0	0.0
5년 이상	21.4	8.3

8. 그루밍 범죄여부에 따른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

범행당시 피해자의 음주여부를 살펴보면 그루밍 범죄에서는 조사된 가해자 중 33.3%가 음주상태였던 반면, 일반 성범죄 가해자는 42.6%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다.

성범죄자들은 일반 범죄자보다도 충동적인 경향이 있고 충동성은 성범죄에서 주요한 요인이다(정민철, 조영일, 2015). 반면 그루밍 성범죄는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교활한 행동을 동반한다(Ryan et al., 2017). 또한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매우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속인다.

9) 성폭력 지속기간 '없음', '알수없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10) 그루밍 지속기간이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11) 그루밍 지속기간 '없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 여부가 범행당시의 충동성을 직접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표 2-2-12>의 결과는 그루밍 성범죄자들이 알코올 섭취 후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다. 향후, 그루밍 성범죄자와 일반 성범죄의 충동성을 직접 조사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표 2-2-12] 그루밍 범죄여부와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의 관계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	그루밍 범죄		일반 성범죄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음주상태	33.3	18	42.6	23
아님	59.3	32	53.7	29

제3절 |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1. 가해자의 성폭력 전과이력

각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성폭력 전과이력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 42건 중 성폭력 전과범죄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의 사건은 4건(9.5%)이었다. 반면 온라인 그루밍 12건 중 3건(25.0%), 일반 성범죄는 54건 중 15건(27.8%)이 가해자가 성폭력 전과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그루밍 유형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에서 성폭력 전과이력이 적었던 이유는 성폭력 전과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프라인 그루밍을 저지르기 어려운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루밍 범죄는 아동·청소년과의 신뢰관계, 더 나아가 부모 혹은 사회와 신뢰를 구축하고 오용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2000년부터 시행된 신상공개 제도로 인해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정혜진, 박형준, 2010).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전과자는 개인 혹은 사회와 관계 맺음을 하지 못해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일 수 있다.

▶▶▶ [표 2-2-13] 가해자의 성폭력 전과이력

가해자의 성폭력 전과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있음	9.5	4	25.0	3	27.8	15
없음	88.1	37	75.0	9	66.7	36

2. 그루밍 유형과 가해자의 최종학력의 관계

Mitchell(2005)와 Burke(2002)의 성범죄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을 사용하는 성범죄자들은 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는 것 같다. 그러나 분석한 자료에서는 온라인을 사용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고학력의 비율이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고졸 이상 학력은 오프라인 그루밍에서 66.7%, 온라인 그루밍에서 66.7%, 일반 성범죄에서 55.6%로, 모든 집단에서 과반수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인터넷 보편화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가능하다는 한국만의 특성일 수도 있고, 이전 연구들이 2000년대 초반의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 간극에서 오는 보편화 수준의 차이일 수 있다.

▶▶▶ [표 2-2-14] 그루밍 유형과 가해자의 최종학력의 관계

최종학력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초졸	11.9	5	-	-	16.7	9
중졸	11.9	5	33.3	4	24.1	13
고졸	38.1	16	41.7	5	38.9	21
대재/대졸 이상	28.6	12	25.0	3	16.7	9
기타	2.4	1	-	-	-	-

3. 그루밍 유형과 가해자의 혼인상태

각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혼인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 41명 중 결혼(재혼)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해자는 20명(47.6%)이었다. 이는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중 1명(8.3%)만이 기혼자이고, 일반 성범죄자 중

15명(27.8%)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2-2-15]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혼인상태

혼인상태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미혼	21.4	9	83.3	10	51.9	28
결혼(재혼)	45.2	19	8.3	1	22.2	12
동거	2.4	1	-	-	5.6	3
이혼(별거)	28.6	12	8.3	1	18.5	10

4. 그루밍 유형과 가해자의 직업

각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직업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 성범죄자는 상대적으로 무직(53.7%)의 비율이 높았다.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역시 무직(58.3%)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무직(24.4%), 일용직 노동자(24.4%), 정규직 종사자(24.4%), 개인사업자(26.8%)으로 모든 항목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2-2-16]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직업

직업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없음 ¹²⁾	24.4	10	58.3	7	53.7	29
있음 (일용직노동자) ¹³⁾	24.4	10	16.7	2	16.7	9
있음(정규직)	24.4	10	25.0	3	13.0	7
개인사업자 ¹⁴⁾	26.8	11	-	-	16.7	9

12) 단기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 무직으로 분류함

13) 일정한 소속이 없이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는 상태. 건설업 종사자, 수리기사 등이 있음

14)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있지 않고 개인이 독자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상태. 택시 기사, 임대업, 학원 원장 등이 있음

5. 그루밍 유형과 가해자의 정신질환력

각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정신질환력을 살펴보았을 때, 그루밍 성범죄자와 일반 성범죄자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성범죄자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경험 혹은 입원경험이 있는 가해자의 비율이 24.5%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이었지만, 그루밍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정신질환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자는 우울증으로 인한 진료경험 2명(66.7%), 추락사고로 인한 후두부, 소뇌 및 전두엽 일부 손상으로 인지 기능과 정서 조절 능력이 손상된 경우 1명(33.3%)이었다. 반면 일반 성범죄자의 정신질환력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13건의 사례 중 7명은 우울증 및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인한 진료경험을 보고하였고, 2명은 조현병, 2명은 충동장애(이들은 각각 성도착증과 게임중독 진단), 2명은 지적장애(이들 중 한 명은 우울증을 진단받았으며 앞서 제시된 7명에 중복 제시), 1명은 기타(뇌병변으로 인한 정신질환 진료)이었다.

▶▶ [표 2-2-17] 성범죄 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정신질환력

가해자의 정신 질환력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없음	93.7	38	100.0	12	75.5	40
진료경험있음	4.9	2	-	-	22.6	12
입원경험있음	2.4	1	-	-	1.9	1

제4절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특성

1. 그루밍 유형과 피해자의 동거인 유형

각 성범죄 유형 별 피해자의 동거인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들의 기타 유형의 비율은 35.7%였다. 이는 오프라인 그루밍 피해자(86.1%)와 일반 성범죄 피해자(91.5%)의 대다수가 친족관계와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유형은 가출을 한 후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또래끼리 모여 사는 거주 형태를 포함하며, 친족 관계는 물론 친족 관계 외의 보호자도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처가 없어 잘 곳을 구하거나 돈이 필요해 채팅 앱, 조건만남 사이트 등을 보다 쉽게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결과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보인다.

▶▶▶ [표 2-2-18]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동거인 유형

동거인 유형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부모	41.9	18	50.0	7	61.7	29
편부모	44.2	19	14.2	2	29.8	14
부모 외 보호자 (조부모 등) ¹⁵⁾	7.0	3	-	-	2.1	1
기타(가출 등) ¹⁶⁾	7.0	3	35.7	5	6.4	3

2. 그루밍 유형과 피해자의 범행 시 음주상태

각 성범죄 유형 별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그루밍에서의 피해자 음주상태(26.7%)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로 가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경우가 많았으며, 가해자를 만나기 전에 음주상태인 경우도 있었다. 이는 <표 2-2-17>에서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가 가출, 자취 등 보호자가 없는 거주 환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속해 있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는 O'Connell(2003)과 Williams, Elliott, Beech (2013)가 지적하였듯이 아동이 삶에서 그들을 지지해주거나 수용해주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즐기거나 감정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 등 보호자가 부재한 상태에 처해진 청소년들이 온라인 그루밍에 더 노출되어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15) 조부모, 친척, 부모의 친구 등 친족관계 외의 보호자가 있는 상태를 말함

16) 가출, 자취 등 보호자 없이 혼자 거주하는 상태를 말함

60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 [표 2-2-19] 성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범행시 음주상태

범행 시 음주상태	오프라인 그루밍		온라인 그루밍		일반 성범죄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빈도(건)
아님	91.3	42	73.3	11	89.3	50
음주상태	8.7	4	26.7	4	10.7	6

제 3 장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잠재 계층 분석

이 태 헌

제1절 | 잠재 계층 분석 소개

본 분석에서는 잠재 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통해 성범죄자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잠재 계층 분석은 유사한 응답 특성을 보이는 응답자들은 동일한 잠재 계층에, 상이한 응답 특성을 보이는 응답자들은 다른 잠재 계층에 속하도록 분류하는 통계적 기법으로서, 자료 속에 숨겨진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제2절 | 연구 방법

1. 전체 분석 과정

잠재 계층 분석을 위해 통계소프트웨어 Mplus 7.0을 활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하나의 응답자(ID)로 간주하고, 성범죄 사건을 잠재 계층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범죄의 유형과 그 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잠재 계층의 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잠재 계층모형을 생성한 뒤, 다양한 적합도 지수와 각 잠재 계층모형의 문항 응답 패턴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잠재 계층모형을 채택하였다.

2. 주요 변수 선정

본 연구의 원자료에 포함된 변수는 총 102개로, 각 변수의 범주는 최소 2개에서 최대 20개였다. 자료의 크기에 비해 잠재 계층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의 수가 너무 많으면 모형 적합 결과가 불안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통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성범죄 유형 분석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 변수들을 선정하여 잠재 계층 분석에 투입하였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된 주요 변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신뢰 여부¹⁷⁾, 가해자의 집에서 범행이 발생하였는가의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가해자의 그루밍 과정 6단계(욕구 파악, 취약점 파악, 신뢰 얻기¹⁸⁾, 욕구 충족, 고립시키기,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통제 유지하기)였다.

3. 자료의 특성 확인

본 연구의 자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108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잠재 계층 분석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의 응답패턴은 <표 2-3-1>와 같다.

» [표 2-3-1] 전체 자료 응답 패턴

변수	세부 범주	비율(%)	빈도(건)
신뢰여부	신뢰함	50.0	54
	신뢰하지 않음	50.0	54
범행발생지	가해자의 집	58.3	63
	가해자의 집 외	41.7	45
그루밍 과정1_ 욕구파악	성적호기심	3.7	4
	진로	7.4	8
	취미	2.8	3
	관심사	1.9	2
	종교	1.9	2

17) 본 항목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위를 수행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경우 '신뢰함'으로 분류함.

18) 본 항목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위를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말함. 구성 요소로는 '관심나누기(예: 피해자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기)', '친분만들기(예: 애정표현 해주기, 상담해주기) 등이 있음.

변수	세부 범주	비율(%)	빈도(건)
그루밍 과정1_ 취약점파악	저연령	90.7	98
	외로움	3.7	4
	지적장애	7.4	8
	가출	9.3	10
	빈곤	10.2	11
	방임	9.3	10
	폭력	5.6	6
	기타	0.9	1
그루밍 과정2_ 신뢰얻기	사용함	68.5	74
	사용하지 않음	31.5	34
그루밍 과정3_ 욕구충족	사용함	58.3	63
	사용하지 않음	41.7	45
그루밍 과정4_ 고립시키기	사용함	75.9	82
	사용하지 않음	24.1	26
그루밍 과정5_ 관계 성적으로 만들기	사용함	49.1	53
	사용하지 않음	50.9	55
그루밍 과정6_ 통제 유지하기	사용함	56.5	61
	사용하지 않음	43.5	47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비면식관계(1회성만남)	32.1	34
	친구/이웃의 아이	8.5	9
	학교/학원/보육원생	13.2	14
	친자녀(손주)	9.4	10
	양자녀/동거애인의 자녀	14.2	15
	형제/친척	1.9	2
	온라인에서맺어진관계	14.2	15
	고용주-피고용인	1.9	2
	기타	4.7	5

제3절 | 연구 결과

1. 잠재 계층모형 적합도 비교

잠재 계층 분석에서는 자료를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잠재 계층 수를 결정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부터 5개인 경우까지 잠재 계층모형을 생성한 뒤, 모형 적합도 지수(Model fit)와 각각의 모형에서 얻은 문항응답패턴을 비교하여 자료에 가장 적합한 잠재 계층의 수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랐다. 각 잠재 계층모형에 따른 모형 적합도는 <표 2-3-2>에 제시되어 있다.

▶▶▶ [표 2-3-2] 잠재 계층모형 모형 적합도

Class	LL	BIC	aBIC	AIC	Parameters	VLMR	BLRT	Entropy
2	-816.36	1899.6	1719.49	1746.72	57	.490	.000	.995
3	-765.72	1934.10	1662.36	1703.44	86	.637	.000	.972
4	-731.38	2001.21	1637.84	1692.76	115	.959	.000	.974
5	-711.78	2097.78	1642.78	1711.55	144	.761	.200	.984

모형 적합도 확인 결과, Entropy와 Information Criteria 중 BIC는 잠재 계층의 수가 2개인 잠재 계층모형에서 가장 적합하였으며 Information Criteria 중 adjusted BIC·AIC의 경우 잠재 계층의 수가 4개인 잠재 계층모형에서 가장 적합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각각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절대적이거나 우월한 지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잠재 계층이 2개인 모형(2_LC1, 2_LC2)과 잠재 계층이 4개인 모형(4_LC1, 4_LC2, 4_LC3, 4_LC4)의 응답패턴을 분석하여 적절한 잠재 계층의 수를 결정하였다.

2. 잠재 계층이 2개인 잠재 계층모형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총 108건 중 첫 번째 잠재 계층인 2_LC1에 38건(35.2%), 두 번째 잠재 계층인 2_LC2에 70건(64.8%)이 할당되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주요 변수의 응답 패턴을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표 2-3-3>과 같다.

▶▶ [표 2-3-3] 잠재 계층이 2개인 잠재 계층모형의 응답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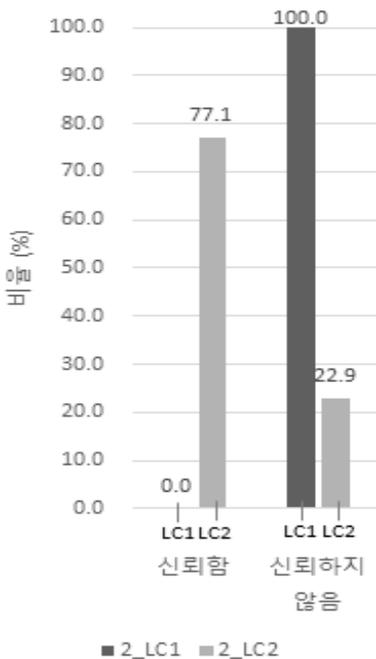
변수	세부 범주	잠재 계층* 비율(%)	
		2_LC1	2_LC2
신뢰여부	신뢰함	0.0	77.1
	신뢰하지 않음	100.0	22.9
범행발생지	가해자의 집	15.7	55.7
	가해자의 집 외	84.3	44.3
그루밍 과정1_ 욕구파악	성적호기심	0.0	5.7
	진로	0.0	11.4
	취미	2.6	2.9
	관심사	2.6	1.4
	종교	0.0	2.9
그루밍 과정1_ 취약점파악	저연령	76.3	98.6
	외로움	0.0	5.7
	지적장애	0.0	11.4
	가출	0.0	14.3
	빈곤	0.0	15.7
	방임	0.0	14.3
	폭력	0.0	8.6
	기타	0.0	1.4
그루밍 과정2_ 신뢰얻기	사용함	0.0	48.5
	사용하지 않음	100.0	51.5
그루밍 과정3_ 욕구충족	사용함	2.6	62.8
	사용하지 않음	97.4	37.2
그루밍 과정4_ 고립시키기	사용함	0.0	37.1
	사용하지 않음	100.0	62.9
그루밍 과정5_ 관계 성적으로 만들기	사용함	0.0	78.5
	사용하지 않음	100.0	21.5
그루밍 과정6_ 통제 유지하기	사용함	0.0	67.1
	사용하지 않음	100.0	32.9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비면식관계(1회성만남)	80.7	7.1
	친구/이웃의 아이	8.3	8.6
	학교/학원/보육원생	2.8	18.6
	친자녀(손주)	0.0	14.3
	양자녀/동거애인의 자녀	2.7	20.0
	형제/친척	0.0	2.9
	온라인에서 맺어진관계	0.0	21.4
	고용주-피고용인	0.0	2.9
기타	5.6	4.3	

* 본 분석에서는 잠재 계층 2_LC1을 일반 성범죄 유형, 잠재 계층 2_LC2를 본 분석에서는 그루밍 성범죄 유형으로 명명함

주요 변수의 응답 패턴 확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에서 두 잠재 계층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그림 2-3-1) 참고). 2_LC1의 경우 38건 중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가 0건(0.0%)으로 없는 반면, 2_LC2의 경우 70건 중 약 54건(77.1%)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범행 장소의 경우 가해자의 집인 경우가 2_LC1(15.7%)에 비해 2_LC2(55.7%)에서 약 3.5배 많았는데(그림 2-3-2) 참고), 이는 앞서 언급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 여부에 따른 것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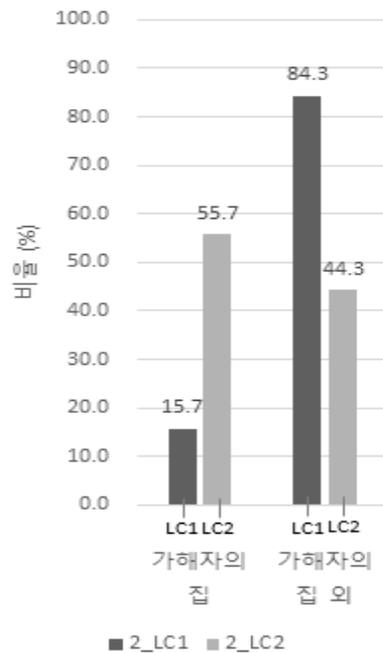
▶▶▶ [그림 2-3-1]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



▶▶▶ [그림 2-3-2]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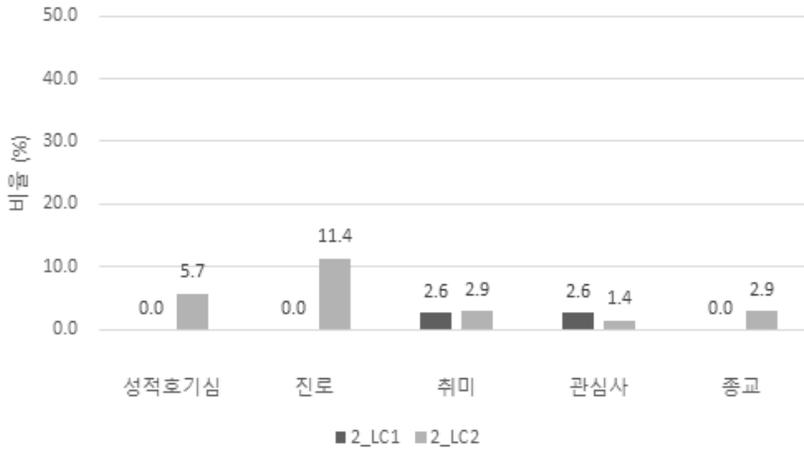
: 범행 발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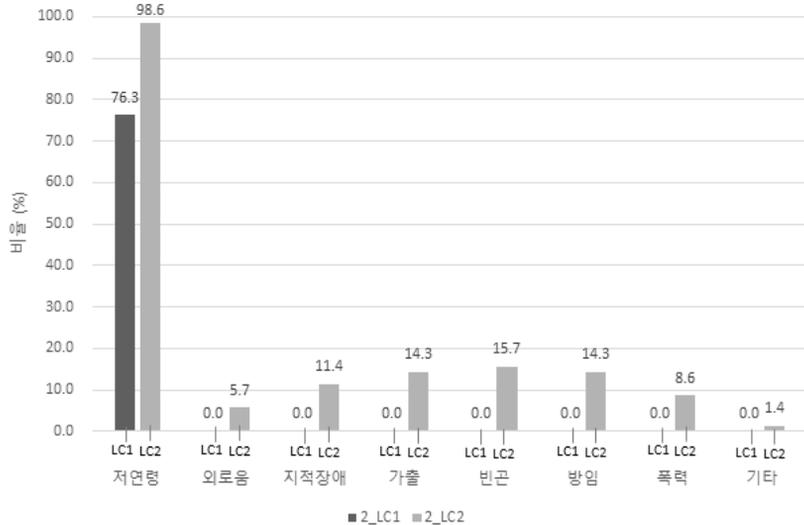
그루밍 과정에서의 잠재 계층 특성 확인 결과, 그루밍 과정 1단계에서 욕구파악은 2_LC1과 2_LC2 모두 0.0~11.4%로 적은 확률을 보였으나(그림 2-3-3) 참고), 취약점 파악 중 저연령의 경우 2_LC1 76.3%, 2_LC2의 경우 98.6%로 대다수가 피해자의 저연령을 취약점으로 파악하였다. 2_LC1의 경우 저연령을 제외하고는 취약점 파악 과정이 없었으며(0.0%), 2_LC2의 경우 빈곤(15.7%), 방임(14.3%), 가출(14.3%), 지적장

애(11.4%) 순으로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악하였다(<그림 2-3-4> 참고).

▶▶▶ [그림 2-3-3]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1단계_욕구 파악



▶▶▶ [그림 2-3-4]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1단계_취약성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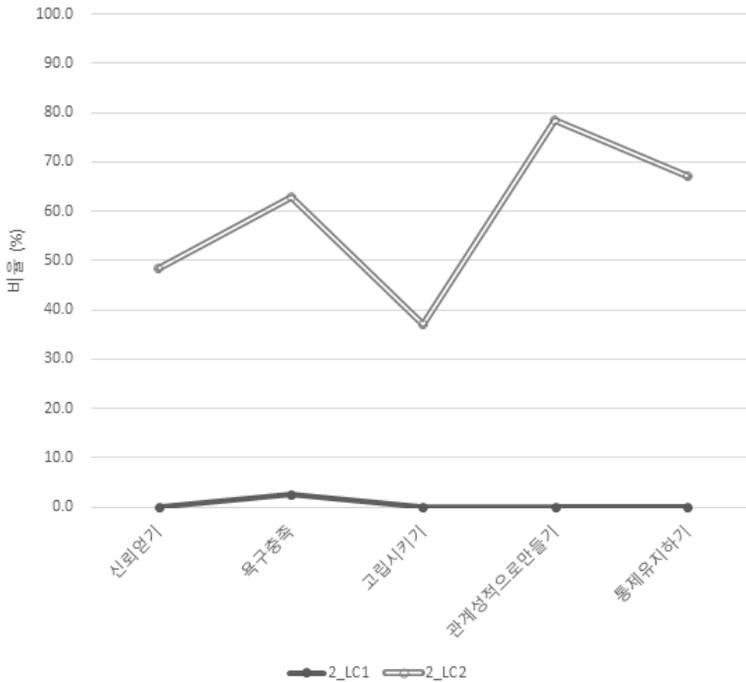


그루밍 과정 2~6단계 확인 결과, 2_LC1의 경우 0.0~2.6%로 2_LC1에 속하는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그루밍 과정 2~6단계를 거의 시행하지 않았으나, 2_LC2의 경우 최소 37.1%, 최대 78.5%의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그루밍 단계를 시행하였음을 알

70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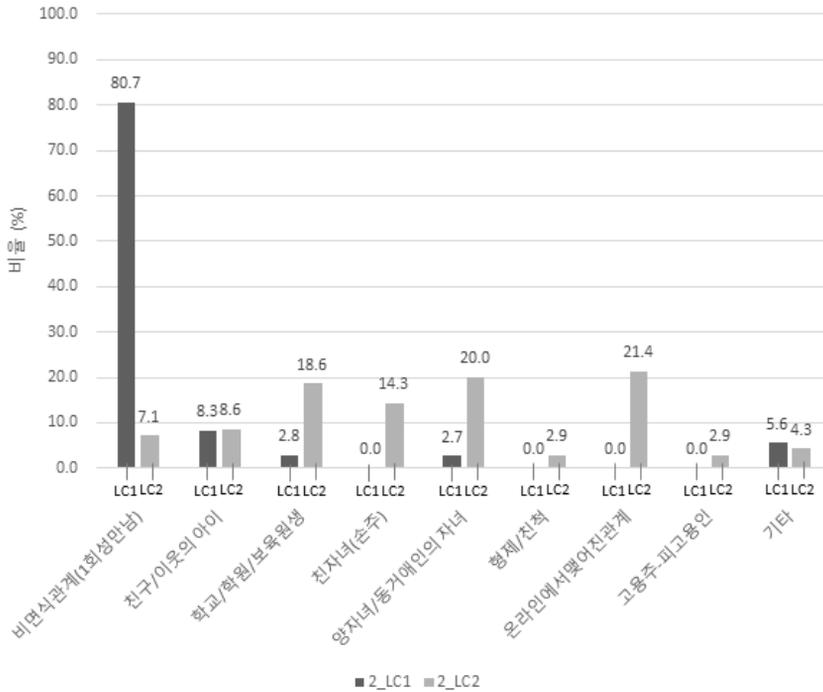
수 있었다(〈그림 2-3-5〉 참고).

▶▶▶ [그림 2-3-5]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2~6단계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변수를 통해 잠재 계층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면식, 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인 경우와 비면식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2_LC1의 비면식 관계가 80.7%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2_LC2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양자녀/동거애인의 자녀인 경우 20.0%, 학교/학원/보육원생인 경우 18.6%, 친자녀(손주)인 경우 14.3% 등 면식 관계가 다수(67.3%)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2_LC2의 경우 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가 21.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3-6〉 참고).

▶▶ [그림 2-3-6] 잠재 계층이 2개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잠재 계층이 2개인 모형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_LC1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가 적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_LC1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저연령이라는 취약점을 파악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루밍 단계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대부분 비면식 관계였다. 반면, 2_LC2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2_LC2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루밍 단계의 대부분이 시행되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의 과반수는 면식 관계, 일부는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였다. 이러한 문항 응답 패턴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2_LC1은 일반 성범죄 유형, 2_LC2는 그루밍 성범죄 유형의 특징을 반영하는 계층으로 볼 수 있다.

3. 잠재 계층이 4개인 잠재 계층모형

잠재 계층이 4개인 잠재 계층모형의 경우 총 108건 중 첫 번째 잠재 계층인 4_LC1에 35.2%(38건), 두 번째 잠재 계층인 4_LC2에 16.7%(18건), 세 번째 잠재 계층인 4_LC3에 31.5%(34건), 네 번째 잠재 계층인 4_LC4에 16.7%(18건)가 할당되었다. 각 잠재 계층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변수의 응답 패턴을 확인하였으며, <표 2-3-4>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 [표 2-3-4] 잠재 계층이 4개인 잠재 계층모형의 응답 패턴

변수	세부 범주	잠재 계층* 비율(%)			
		4_LC1	4_LC2	4_LC3	4_LC4
신뢰여부	신뢰함	0.0	100.0	64.7	76.3
	신뢰하지 않음	100.0	0.0	35.3	23.7
범행발생지	가해자의 집	15.1	43.1	65.4	50.2
	가해자의 집 외	84.9	56.9	34.6	49.8
그루밍 과정1_ 욕구파악	성적호기심	0.0	21.7	0.0	0.0
	진로	0.0	43.4	0.0	0.0
	취미	2.7	5.4	0.0	5.9
	관심사	2.7	5.4	0.0	0.0
	종교	0.0	5.4	2.9	0.0
그루밍 과정1_ 취약점파악	저연령	76.1	100.0	97.1	100.0
	외로움	0.0	10.8	0.0	11.8
	지적장애	0.0	10.7	17.3	0.0
	가출	0.0	0.0	0.0	58.8
	빈곤	0.0	8.5	3.0	49.3
	방임	0.0	5.4	17.4	17.3
	폭력	0.0	0.0	8.7	17.4
	기타	0.0	5.4	0.0	0.0
그루밍 과정2_ 신뢰연기	사용함	0.0	78.3	24.7	64.4
	사용하지 않음	100.0	21.7	75.3	35.6
그루밍 과정3_ 욕구충족	사용함	2.6	100.0	29.2	90.6
	사용하지 않음	97.4	0.0	70.8	9.4
그루밍 과정4_ 고립시키기	사용함	0.0	59.8	29.0	28.6
	사용하지 않음	100.0	40.2	71.0	71.4
그루밍 과정5_ 관계 성적으로 만들기	사용함	0.0	100.0	83.5	43.7
	사용하지 않음	100.0	0.0	16.5	56.3

변수	세부 범주	잠재 계층* 비율(%)			
		4_LC1	4_LC2	4_LC3	4_LC4
그루밍 과정6_ 통제 유지하기	사용함	0.0	88.5	74.6	27.4
	사용하지 않음	100.0	11.5	25.4	72.6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비면식관계(1회성만남)	81.2	10.8	0.0	17.7
	친구/이웃의 아이	8.4	10.6	4.2	15.1
	학교/학원/보육원생	2.8	53.9	6.0	5.7
	친자녀(손주)	0.0	0.0	28.7	0.0
	양자녀/동거애인의 자녀	2.1	0.0	40.9	0.0
	형제/친척	0.0	0.0	5.7	0.0
	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	0.0	24.6	2.9	55.6
	고용주-피고용인	0.0	0.0	2.9	5.8
	기타	5.6	0.0	8.6	0.0

* 본 분석에서는 4_LC1을 일반 성범죄 유형, 4_LC2를 전형적 그루밍 성범죄 유형, 4_LC3을 유사 그루밍 성범죄 유형, 4_LC4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유형으로 명명함

주요 변수의 응답 패턴 확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가 4_LC1과 나머지 잠재 계층을 유의미하게 구분하였다(〈그림 2-3-7〉 참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신뢰 여부는 4_LC2에서 100.0%, 4_LC4에서 76.3%, 4_LC3에서 64.7%, 4_LC1에서 0.0% 순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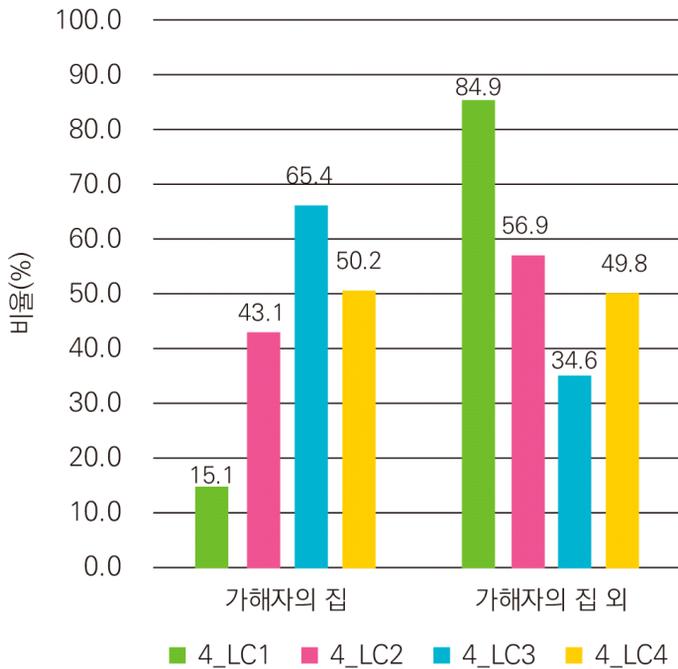
» [그림 2-3-7]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



74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범행 장소 변수의 경우, 가해자의 집인 경우가 4_LC3에서 65.4%, 4_LC4에서 50.2%, 4_LC2에서 43.1%, 4_LC1에서 15.1% 순으로 신뢰여부 변수와 유사하게 4_LC1과 나머지 잠재 계층을 유의미하게 구분하였다(〈그림 2-3-8〉 참고). 흥미로운 점은, 4_LC3의 신뢰여부는 64.7%로, 4_LC2(100.0%), 4_LC4(76.3%)에 비해 낮지만 가해자의 집에서 범행이 일어난 정도는 가장 높았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데, 4_LC3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 대다수(75.3%)의 가해자 피해자 간 관계가 양자녀/동거애인의 자녀(40.9%), 친자녀(손주)(28.7%), 형제/친척(5.7%) 등 가족관계였다. 즉 4_LC3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행 기간에 걸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장소, 특히 가해자의 집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났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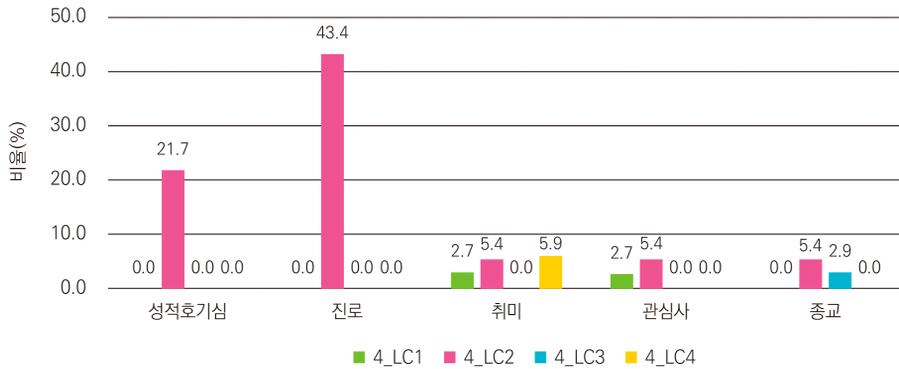
▶▶ [그림 2-3-8]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범행 발생지



그루밍 과정에서의 잠재 계층 특성 확인 결과, 그루밍 과정 1단계 욕구파악의 경우, 4_LC2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2-3-9〉 참고). 4_LC2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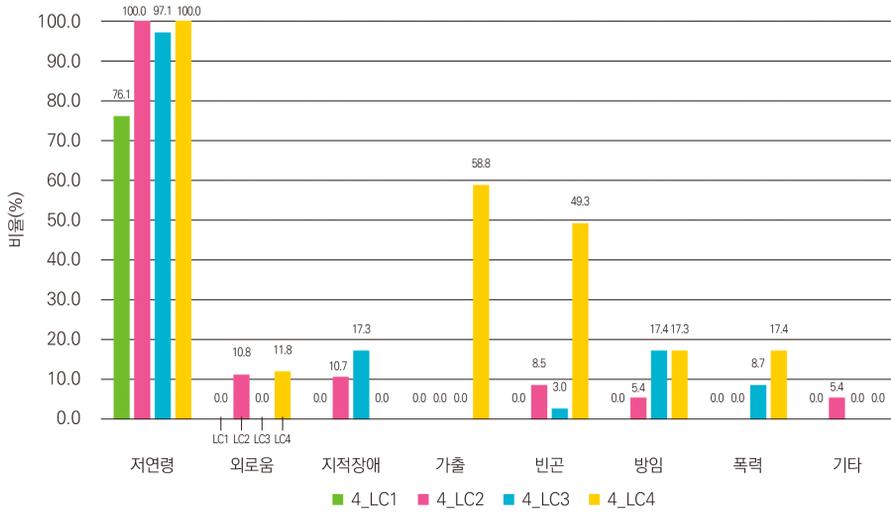
자는 주로 진로(43.4%)와 성적 호기심(21.7%)에 관해 피해자가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4_LC2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가해자 직업의 과반수가 학교/학원/보육원생(53.9%)이기 때문일 수 있다. 진로나 성적 호기심 외에도 4_LC2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관심사(5.4%), 취미(5.4%), 종교(5.4%) 등에 관심을 지닌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 [그림 2-3-9]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1단계_욕구 파악



그루밍 과정 1단계 취약성 파악의 경우, 모든 잠재 계층에서 피해자의 저연령을 취약성으로 파악(76.1~100.0%)하였다. 저연령은 모든 잠재 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잠재 계층을 구분해주는 취약성 파악 변수 또한 존재한다(그림 2-3-10) 참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가 학교/학원/보육원(53.9%) 상황에 있는 4_LC2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외로움(10.8%)과 지적 장애(10.7%)를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파악하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대다수 가족관계(75.3%)인 4_LC3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방임(17.4%), 폭력(8.7%) 상황 혹은 지적장애(17.3%)를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4_LC4에 해당하는 사건 가해자의 경우 가출(58.8%), 빈곤(49.3%), 폭력(17.4%), 방임(17.3%), 외로움(11.8%)을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4_LC4에 해당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다수(55.6%)가 온라인에서 맺어진 사실과 연관 지을 수 있는데, 4_LC4에 해당하는 가해자는 온라인에서 가출 혹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의 아동·청소년 혹은 폭력, 방임, 외로움 등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 [그림 2-3-10]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1단계_취약성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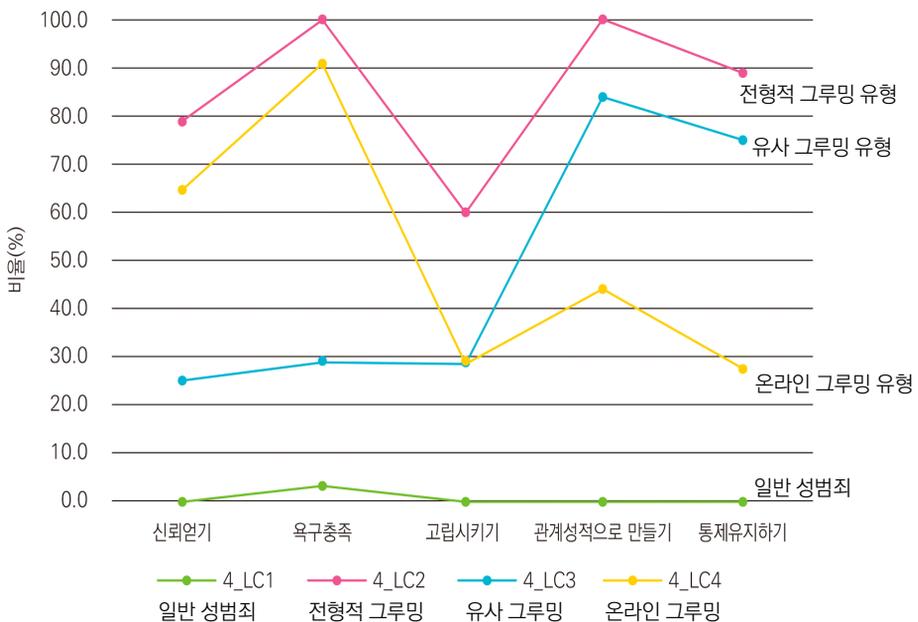


그루밍 과정 2~6단계 변수를 살펴보면, 4_LC1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루밍 과정 2~6단계 시행률은 0.0~2.6%로 4_LC1에 속하는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그루밍 과정 2~6단계를 거의 시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나머지 3개 잠재 계층(4_LC2, 4_LC3, 4_LC4)의 경우, 최소 24.7%에서 최대 100.0%까지 그루밍 과정을 모두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각 단계별 응답 패턴에서 차이를 보인다(그림 2-3-11) 참고). 4_LC2의 경우, 모든 그루밍 과정에서 4개 잠재 계층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_LC2 내에서는 욕구충족과 관계 성적으로 만들기 단계가 100.0%로 가장 높고, 고립시키기 단계가 이보다는 약간 낮은 59.8%를 보였다. 나머지 2개 잠재 계층인 4_LC3과 4_LC4는 고립시키기 단계가 30.0% 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4_LC1(0.0%)보다는 높고 4_LC2(59.9%)보다는 낮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루밍 과정 중 신뢰 얻기와 욕구충족, 관계 성적으로 만들기와 통제하기의 단계에서 패턴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4_LC3의 경우, 신뢰 얻기-욕구충족-고립시키기 단계가 24.7~29.0% 수준으로 4_LC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지만, 관계 성적으로 만들기-통제 유지하기 단계 각각 83.5%, 74.6%로 4_LC4보다 높다. 반면, 4_LC4의 경우 신뢰 얻기-욕구충족 단계는 각각 64.4%, 90.6%로 4_LC3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지만, 고립시키기-관계 성적으로 만들기-통제 유지하기의 단계가 27.4%~43.7%

로 4_LC3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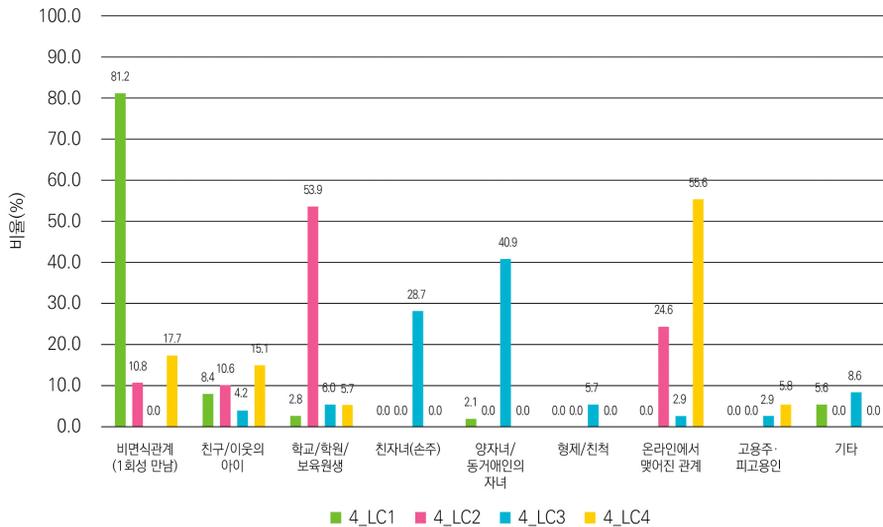
그루밍 과정 1단계 취약성 파악의 경우, 모든 잠재 계층에서 피해자의 저연령을 취약성으로 파악(76.1~100.0%)하였다. 저연령은 모든 잠재 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잠재 계층을 구분해주는 취약성 파악 변수 또한 존재한다(〈그림 2-3-10〉 참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가 학교/학원/보육원(53.9%) 상황에 있는 4_LC2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외로움(10.8%)과 지적 장애(10.7%)를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파악하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대다수 가족관계(75.3%)인 4_LC3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방임(17.4%), 폭력(8.7%) 상황 혹은 지적장애(17.3%)를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4_LC4에 해당하는 사건 가해자의 경우 가출(58.8%), 빈곤(49.3%), 폭력(17.4%), 방임(17.3%), 외로움(11.8%)을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4_LC4에 해당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다수(55.6%)가 온라인에서 맺어진 사실과 연관 지을 수 있는데, 4_LC4에 해당하는 가해자는 온라인에서 가출 혹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의 아동·청소년 혹은 폭력, 방임, 외로움 등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 [그림 2-3-11]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그루밍 과정 2~6단계



앞서 언급한 2개의 잠재 계층모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변수가 잠재 계층을 면식과 비면식으로 구분해주고 있었다면, 4개의 잠재 계층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보다 세부적으로 잠재 계층을 구분해주고 있었다(그림 2-3-12) 참고). 먼저 4_LC3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대부분(75.3%)이 친자녀(손주), 양자녀/동거 애인의 자녀, 형제/친척으로 가족관계로 나타났으며, 4_LC2의 경우 학교/학원/보육원생이 반 이상(53.9%)을 차지하였다. 4_LC4의 경우 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가 반 이상(55.6%)을 차지하여 잠재 계층 2_LC2가 4_LC2, 4_LC3, 4_LC4의 3개 잠재 계층으로 나뉜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4_LC1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비면식인 경우가 대부분(81.2%)을 차지하여 2_LC1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 [그림 2-3-12] 잠재 계층이 4개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잠재 계층이 4개인 모형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4_LC1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가 적었고, 대부분 비면식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저연령이라는 취약점 파악을 하였다라는 점을 제외하면 가해자가 그루밍 단계를 거의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잠재 계층이 2개인 모형에서의 2_LC1과 유사한 패턴으로, 일반 성범죄 사건으로 명명할 수 있다. 반면, 4_LC2, 4_LC3, 4_LC4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가 다수였고, 4_LC1에 비해 비면식 관계인 경우가 적었으며, 가해자가 그루

밍 단계를 시행한 경우가 4_LC1보다 많았다. 따라서 4_LC2, 4_LC3, 4_LC4는 2_LC2와 마찬가지로 그루밍 성범죄 사건으로 명명할 수 있다.

하지만 2개 잠재 계층 모형과 달리 4개 잠재 계층 모형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그루밍 성범죄의 유형이 나뉘었는데,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하는 3개 계층(4_LC2, 4_LC3, 4_LC4)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4_LC2에 속하는 가해자는 그루밍 과정 6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행하여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패턴을 보이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학교/학원/보육원 등 피해자와 사제관계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4_LC2의 가해자는 성적호기심과 진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적장애, 외로움 등의 취약성을 지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는 경향성이 있었다. 다음으로 4_LC3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족관계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폭력·방임 혹은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는 경향성이 있었다. 4_LC3에 속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욕구파악을 하는 경향성은 거의 없었으며 유사하게 신뢰 얻거나 욕구 충족 단계도 다른 그루밍 범죄 계층(4_LC2, 4_LC4)에 비해 적게 시행하였다. 대신 4_LC3의 가해자는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거나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하였다. 마지막으로 4_LC4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가출·빈곤·폭력·방임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4_LC4에 속하는 가해자는 욕구 파악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아동·청소년의 신뢰 얻기, 욕구 충족 등의 단계를 높은 수준으로 시행하였고,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거나 통제를 유지하는 경향성은 다른 그루밍 범죄 계층(4_LC2, 4_LC3)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4_LC2, 4_LC3, 4_LC4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특징을 보이며 일반 성범죄에 해당하는 4_LC1에 비해 높은 수준의 그루밍 과정이 나타난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4_LC1을 일반 성범죄, 4_LC2를 전형적 그루밍 유형, 4_LC3을 유사 그루밍 유형, 4_LC4를 온라인 그루밍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4. 최종 잠재 계층모형 선택

잠재 계층 분석 결과, 2개의 잠재 계층이 일반 성범죄와 그루밍 성범죄를 구분하는 경향성을 보이었고 4개의 잠재 계층은 일반 성범죄 사건과 그루밍 성범죄 사건을 구분할 뿐 아니라 그루밍 성범죄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4개의 잠재 계층을 설정한 모형을 최종 채택하고, 각 잠재 계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분석하고 명명하였다. 다만 본 분석의 결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잠재 계층 분석에서 도출된 잠재 계층은 실재하는 집단이 아니라 응답 패턴을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도출된 집단이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한 4개의 잠재 계층의 유형별 특징을 보이는 성범죄자가 실재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 분석은 국내에 최근 그 개념이 도입되어 아직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의 세부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그루밍 연구와 관련 범죄 정책 마련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추후 본 분석에서 잠재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변수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측정 및 조사한 변수를 추가로 수집/분석하여 심화 연구를 진행한다면, 그루밍 성범죄 유형의 특징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3 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그루밍 관련 해외법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제 1 장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국내의 처벌규정 도입 논의

김 현 숙

제1장

국내의 처벌규정 도입 논의

우리나라에서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이 제정되고 3년이 지난 2006년으로 파악된다. 당시 국회의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정책으로서의 온라인 성매매 유도 처벌법안 마련을 위하여 논의하던 중 신학용 의원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채팅을 통해 어린이들을 유혹하는 행위, 그루밍과 사이버공간에서 어린이에게 심각한 정신적 성폭력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처벌하는 법이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고, 국가청소년위원장도 현재 연구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¹⁹⁾. 이후 2007.4.경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성행위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만나거나 만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하면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겠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청소년과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행위를 목적으로 청소년과 만날 경우에도 처벌”²⁰⁾하는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²¹⁾.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고자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에 2건 발의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은 안을 정부안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삭제되었다가,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2009.6.9. 전부 개정되면서 제10조제2항(현행 제15조)에 반영되었다.

19) [기고] 인터넷, 또 청소년 성매매에 악용, 전혁희(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장), 여성신문, 2007. 6. 15.자(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56)(2020.1.3. 최종검색)

20) “아동 성범죄 탈출구는 어디인가?”, 아시아경제 2008.4.2.자. (www.asiae.co.kr/read.jsp?idxno=305278§ion=S1N53)(2020.1.3. 최종검색)

21) 이유진 외, (연구보고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122쪽.

그런데 이 법률은 시행된 지 불과 1년도 안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2010년 10월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두 사람의 사건을 맡은 경찰에서는 위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에 대가가 없고, 학생이 만 13세를 넘은데다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고, 이 사건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를 위해 유인하는 경우,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청소년이 '좋아해서', '서로의 합의 하에', '대가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법무부 관계자의 인터뷰처럼 당시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가출청소년의 원조교제 같은 '자발적 선택'으로 보았던 까닭에 2003년의 영국 그루밍 처벌법이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려고 시도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낮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자체를 '성착취'로서 '의제강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끝으로 2017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자는 논의는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디지털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디지털 성폭력(특히 몰래카메라, 보복적 성적 영상물(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과 후속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피해 중 한 형태로 다시 온라인에서의 성적 그루밍을 처벌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언론매체에서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의 예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15세인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게 한 사안에서 '사랑하는 사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또한 종교인들의 그루밍 성범죄, 10대 보육원생을 그루밍한 공무원 등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권력형 성범죄의 한 형태로서 성적 그루밍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그루밍 단계에서 그 행위를 처벌하자는 개정안은 2019년에 처음 발의(2019. 5. 3., 의안번호

2020176)되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를 위해 유인한 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의도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하에서는 이미 성적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들의 논의내용을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아동에 대하여 성적 인 목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게 된 국가의 현황은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2017(1st ed.), p.39-56을 참조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한 조항이 따로 있는 국가', '온라인 그루밍의 정의가 있는 국가', '아동과 만날 의도로 온라인 그루밍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국가', '아동과 만날 의도와 관계없이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국가', '아동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이 중 모두 처벌하고 있는 국가는(2017년 기준)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프랑스, 독일,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남아프리카, 스페인, 영국, 미국 등 24개국이었다. 이 글에서는 위에 열거한 국가 중 유럽에서 가장 먼저 그루밍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한 영국과 행위를 자세하게 열거하여 규정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비교적 최근에 다양한 논의가 전개 중인 네덜란드와 미국의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판례 등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해외의 입법과 처벌사례 분석

김 현 숙

제2장

해외의 입법과 처벌사례 분석

제1절 | 성적 그루밍의 범죄화 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적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자는 논의가 먼저 시작되었던 곳은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그루밍 행위를 처벌한 영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루밍은 범죄의 예비 또는 미수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특성에 따라 어떤 단계에서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적 그루밍 행위를 범죄화하는 논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쩌면 이 주제는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2절 | 주요국의 관련 법제 및 판례

1. 영국

영국은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을 제정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범죄 행위(제9조) 뿐만 아니라 아동 포르노의 제작, 유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 아동에게 타인의 성행위를 보게 하는 행위(제11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그루밍 행위(제15조)를 모두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아동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행한 학대(제16조-제24조)를 비롯하여 친밀한 관계(특히

가족, 친족관계 등)에서의 성범죄(제25조-제29조) 등의 행위도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다.

2003년 법 제정 당시 영국 정부는 동법 해설서²²⁾를 통하여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 어디에서나 통신을 통해 아동과 연락을 취하거나 아동의 신뢰를 얻어서 아동을 상대로 '관계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접촉(만남) 이전의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동법을 제정함으로써 성적인 행위를 할 의도로 18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만나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을 포착하여 미연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Sexual Offences Act 2003

제15조(성적 그루밍 등을 위해 아동을 만나는 행위)

-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18세 이상의 사람(A)이 저지른 경우,
 - (a) 1회 이상 다른 사람(B)과 만나거나 의사소통하고 부수하여
 - (i) A가 의도적으로 B를 만나거나
 - (ii) A가 다른 곳에서 B를 만나려고 이동하거나 만나기 위해 약속을 정하거나
 - (iii) B가 다른 곳에서 A를 만나려는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 (b) (a)(i)에서 (iii)에서 언급된 만남 동안 또는 만남 후에 A가 B와 또는 B에 대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경우, 만약 그러한 행위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고,
 - (c) B가 16세 미만이고
 - (d) A가 합리적으로 B가 16세 이상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
- (2) 제1항에서
 - (a) A가 B와 만나거나 의사소통한다는 의미는 A가 다른 곳에서 B를 만나거나 다른 곳에서 또는 어떤 수단으로 B와 소통한다는 의미이다.
 - (b) 관련된 범죄의 의미는
 - (i) 제1부에 규정된 범죄
 - (ii) 삭제
 - (iii) 잉글랜드와 웨일즈 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i) 목에서 규정된 범죄가 아니지만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i) 목에서 규정된 범죄에 해당한다.
- (3) 삭제
- (4) 본 조항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는 자는
 - (a) 약식 기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벌금형, 또는 둘 다에 처한다.
 - (b) 정식 기소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아동과의 성적인 의사소통)

-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18세 이상의 사람(A)이 저지른 경우,
 - (a)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A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B)와 의사소통하고,
 - (b) 해당 의사소통이 성적이거나 B가 (A 또는 다른 사람과) 성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고,
 - (c) B가 16세 미만이고, A가 합리적으로 B가 16세 이상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

22) Sexual Offences Act 2003 Explanatory Notes Section 15, (www.legislation.gov.uk/ukpga/2003/42/notes/division/5/1/15)(2020.1.3. 최종검색)

- (2)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 의사소통은 성적이다.
- (a) 의사소통의 일부가 성적 행위와 관련되거나
 - (b) 합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일부가 성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a)에서 성적 행위는 합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성적이라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 (3) 본 조항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는 자는
- (a) 약식 기소인 경우,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벌금형, 또는 둘 다에 처한다.
 - (b) 정식 기소인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위 제15조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뒤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 또는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 10년 미만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행해지는 범죄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성매매에 이를 국한하지 않고,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 그루밍, 노출과 관음증 같은 비접촉적 범죄에서 아동 성매매와 같은 접촉 범죄까지 아동에 대한 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Ioannou, 2018).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의 그루밍 행위는 성인이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아동을 길들이기 위한 다양한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루밍 관련 형사처벌 규정은 성인이 의도적으로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15조의 법정형은 10년 미만의 구금형이고, 일반적인 양형기준은 1-7년의 구금형을 선고²³⁾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2월 3일 이후의 기소건에 대해서는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2003)의 제226의A조의 규정목적에 맞도록 특정 범죄행위(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범죄들)에 대하여서도 성범죄법 제15조의 양형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영국에서 성적인 학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아동 그루밍(child grooming)을 범죄화하게 된 것은 여성과 아동의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특히 특정지역에서 폭력집단이 이웃의 피해자를 길들이는 등의 지역화된 그루밍 또한 2010년 영국의 ‘아동착취와 온라인 보호본부(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²⁴⁾에 의하여 아동학대로 유형

23) Sentencing Council, Sexual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2014, p.63.(www.sentencingcouncil.org.uk/wp-content/uploads/Feb-2016-Sexual-Offences-Definitive-Guideline-web-1.pdf)

24) A National Crime Agency Command/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 (www.ceop.police.uk/safety-centre)

화되었다. 동 본부는 국가범죄기구에 속한 경찰조직으로서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위험성 단계평가나 그루밍의 유형에 대한 예시, 보고서 등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해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 있다.

2013년 하원의 위원회(House of Commons Home Affairs Select)에서 발간한 보고서²⁵⁾에 따르면 지역적인 그루밍의 가해자들은 최초의 접촉 이후 아동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지되어 있는 일명 간식(술, 담배, 마약 등)을 제안하면서 '남자친구'라고 자신을 지칭하기도 하고, 다른 갱단의 조직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며, 다른 조직으로 밀매가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그루밍을 '스트리트 그루밍(street grooming)'이라고 하는데, 최초로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것은 2003년 8월 경 방영된 다큐멘터리²⁶⁾였다고 한다. 2013년의 위원회보고서가 공표되기 한해 전인 2012년 이 스트리트 그루밍 사건에 연루된 범죄조직에 대하여 여러 건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년에는 2013년의 보고서와 2012년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하여 영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현황을 조사²⁷⁾하고, 그 결과 25명의 아동학대 범죄자를 기소 후 유죄판결을 내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도 성적 목적으로 아동과의 접촉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2003년 성범죄법에는 성적 그루밍 형사처벌 규정 보완을 위한 민사 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침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간주되는 경우, 성범죄 전력과 관계없이 그로부터 특정 아동 내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는 이메일이나 대화방, 학교나 놀이터 주변에서 아동과 명시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례들과 같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보다 훨씬 광범위한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25) House of Commons Home Affairs Committee,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the Response to Localised Grooming, Second Report of Session 2013-14, Vol.1, 2013.7.10.(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314/cmselect/cmhaff/68/68i.pdf)

26) Asian rape allegations, Channel 4 News, 2003.8.27.(www.channel4.com/news/articles/society/law_order/Asian%2Brape%2BAllegations/256893)(2020.1.3. 최종검색)

27) Child sexual abuse ring in Halifax: 25 men charged - police reaction, Halifax Courier 2015.2.9.(www.halifaxcourier.co.uk/news/crime/child-sexual-abuse-ring-in-halifax-25-men-charged-police-reaction-1-7096362#ixzz42ztRnum)(2020.1.3. 최종검색); Last two men sentenced in Calderdale's biggest child sex abuse case, Halifax Courier, 2016.7.24., (halifaxcourier.co.uk/news/last-two-men-sentenced-in-calderdale-s-biggest-child-sex-abuse-case-1-7982099)(2020.1.3. 최종검색)

하고,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영국의 성범죄법을 근거로 그루밍 행위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사례들은 범죄 실행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의 그루밍을 처벌한 것이지만, 이후 추가적인 범죄를 실행할 의도로 그루밍을 한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범죄의 예비음도, 미수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

○ NHS의 간호사 Dale Bolinger 사건(2014)

- 피고인은 국립병원(Margate의 Queen Mother 병원에서 근무) 간호사로 58세인 독일계 미국인이다. Eva로 알려진 멕시코 소녀(14세)를 Dark Fetish Network라는 웹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면서, '식인(cannibal)'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우리는 사랑을 나눌 것이며, 이후에 내가 당신을 먹을 것입니다. 나는 매우 부드럽게 당신을 대할 것이고, 당신을 나의 식탁에 준비하는데 공을 들일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 Broadstairs에서 도끼를 사서 기차를 타고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할 일을 알려주었으나, 피해자는 원래 만나기로 했던 Ashford International 역에 나타나지 않았다. FBI는 그 즈음 여성을 납치, 강간, 요리하고 먹으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를 영국 경찰에게 알려 공조수사로 2013년 2월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가 발견되었고, 이 이메일을 자신의 집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환상과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자신이 역까지 가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면서 피해자가 도착하면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사진 중에는 6-9세로 보이는 소녀가 빙판에 알몸으로 누워 있고, 그 몸이 사과로 덮인 이미지가 있었다)
-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나는 아이들에 대해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는 않지만, 음식으로는 흥미롭게 느낀다"라고 말하는 한편, 누군가를 죽이거나 인간의 살을 먹거나 성폭행을 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말했다²⁸⁾.
-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을 그루밍하려고 하였던 점, 2010년 한 여성에게 유해 물질(세정제)을 투여한 점[마른 세제를 컵에 든 물에 타서 제공],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음란물(사진 2장)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를 이유로 선고유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정신과 분석을 통해 9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선고: 2014. 9. 24)
- 피고인은 영국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조기 석방된 후 미국으로 추방되었다.²⁹⁾

○ The Attorney General v. Miguel Angelo Pereira De Freitas, [2019]JRC186

- 2019. 10. 4. 선고 (Royal Court)
- 피고인은 2019. 7. 26. 1) 음란영상, 메시지 등을 통신수단으로 보낸 행위에 대한 2002년 통신법(저지) 위반, 2) 여아에 대한 성적 그루밍 행위에 대한 2018년 성범죄처벌법(저지) 제15조 제5항 위반, 3) 술을 마시고 질서위반을 한 행위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 피고인의 성적 그루밍 행위에 대하여는 2년의 구금형이 선고되었고(1과 3에 대하여는 각각 6개월 구금형과 2주 구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총 2년 6개월의 구금형을 연속적으로 집행), 6년간 성범죄자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 (그루밍에 대한 사실관계) 피해자는 12세로 부모님, 자매(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2019.1.16.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친구요청을 보냈으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2살이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그녀에게 아름답다며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내고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의 대화를 아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우리가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모두 삭제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자신의 언니에게 말을 하였고, 언니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³⁰⁾.

○ R. v. David Jenkins, [2019] EWCA Crim 1576

- 2019. 9. 13. 선고, 항소법원 형사부
- 피해자 ER은 2000.9.9. 출생으로 15세가 된 2016년 4월-5월 사이 온라인으로 피고인과 대화를 시작하였다. 그녀는 "Daddy Dom Little Girl"이라는 의미로 DDLG라는 검색 용어를 트위터에 입력하였고, 피고인이 트위터를 통해 개인메시지를 보내면서 온라인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ER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15살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40대라고 말하였으나, 실제 그의 나이는 1960.7.9.생으로 55세였다.
- 그들의 온라인상 관계는 2016년 여름 동안 계속되었으며, 피고인은 심지어 피해자에게 "pack animal"이라고 통칭되는 온라인 헌터들에 대하여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까지 했다. 그는 "그들은 네게 세계를 다 얻을 듯이 약속한 후 사진을 받으면 연락을 끊을 것이다. 100% 확신이 없으면 보내지 마라. Dom만이 너를 해방시킬 수 있으며, 너는 Dom 안에서만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피해자는 "멋지고 믿음직해 보인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기쁘다. 나쁜 Dom 들 때문에 조언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네가 같은 방법으로 다치게 될까 걱정했다"는 리트윗을 하였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ER의 신뢰를 얻은 피고인은 성행위를 하게 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그루밍을 하였다.
- 피해자는 이후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에게 보내거나, BDSM의 관계에서 통증을 관리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길들여졌다. 2016. 9. 4. 아직 16세가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 자위행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피어싱을 하게 하고, 스스로 만지게 하는 등의 대화를 포함하여 사진, 메시지 등을 다양하게 보내게 하였다(이후에도 이는 계속되었지만, 영국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만 그루밍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후의 그루밍은 처벌대상이 아님)
- 2016년 11월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침실에서 다양한 섹스도이, 애나멜구두 등의 물건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3차례 입금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실로 기소되어 6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의 항소도 기각됨).³¹⁾

영국 법원에서 다른 아동대상 그루밍 성범죄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규모가 컸던 사건으로 보도된 것은 2000년~2017년까지 이어진 여러 가톨릭교구 사건³²⁾과

28) "Cannibal case man found guilty"(www.warringtonguardian.co.uk/news/national/11354491.cannibal-case-man-found-guilty/), Warrington Guardian(2020.1.3. 최종검색)

29) "Child eater' sends town into panic"(www.frasercoastchronicle.com.au/news/child-eater-sends-small-town-into-panic-after-earl/3314727/), 2018.1.20.(2020.1.3. 최종검색)

30) 이 판결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췌, 번역 후 정리한 것임(www.bailii.org/cgi-bin/format.cgi?doc=/je/cases/UR/2019/2019_197.html&query=(%22grooming%22)(2020.1.3. 최종검색)

31) 이 판결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췌, 번역 후 정리한 것임(www.bailii.org/cgi-bin/format.cgi?doc=/ew/cases/EWCA/Crim/2019/1576.html&query=(%22grooming%22)(2020.1.3. 최종검색)

32) 대표적으로 버밍햄의 사제들이 아동에 대하여 성적 학대를 한 사건에 대하여 2007년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Catholic Archdiocese of Birmingham 'allowed priests to continue abusing

Huddersfield의 Leeds Crown Court에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12세~16세 사이의 피해자 3명에 대하여 그루밍을 한 후 강간 등을 한 혐의로 6명(32~39세의 남성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³³⁾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을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그 의견이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유죄판결을 받은 6인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제 성행위로 발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순수 그루밍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만을 다루고자 하였다.

2. 네덜란드

유럽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조약 제185호, 2001. 11. 23. 부다페스트³⁴⁾)에 따라 EU가입국가들은 컴퓨터사용사기, 저작권문제를 비롯하여 아동 포르노그래피(제9조), 네트워크보안침해 등을 범죄로 규정하였다. 즉, 사이버범죄협약 제9조(아동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범죄)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유포할 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생산한 행위, 제공하거나 제작하기 용이하도록 한 행위, 아동 음란물을 유포 또는 교환한 행위와 전송하거나 컴퓨터 데이터 저장장치에 저장 또는 이를 소지한 행위 등에 대하여 유럽연합 가입국들이 국내법으로 처벌조항을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기에는 노골적인 성적행위(sexually explicit conduct)가 포함된다. 유럽의회는 일명 란차로테 협약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성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협약’을 2007년 10월 25일에 채택하였는데, 동협약 제23조에 따라 아동음란물뿐만 아니라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는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³⁵⁾. 그 대표적인 예로 위의 영국 이외에 네덜란드를 들 수 있다.

children to protect its reputation”(www.birminghammail.co.uk/news/midlands-news/catholic-archdiocese-birmingham-allowed-priests-16458790)(2020.1.3. 최종검색). 이 보도에 따르면 가톨릭의 수도원, 교구, 수녀회 등에서 1930년부터 78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130여건이 기소되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고 한다.

33) “Huddersfield child sex abuse: Six men guilty of grooming”(www.bbc.com/news/uk-england-leeds-50170865), 2019. 10. 24.(2020.1.3. 최종검색)

34) Details of Treaty No.185(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85)(2020.1.3. 최종검색)

35) 대표적인 기구로는 european online grooming project가 있다. 현재는 이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네덜란드는 2011년 EU 지침(Meldpunt Kinderporno 2011, 2011/93/EU Directive)과 앞서 설명한 2007년 유럽 아동보호협약에 따라 네덜란드 형법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더불어 성적 그루밍에 대한 처벌법규를 제248의e조에 신설하게 된다.

네덜란드 형법(Wetboek van Strafrecht) 제248의a조에서 제248의e조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 중 제248의a조에 따르면 '금전이나 재물의 선물이나 약속, 사적인 관계나 기망을 통하여 확대하려는 고의'를 가진 사람이 18세 미만인 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제248의b조에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제3자와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48의c조에서는 18세 미만이거나 그러리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 앞에서 의도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그 기회에 그러한 행위가 담긴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위도 4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48의e조에서는 컴퓨터화 된 작업이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알고 있거나 16세 미만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했어야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제안한 자, 그 사람과 음란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성행위 이미지를 생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남을 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급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네덜란드의 아동 그루밍 처벌규정은 특히 온라인 그루밍에 대하여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영국과 달리 그루밍이 범죄로 규정되기 전까지 크게 논란이 되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루밍법을 제정하는데 이견이 크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아동이 디지털기기를 쉽게 조작하게 되면서 채팅 앱 등을 통해 성인과의 대화와 활발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입법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한다³⁶⁾. 그리고 네덜란드는 오로지 온라인 그루밍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영국이 18세 이상으로 가해자 연령을 제한한 반면 네덜란드는 피해자의 연령에만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³⁷⁾에 차이가 있다.

36) Kool, R., 'Prevention by All Means: A Legal Comparison of the Criminalization of Online grooming and its Enforcement', 7 Utrecht Law Review 46., 2011, p.61. 네덜란드는 위 EU조약에 2010년이 되어야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위 논문 각주 7)

37) 이를 호텔예약 또는 기차표 예매라고 표현하기도 함. Kool, R., 'Prevention by All Means: A Legal Comparison of the Criminalization of Online grooming and its Enforcement', 7 Utrecht Law Review 46., 2011, p.65.

네덜란드 최고재판소(Hoge Raad der Nederlanden)는 2011년 판결(ECLI: NL: PHR: 2011: BN 9287 Consideration 3.4.2)에서 제248의e에서의 automated wor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자동화된(컴퓨터화된) 작업이란 '저장을 위해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 매체로서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원거리 송수신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수단을 이용한 채팅방, 채팅 서비스, 게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위와 같은 형법 개정으로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온라인상 아동 그루밍에 대한 처벌례가 공개³⁸⁾되고 있는데, 이 중 대다수는 범죄태양이 온라인 그루밍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아동 성범죄를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히 '그루밍'에 한정하여 2017년~2019년간의 최고재판소 주요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ECLI : NL : HR : 2019 : 1736³⁹⁾

- 2019. 11. 12. 선고, 2019. 11. 12. 공개
- 사건번호 18/00583
- 관련사건 ECLI : NL : PHR : 2019 : 848
- 피고인은 형법 제248의a조의 알선을 시도한 행위와 제248의e조의 그루밍 시도행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불복하면서 알선을 시도한 행위는 하지 않았고, 그루밍 행위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행위는 사실상 예비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인은 최고재판소에서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개월,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당사자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를 보상조치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일부를 더 지원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1964년생이고, 피해자는 1997년 생으로서 사건 당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21일까지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선물(목걸이, 귀걸이, 매니큐어 등)을 주면서 연락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나와 이후에 무엇이든 하고 싶다면 내가 몇 년 동안 어떤 생각으로 너를 대했는지 알기 바라', '너를 만지고 너와 함께 잠자리에 들고 싶어. 기대해도 될까?', '뜨거운 욕조에 앉아 두 사람이 서로 섹스를 하면서', '난 너를 소중히 여겨주고, 너를 맞보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해'와 같은 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보

38) 2014년 당시에는 약 16개의 온라인 그루밍 관련 판례가 검색되었다는 글도 있다: Koen van der Wielen, "Measures against Online Grooming in the Netherlands: Based on Myths or Reality?", Master Thesis in Tilburg University, Aug. 2014, p.20. 그런데 최근 네덜란드 최고재판소(www.rechtspraak.nl)에서 그루밍을 검색한 결과 지방법원과 항소심법원을 포함하여 약 150여 건 가량이 검색되었고(최종검색일 : 2019.12.11.), 이러한 결과는 기소후 유무죄 판단을 받은 건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 멈춘 것은 결과물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성적 그루밍의 범위는 훨씬 확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9) 판결문의 원문은 이하 사이트에서 참조하였으며, 발췌 번역후 요약함. de Rechtspraak

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본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최고재판소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피해자에게 보냈던 선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그루밍을 하기 전의 단계인 예비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248의e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완성한 것이라고 보았다.

○ ECLI : NL : PHR : 2019 : 1158⁴⁰⁾

- 2019. 9. 3. 선고, 2019. 11. 12. 결정 공개
- 사건번호 : 18/03020
- 피고인은 1963년생 남자이고, 피해자는 2000년생 남학생인데, WhatsApp 공간에서 만나 성적 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14세 또는 15세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신중한 관계를 원한다는 말을 하면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반복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고, 그들이 서로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거주지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자고 제안하며 ‘금요일 또는 토요일은 어떨지’, ‘토요일 낮에 갈 수 있는가’, ‘금요일 저녁에 집에 혼자 있는지’ 등을 집요하게 물었고, 마침내 토요일에 피해자가 혼자 있다고 하니 그 시간에 쇼핑몰로 함께 가서 쇼핑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부모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들이 성적 착취에 기반한 그루밍 행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세계 되었다.
- 과거의 판례에 따르면 네덜란드 최고재판소는 란차로테 협약을 이유로 그루밍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성적 내용과 직접 만나기 위한 초대 이상의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아동과의 만남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하여 하고,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피고인이 실제로 아이와 신체적, 성적 접촉을 하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그루밍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본 사건의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어떤 대화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법 제248의e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즉, 과거 판례에 따른다면 아동과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동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제안한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만나기로 합의한 장소로 가거나, 피해자에게 그 장소에서 만나자는 지시를 하거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경우에만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동안 네덜란드 최고재판소는 위와 같이 ‘성적인 암시를 받고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행동을 취하는 것’과 같은 목표점이 뚜렷한 경우에만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하여 왔으나, 이 관례에서는 그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그루밍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WhatsApp을 통해 자신과 통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번호를 먼저 제공하고, 피해자가 언제 집에 혼자 있는지를 묻고 나서 자신도 금요일 저녁이 혼자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쇼핑몰에 나올 수 있는가, “내가 [나와 만나는 것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언제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등을 묻더니 이후 성적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아이는 15세, 피고인은 49세인데 서로 보고 싶어하고 사귀는 사이라는 점을 수시로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디인지, 혼자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형법 제248의e조의 그루밍 행위를 하였다고 본 것이다.

○ ECLI : NL : HR : 2017 : 579⁴¹⁾

- 2017. 4. 4. 선고, 2017 4. 5. 판결공개
- 사건번호 : 16/00044
- 피고인은 1974년생이고, 피해자는 2001년생으로 Stadskanaal에서의 범행일인 2011년 6월 10일 당시 형법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범행일시에 고의를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위에 앉고 싶은지’를 물으면서 다리를 약간 넓게

- 벌리고 앉아서 셔츠를 꼭 조인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조금 볼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사진을 찍도록 종용하였다.
- 피해자의 부모는 진술을 통해 딸이 2011년 6월 10일에 하이브 포니파크시티(Hyves en wel op Ponypark Citysite)라는 사이트에 접속해 있었으며, 이 사이트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공개된 사이트인데, 딸에게 '내가 네 성기를 볼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는 부의 직장에 전화를 하여 데이터를 컴퓨터에 보관하라고 하였고, 부는 오후 6시 30분 컴퓨터에 접속하여 딸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남자와 대화를 하였다. 대화상대방인 피고인은 딸의 다리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하였으며, 분홍색 파자마를 입은 딸의 다리 사진을 보내자 웹캠을 켜고, 이를 피해자의 부모가 녹화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 대화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물으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사진을 보내니 다리를 더 넓게 벌린 후 다리 사이가 잘 보이도록 찍어 다시 보내면 만났을 때 100 유로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포니파크시티라는 사이트는 포니파크(조랑말을 탈 수 있는 공원(Slagharen))에서 조랑말을 빌릴 수 있는 사이트로 주로 12세까지의 아동이 이용하는 곳이며,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에 그 사이트에 실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입증하는데 있었다.
 - 추가 : 최고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그루밍을 처벌하는 제248의e조를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상소한 내용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피해자는 총 4명으로 모두 범행당시 12세~16세의 아동이었고, 본 판결의 대상이 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직접 만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보거나, 피고인의 소변 위에 앉게 하는 행위,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린 행위, 약 4개월간 그루밍을 당한 후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행위(자신이 말한 것을 하지 않으면 화를 내겠다고 위협 하면서 피해자의 질입구를 만지는 행위도 함) 등의 범행이 모두 강간으로 인정되었다.

최근 네덜란드 최고재판소 판례를 통해 네덜란드는 스마트폰 채팅 앱, 인터넷 채팅 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한 네덜란드 형법 제248의e조를 적용한 판례를 통해 만남 후 금전이나 선물을 약속하고 성적 학대를 시도하는 행위나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 만남 후 어떤 행위를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거의 판례들은 주로 그루밍을 부수적인 행위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1~2년간의 판례들에서는 '그루밍'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지방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판례들도 다수 보이기 때문에 그루밍을 연구하는데 네덜란드의 판례추세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네덜란드 최고재판소의 그루밍 자체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주로 신뢰하기 쉬운 대상(예를 들면 학교 교사 등)이면서

(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HR:2019:1736)(2020.1.3. 최종검색)
 40) 판결문의 원문은 이하 사이트에서 참조하였으며, 발췌 번역후 요약함. de Rechtspraak (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PHR:2019:1158)(2020.1.3. 최종검색)
 41) 판결문의 원문은 이하 사이트에서 참조하였으며, 발췌 번역후 요약함. de Rechtspraak (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HR:2017:579)(2020.1.3. 최종검색)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6. 2. 9.의 판례(ECLI : NL : HR : 2016 : 213, 사건번호 14/05420⁴²⁾)에서는 13세~15세 사이의 소녀들과 성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6~18세였는데, 이 판례에서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강요하면서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그루밍 처벌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집행유예 2년, 3개월의 구류 또는 100시간의 노동판결(대안 : 50일 소년시설구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앞선 2017년 판례의 피고인에 비하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한 매우 경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3. 오스트레일리아

2007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여학생인 킬리 라이언이 온라인에서 친구가 된 아동 성범죄자에 의하여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킬리 라이언은 사망하기 약 18개월 전 온라인 채팅사이트 MySpace와 VampireFreaks.com의 사용자였고, 멜버른에서 사는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하는 “브랜든 케인”이라는 인물과 온라인과 전화로 소통을 하면서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2007년 1월 경 킬리 라이언은 브랜든 케인을 만나러 멜버른으로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브랜든 케인은 게리 프란시스 뉴먼이라는 17세 아들을 둔 남자로 체포된 후 29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은 성범죄자에 의하여 살인피해자가 발생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첫 사건으로 불리면서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거세게 일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인터넷상 아동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비영리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온라인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입법로비활동을 하게 된다.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인의 25% 가량이 모르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었는데, 법률의 개정과는 별개로 아동을 위한 안전앱으로 Thread라는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개정과정은 지난하여 2017년 5월 25일이 되어서야 형법 개정안(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⁴³⁾)이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에 제출⁴⁴⁾되었다. 동 법안은 2017년

42) de Rechtspraak(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HR:2016:213)에서 참조함. (2020.1.3. 최종검색)

43) Criminal Code Amendment(Protecting Minors Online) Act 2017(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A00050)(2020.1.3. 최종검색)

6월 23일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이 개정으로 1995년 형법 및 1914년 범죄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즉 형법 제474의25B조에서는 전송서비스를 통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해를 입히거나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하거나 계획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성범죄 및 아동포르노, 아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통신매체는 차단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었다.

뉴사우스웨일즈의 아동보호자법(Children's Guardian Act 2019, No.25)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sexual offence)의 정의에서 한 유형으로 아동에 대한 그루밍 행위를 들고 있으며(NSW Children's Guardian Act 2019, 제21조 제2호⁴⁵⁾), Crimes Act 1900 제66EB조⁴⁶⁾에서는 위법한 성행위를 위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을 유인하거나 그루밍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Crimes Act 1900 제66EB조(위법한 성행위를 위해 16세 미만의 아동을 유인하거나 그루밍하는 행위)

- (1) 본 조에서의 정의
 “성인”은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은 1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행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직접 또는 전화, 인터넷 기타 수단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b) 컴퓨터 이미지, 비디오 또는 출판물을 제공하는 행위
 “위법한 성행위”란 본조 또는 제10A장, 제15장, 제15A장(또는 경우에 따라 이 주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이 주에서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가 성립함)에 따라 범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 (2) (아동 매수) 위법한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의로 아동을 유인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 최대 형량
 (a)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15년의 구금형
 (b) 기타 - 12년의 구금형
- (2A) [그루밍 후 아동을 만나는 행위] 성인이

44) Criminal Code Amendment (Protecting Minors Online) Bill 2017(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d/bd1617a/17bd100)(2020.1.3. 최종검색)

45) 동 법령은 2019년 12월 4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뉴사우스웨일즈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자의 직책과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동법 제6조)되었다고 한다(www.legislation.nsw.gov.au/#/view/act/2019/25/)(2020.1.3.최종검색). 다만 본 법에서는 성범죄의 유형으로 그루밍을 정의하고 있을 뿐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46) “New South Wales Consolidated Acts(www5.austlii.edu.au/au/legis/nsw/consol_act/ca190082/s66eb.html)(2020.1.3. 최종검색)

- (a)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을 그루밍한 성인이 고의로 아동을 만나거나, 만날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
- (b) 그 성인 또는 다른 사람과 위법한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고의로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가 성립한다.
: 최대형량
 - (a)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경우 - 15년의 구금형
 - (b) 기타 - 12년의 구금형
- (2B) 제2A항을 목적으로, 한번 또는 그 이상의 이전 상황에서 성인이 음란한 자료에 노출시켰던 행위와 관련되었다면, 그 성인에 의하여 아동은 '성적인 목적으로 그루밍된' 것이다.
- (3) [아동에 대한 그루밍] 성인이
 - (a) 아동에게 음란한 자료, 중독성 있는 물질, 재정적이거나 물질적인 이익에 노출시킬 행위와 관련이 있고,
 - (b)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과 위법한 성행위로 유인하기 쉽게 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범죄에 해당한다.
: 최대형량 -
 - (a)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 12년의 구금형
 - (b) 기타 - 10년의 구금형
- (4) [위법한 성행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음] 본조에서의 범죄 과정에서 아동이 위법한 성행위로 유인되었거나, 위법한 성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할 필요는 있으나, 어떤 위법한 성행위였는지를 특정하거나 증명할 필요는 없다.
- (5) [아이를 속이는 행위] 본 조의 아동에 대한 준용에는 당해인이 아동이었다고 믿으면서 아동인 척한 사람에게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본 조에서 준용하는 것은
 - (a) 위법한 성행위에는 만일 그 사람이 아동이었다면 위법한 성행위가 되었을 어떤 행위도 포함하며,
 - (b) 피고인이 그 사람이 그랬을 것이라고 믿을 그 나이의 아동에게도 준용한다.
- (6) [가중책임] 14세미만의 아동이 본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본조 제2항, 제2A항 또는 제3항에서의 규정한 최대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 (7) [방어] 다른 사람이 아동이라고 믿지 않을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 조항 위반을 다투는 절차에서 항변할 수 있다.
- (8) [대안 판결] 제2항 또는 제2A항에 따른 범죄로 기소된 재판에서 배심원에게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으나 그 사람이 제3항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면, 배심원은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하고 제3항의 유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범죄에 대하여 추후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제66EB조 뿐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즈의 형법 제66EC조에서는 감독하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위법한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루밍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그루밍 행위에는 아동에게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감독하의 아동에 대하여 그루밍 행위를 하는 때에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행위는 6년 이하, 기타의 아동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퀸즈랜드 형법 제218B조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그루밍)

- (1)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성인이 16세 미만이라고 믿은 아동에 대하여 고의로 다음의 행위와 관련한 어떤 행위를 한 성인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 (a) 퀸즈랜드 기타 지역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인하는 행위
 - (b) 합리적 이유 없이 퀸즈랜드 기타 장소에서 어떤 음란물을 그 사람에게 노출시킨 행위
최대형량 - 5년의 구금형
-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인은 10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
- (a) 12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 (b) 성인이 12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믿은 경우
- (2A) 1992년 형벌과 양형에 관한 법 제161Q조는 본 조에 따라 가중사항도 포함한다.
- (2B) 1992년 형벌과 양형에서 규정된 가중사항으로 본조에 따라 기소된 경우, 동 조항은 Crown Law Officer의 동의 없이 제시할 수 없다.
- (3) 제1항 a호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행위와 관련있다고 본다.
- (a) 사람의 신체에 대한 성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 (b) 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는 경우
 - (c) 그렇지 않으면 음란함에 기초한 행위를 하는 경우
- (4) 제3항은 성교 또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에 한정하지 않는다.
- (5) 제1항 a호는
- (a) 성인이 특정 성행위를 맺을 사람을 쉽게 조달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 (b) 성행위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인이 알았을 상황이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 (c) 또한 성인이 성행위를 유인할 의도였다는 점을 아동이 알았다는 점도 문제되지 않는다.
- (6) 제1항에서, 성인이 실제로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상의 사람이라는 점도 문제되지 않는다.
- (7) 16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이라는 점을 믿지 않을만한 반대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그 성인은 그 나이 미만이었다고 믿었다고 본다.
- (8) 성인이 적어도 16세에 도달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는 방어권 행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 (9) 제1항에서 정의한 범죄가 제2항 a호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범해진 경우에는, 최소 12세에 달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는 가중상황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있다.
- (10) 본 조에서
유인이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널리 유인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퀸즈랜드는 먼저 형법(Criminal Code Act 1899) 제218A조에서 16세 미만의 아동과 퀸즈랜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성행위를 할 목적 또는 의도적으로 유인할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대화를 한 성인은 10년 이하의 구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 아동이 12세 미만이거나 성인이 12세 미만이라고 믿었을 때에는 14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다가 제218의B조를 삽입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을,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⁴⁷⁾. 그루밍 범죄에

47) Queensland Consolidated Acts, CRIMINAL CODE 1899 - SECT 218B(Grooming Children Under 16). 특히 본 조항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퀸즈랜드

대하여 매우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만 그루밍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16세-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른 국가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주의 각 국가들은 이처럼 대부분의 유무선 온라인 인터넷 채팅방 등을 통한 그루밍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는 있으나, 채팅 또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의 사례는 최근 10년간 호주에서 발생하였던 그루밍 범죄 중 주목할 만한 점을 간추려 설명하였다.

○ Queensland Brisbane 지방법원 2010. 7. 28. 판결

- 피고인은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이를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13시간 동안 Cassie(인터넷 사용자 이름 : cassiedaluvbug)라는 14세 소녀를 가장한 경찰관과 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휴대 폰 번호를 물어보면서 성적인 질문(최근에 흥분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하거나 그녀의 성교육자가 되어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성기를 노출시킨 여성의 사진과 자신의 음모를 제거한 후 자위하는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보냈다.
- 퀸즈랜드 브리스반인 지방법원의 배심원들은 위의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기 위한 그루밍으로 판단하여 유죄 평결을 내렸다⁴⁸⁾.

○ ACT 2019. 6. 3. 판결

- 피고인은 호주 연방경찰청 직원(49세)으로 캔버라에 사는 11세 소녀(동거녀의 딸)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네 몸을 정말 보고 싶다”, “난 네가 짧은 치마를 입은 모습을 좋아한다”는 내용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이 해킹을 당하였으며, 비밀번호를 바꿨어야 했다고 말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계정을 해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목하기도 하였다. 위 메시지들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들이 일부 사진으로 찍어두기는 하였으나, 짧은 치마와 같은 옷차림을 언급한 내용들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그리고 남자는 메시지는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며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설령 자신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 대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⁴⁹⁾.
- 배심원들은 이 사건을 일주일간 논의한 끝에 유죄의 평결을 내리면서 형법 제474의B조를 적용하였고, 그 이유로 이 메시지를 본 11세의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 District Court 2019. 11. 13. 판결

- 피고인은 온라인에서의 안전을 보호하는 네트워크(Teen Support Network)의 설립자로 Adelaide에 거주하는 25세인 남성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은 이 네트워크의 활동으로 2017년 Young South Australian Award의 결선진출자 중 한명이었으며, 이같은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자, 온라인으로 많은 아동들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였고 여기에 접속한 아동들의 프로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포르노물에 노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b)).(www5.austlii.edu.au/au/legis/qld/consol_act/cc189994/s218b.html)(2020.1.3. 최종검색)

필을 검색한 후 아동들에게 나체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적 행위를 위해 만남을 시도”하였고, “15세 또는 16세의 아동이 포함된 다양한 연령대의 소년들과의 대화방”에서 15세 소년에게 공원에서 만나서 키스하고 포옹할 목적으로 “먼저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말하거나, 개인 프로필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13세 소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 피고인은 성행위를 위해 아동에게 그루밍 행위를 하면서 성적 착취를 위하여 아동의 나체사진을 소유한 것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Adelaide 지방법원은 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서 25년형을 선고하였다.⁵⁰⁾

그밖에 법원에서 피해자들과 감정적인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서의 그루밍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는 동성 간에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는 행위⁵¹⁾, 발기한 성기를 알 수 있는 속옷 차림의 이미지를 소셜 네트워킹 응용프로그램인 Grindr를 통해 보낸 행위⁵²⁾ 등이 있다.

4. 미국

미국은 연방법(18 USC §2422)을 통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성매매 또는 성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설득, 유인, 강요하는 경우 벌금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이를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18 USC §2425)⁵³⁾.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적 그루밍은 연방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다가 2009년에 이르러 아동 포르노의 수신 또는 배포 행위나 노골적인 아동에 대한 성적 묘사 등을

48) “Brisbane man found guilty of grooming “14-year-old” for sex online”(www.couriermail.com.au/news/queensland/brisbane-man-found-guilty-of-grooming-14-year-old-for-sex-online/news-story/88b802c94c5719c3c6abfe1dcf4d5f49?sv=b747b7c81df3609046f0f25ff754b0d3), 2010. 7. 28.

49) “Canberra man who sent Instagram messages to partner’s 11yo daughter found guilty of grooming”(www.abc.net.au/news/2019-06-03/man-found-guilty-of-grooming-child-via-instagram-messages/11173832)(2020.1.3. 최종검색)

50) “Former Young South Australian of the Year finalist jailed for grooming teenagers online”(www.abc.net.au/news/2019-11-13/former-young-sa-of-year-finalist-jailed-for-child-sex-messages/11699450)(2020.1.3. 최종검색)

51) Attorney-General for the State of Queensland v. Vizzard [2016] QSC 13(2016.2.1. 선고)

52) R. v. Webb, Callum James [2018] QCA 102(2018. 6. 1. 선고)

53) 18 U.S. Code Chapter 117 – Transportation for Illegal Sexual Activity and Related Crimes (www.law.cornell.edu/uscode/text/18/part-1/chapter-117) 참조.(2020.1.3. 최종검색)

온라인상(또는 컴퓨터로)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18 USC §2252A). 이 조문을 근거로 2009년 그루밍을 통해 아동포르노를 촬영하고 이를 배포한 사람에 대하여 연방법을 적용하여 4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플로리다 주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유혹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컴퓨터 포르노그래피 및 아동 학대 방지법”에 의거하여 3급 중죄(5년 이하의 징역형)로 처벌⁵⁴⁾하고 있다.

○ **United States v. Isabella, 17-1197, (10th Cir. 2019)**

- 2019. 3. 12.자 결정
- 2013년 9월 피고인 이사벨라(남자)는 14세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Minus를 통해 채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3개월 동안 두 사람은 휴대폰, Kik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 전자 메일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화를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기’, ‘천사’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공주’라고 칭하고 성관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나체사진을 포함한 이미지를 서로 보냈다. 대화 초기 그들은 거의 매일 전화통화 또는 채팅을 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성적인 대화와 사진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이사벨라의 전화에서 경찰관들은 메시지와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 피해자는 이사벨라와 대화 초기 14살이라고 밝혔고, 이사벨라는 자신이 거의 3배 정도의 나이라고 답하였으며 다시 39년 11개월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당시의 이사벨라의 나이는 57세였다. 이사벨라는 오하이오주에, 피해자는 콜로라도 주에 살았는데, 대화 중 콜로라도에 방문할 예정이니 가까운 호텔에서 나와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가면 함께 있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피해자는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내면서 ‘사진에 대해서 물어봐라. 특별하게 너에게만 준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잘 모르겠지만 매우 놀랬다’는 말을 되풀이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면서 ‘네 사진도 보내라’고 종용하였다.
- 피고인은 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총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채팅을 하거나 메신저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형법 제2422(b)조를 적용하였고 제10순회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United States v. Brand(known as Tempoteech, No. 05-4155-CR)**

- 2006. 10. 19. 제2 순회법원 선고
- 피고인 Matthew Adam Brand(36세)는 2004년 1월 10일 밤, Tempoteech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13세 소녀(실제로는 FBI를 도와준 민간인인 Stephanie Good으로 성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은 독신이라 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혹시 나이트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이후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피고인이 보컬 트레이너였음) 트레 이닝을 해줄테니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다.
- 당시 피고인은 뉴저지에 상대방은 뉴욕에 살았는데, 피고인은 맨하튼의 버스터미널에서 피해

54) The 2019 Florida Statutes 847.0135 Computer pornography; prohibited computer usage; traveling to meet minor; penalties.—(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Search_String=&URL=0800-0899/0847/Sections/0847.0135.html)(2020.1.3. 최종검색)

자를 만나 다시 버스를 타고 뉴저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거나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2004. 1. 22. 자신에게 Julie(Sara라는 닉네임을 쓴 FBI 조력인과 동일인물)라는 친구가 있으며, 그녀의 친구 줄리가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였고, 자신은 2.1. 차량 사고로 뼈가 부러져 얼마 동안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다시 줄리에게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어 '여자친구로서 사귀기를 원한다', '데이트를 하게 되어 영광이다', '당신의 것이 되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물건(성기)'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이를 원한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대화에서 피고인은 줄리에게 할 수 있는 성행위를 열거하면서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지거나, '손가락' 또는 '혀'로 다리 사이를 훑거나 핥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 하였고, 줄리가 혹시 아프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내 성기를 사용하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즉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을 하였다. 만나기로 약속한 날 FBI 요원이 버스터미널에서 감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거기에서 체포가 되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FBI 또는 그 조력인의 행위로 자신은 기소된 것이고 실제 소녀에게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기록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유인한 다른 행위들을 입증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본 판결에서도 제2순회법원은 제2422(b)조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피해자들(로 지칭된 사람들에게 보컬 트레이닝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여러차례의 대화는 그루밍 성범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State of Minnesota v. Muccio, 890 N.W.2d 914(2017)

- 2017. 3. 8. 미네소타주 대법원 선고
- 2014. 11. 15살짜리 아들이 있는 한 아버지가 아들의 아이패드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진은 여성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사진, 목에서 허리까지 알몸인 여성의 사진, 끈으로만 덮여 있는 여성의 엉덩이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들은 Krista Muccio(당시 41세, 여성)라는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15세 아동에게 직접 메신저로 전송된 것이었다.
- 15세 아동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진들을 받은 후 그녀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냈고, 이후 성적으로 노골적인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였으며, 애널 섹스를 포함한 하고 싶은 성행위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미네소타주 법 제609.352장 제2a조 제2항은 18세 이상의 사람이 '인터넷,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데이터 저장 또는 전송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이를 묘사하는 내용'을 아동 또는 아동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인이 통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네소타주 법을 개정하기 위한 소위 '미네소타 그루밍 방지법(Minnesota's Sexual Grooming Law)⁵⁵⁾'안 이 논의 중에 있다.
- 위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미네소타 주법의 규정이 매우 광범위하여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보장조항에 반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묘사한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 아동이 참여하지 않고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⁵⁶⁾'까지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규정하여 금지한 연방법을 개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 또는 대화였을 뿐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 미네소타 주 대법원은 미네소타주 법의 동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만, 항소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좀더 주밀하게 판단하라는 환송판결을 하였다.

55) 동 법안은 그동안 '느낌상 유죄라고 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미네소타주법 제609.342호의 규정을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바꾸면서 그루밍을 위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문서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의 미국 연방법원은 아동에 대한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그루밍 행위 중 아동에게 음란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아동을 그루밍한 후 성행위를 전제로 하여 여행을 하게 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도 함께 이동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주(텍사스, 오하이오, 미네소타 등)에서는 그루밍 행위의 양태를 성범죄로서 규정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온라인 또는 앱 채팅을 통하여 아동들에게 그루밍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유럽 각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었으나, 수정헌법 제1조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단지 표현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범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미국 연방 및 주의 그동안 입법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루밍 행위를 성적인 의도를 고려하여 성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처벌하는 것은 그만큼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기타

캐나다 형법에서는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설령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진짜 동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172조의1에 따라 아동을 유혹하는 행위(luring a child)에 대한 법정형을 2007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였고, 이를 다시 2015년에 1년 이상 14년 이하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약식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2년까지의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⁷⁾.

대해서는 위험가능성을 평가한 논문이 최근 발표되었다: Kelsey K. Chetosky, "Minnesota v. Muccio: The Constitutionality of Minnesota's Sexual Grooming Law",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Vol.114(online: scholarlycommons.law.northwestern.edu/cgi/viewcontent.cgi?article=1269&context=nulr_online), p.20에서 위 내용을 다루고 있음.(2020.1.3. 최종검색)

56) 535 U.S. 234, 239, 256, 122 S.Ct. 1389, 152 L.Ed. 2d 403(2002)의 판결을 근거로 함.

57) 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luring a child) (S.C. 2007, c. 20)(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07_20/page-1.html)(2020.1.3. 최종검색)

캐나다 형법 제172의1조(아동을 피어내는 행위)

172.1 (1) 통신이나 대화를 통해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범죄에 해당한다.

- (a)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그와 관계하여 제153조제1항, 제155조, 제163의1조, 제170조, 제171조 또는 제279의11조 또는 제279의2조제2항, 제279의3조제2항, 제286의1조제2항 또는 제286의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하였다고 믿을 수 있거나 그런 행위를 한 사람
- (b)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그와 관계하여 제151조 또는 제152조, 제160조제3항, 제173조제2항 또는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80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하였다고 믿을 수 있거나 그런 행위를 한 사람 또는
- (c)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그와 관계하여 제281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하였다고 믿을 수 있거나 그런 행위를 한 사람

[처벌]

(2)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 (a)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소 1년에서 14년을 넘지 않는 범위의 구금형을 선고하거나,
- (b) 약식결처에 따라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1일 이상 2년 이하, 6개월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한다.

[추정연령]

(3) 제1항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한 18세, 16세 또는 14세 미만이라는 나이는 피고인이 그 당사자의 나이가 아니었다는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나이 미만임을 믿었다고 추정한다.

[항변불가]

(4) 제1항a호, b호 또는 c호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 18세, 16세 또는 14세 미만이라는 나이는 피고인이 그 당사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방어외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더불어 캐나다는 2012년 ‘무질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중 하나로 계약 또는 합의로 아동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을 두게 되는데, 이 조항 역시 2015년 형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한조정되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그 나이를 초과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확인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동조에 따라 계약이나 합의를 한 경우에도 아동을 유혹한 행위와 같이 처벌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캐나다 형법 제172의2조(계약 또는 합의를 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

172.2 (1) 통신이나 대화를 통해 계약 또는 합의로 다음의 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에 해당한다.

- (a)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그와 관계하여 제153조제1항, 제155조, 제163의1조, 제170조, 제171조 또는 제279의11조 또는 제279의2조 제2항, 제279의3조 제2항, 제286의1조 제2항, 제286의2조 제2항 또는 제286의3조 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

- (b)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제151조 또는 제152조, 제160조제3항 또는 제173조제2항,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80조의 행위를 한 사람 또는
 - (c)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제281조의 행위를 한 사람
- [처벌]**
- (2)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 (a)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4년 이하의 범위에서 구금형을 선고하거나
 - (b) 약식절차를 통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일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나 6개월의 범위에서 구금형을 선고한다
- [추정]**
- (3) 제1항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한 18세, 16세 또는 14세 미만이라는 나이는 피고인이 그 당사자의 나이가 아니었다는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나이 미만임을 믿었다고 추정한다.
- [항변불가]**
- (4) 제1항a호, b호 또는 c호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 18세, 16세 또는 14세 미만이라는 나이는 피고인이 그 당사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방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a호, b호 또는 c호에 따른 기소에 대하여 항변하지 못한다.
 - (a) 피고인이 조정관 또는 조정관의 지시를 받은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그와 약정한 경우
 - (b) 피고인이 조정관 또는 조정관의 지시를 받은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그와 약정한 경우, 제1항a호, b호 또는 c호에서 언급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캐나다에서는 특히 스포츠분야에서의 아동 학대(아동 그루밍)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2019년 CBC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아마추어 스포츠에 참여한 코치 222명 이상이 지난 20년 동안 18세 미만의 피해자(600명 이상으로 추산함)와 관련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⁵⁸⁾고 한다. 그리고 캐나다 아동 보호센터(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캐나다의 K-12 학교에서 일하는 약 714명의 직원이 최소 1천2백 명의 아동에 대한 약 750건의 성범죄와 연관이 있다⁵⁹⁾고 한다.

아래에서는 캐나다 대법원이 위의 캐나다 형법 제172의1조에 따라 아동에게 성적 그루밍으로 판단하고 처벌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한다.

58) Commit to Kids는 캐나다 아동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스포츠에서의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commit2kids.ca/en/).(2020.1.3. 최종검색)

59) Child Sexual Abuse by K-12 School Personnel in Canada(protectchildren.ca/en/resources-research/child-sexual-abuse-by-school-personnel-in-canada-report/)(2020.1.3. 최종검색)

○ R. v. Legare, 2009 SCC 56([2009] 3 SCR 551)

- 2009. 12. 3. 선고
- 피고인(온라인에서는 17세라고 주장한 32세의 남성)은 온타리오 주에 사는 12세 아동(여성)과 2차례 온라인 채팅을 하였다. 그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자 피해자는 자신이 13세라고 대답하였고, 그에게 전화번호를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편을 보낼 주소를 알려주면서, 앞으로 '더티 토크'를 전화로 하겠다고 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 피고인은 전화대화 중 '나는 구강성교를 할 건데 네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말 없이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두 번의 채팅과 전화대화로 기소되었다(기소가 된 것은 위 대화가 있는 후 2년이 지나서 다른 성적 행위로 체포된 후 컴퓨터를 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사건이 수사내용에 추가되면서임).
- 제1심 법원은 가상의 온라인 이름과 익명의 프로필(나이를 속인 행위)에 따라 17세로 믿고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12세 아동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채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캐나다 형법 제172의1조를 적용하였으나, 제172의1조의 내용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재판당시 피고인의 상태(기망행위 등)를 잘못 판단한 점이 있으며, 1심법원의 판사가 형법의 동 조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법원의 판단을 철회하고 새로운 재판을 명하는 파기환송을 하였다. 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다시 유죄로 판단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⁶⁰⁾하였다.

○ R. v. Morrison, 2019 SCC 15⁶¹⁾

- 2019. 3. 15. 선고
- 피고인인 Morrison은 Craigslist의 "Casual Encounters"라는 섹션에 "아빠가 어린 소녀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온라인 광고를 게시하였고, Mia라는 14세 소녀로 위장한 경찰관이 광고에 응답하였다. 피고인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대화에서 '미아'를 자신과의 성관계에 초대하며 성적 행위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을 끝으로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성적 유인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제172의1조의 아동유인 조항이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항변하였는데, 대화 당시 상대 피해자를 대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라고 믿었으며(나이를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의사소통을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소형량을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하면서 4개월 구금형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항변하였다.
- 캐나다 최고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항변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고 아동유인 범죄를 입증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나이를 묻지 않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 제172의1조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범죄를 너무 협소하게 정의하여 오히려 온라인에서 만나는 성인이 아동에게 피해를 입힐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60) 사실관계 및 판단은 scc-csc.lexum.com/scc-csc/scc-csc/en/item/7832/index.do에서 발췌하여 번역하고 정리하였음.(2020.1.3. 최종검색)

61) scc-csc.lexum.com/scc-csc/scc-csc/en/item/17618/index.do((2020.1.3. 최종검색)

그러나 위의 2019년 판결과는 별개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에서의 대화를 이끌어가다가 신체적인 접촉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게 되면 온라인에서 성인과의 잠재적인 유해한 접촉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⁶²⁾도 여전히 제기되며 이 두 가지는 충돌점이 있기 때문에 정의와 증명, 아동의 보호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여러 유형의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을 통한 아동 그루밍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입법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여 왔다. 당시 스웨덴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서 서로 합의가 있었으면 성범죄가 아니라는 견해와 그 과정에서 그루밍과 같은 길들이기가 있었으면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견해, 합의가 있더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성범죄라는 견해 등이 제시⁶³⁾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루밍 금지법이 제정된 2009년 7월까지의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그루밍 성범죄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으로 나가지 않은 그루밍 단계에서의 범죄는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한다⁶⁴⁾. 한편 2009년 그루밍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스웨덴은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범죄에 대하여 특히 그루밍이나 성적 착취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Netclean Report로 발표하고 있다.

2018년에 발간된 동 보고서⁶⁵⁾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중 최근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동의 성적 학대관련 이미지물들의 제작, 공유, 배포라고 한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사건의 80% 가량이 아동에 대한 성학대의 결과물로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도 90% 이상이 아동이 강요를 받거나 강요 없이 다른 사람과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게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62) "R v Morrison: Child Luring Provisions are Tested by the Supreme Court of Canada", 2019. 3. 26.(www.thecourt.ca/r-v-morrison-child-luring-provisions-are-tested-by-the-supreme-court-of-canada/)(2020.1.3. 최종검색)

63) Eneman, M., Gillespie, A. A., Bernd, C. S., Technology and Sexual Abuse: A Critical Review of an Internet Grooming Case, ICIS 2010 Proceedings, 2010, pp.141.

64) Eneman, M., Gillespie, A. A., Bernd, C. S., Technology and Sexual Abuse: A Critical Review of an Internet Grooming Case, ICIS 2010 Proceedings, 2010, pp.144.

65) Netclean Report 2018: A Report About Child Sexual Abuse Crime (www.netclean.com/netclean-report-2018/)(2020.1.3. 최종검색)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가장 일반적인 나이대가 8-16세인데, 5-7세의 아동도 10%, 5세 미만의 아동이 7%에 달하여 매우 많은 아이들이 성적 그루밍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Bjorn Samstrom Case(2017)⁶⁶⁾

- 2017. 12. 41세의 썬스트롬(남자)은 영국, 미국, 캐나다 국적의 미성년자에게 이미지와 동영상 을 웹캠을 통해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스웨덴 읍살라 법원에서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27명의 미성년 피해자와 관련된 온라인 성범죄로 기소되었는데, 포르 노 사이트에 26명의 소녀 및 1명의 소년 사진을 게시하고, 자신과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친척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단 한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온라인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점을 '온라인 강간'으로 인정하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항변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은 그루밍보다는 '피해자의 기록을 저장하여 아동음란 물 소지'로 인한 것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총 110만 크로나(97,000파운드)를 배상하라고 명령하였고, 10년형을 선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의 수사관들은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압수한 비디오 중 소녀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발견하고 캐나다, 미국, 영국에 사는 26명의 소녀 중 18명을 찾아 연락하였으며, 증언을 받아 그 비디오를 법정에서 재생하였다.

한편 그루밍 금지법이 제정된 2009년 7월 1일 이후 스웨덴에서는 15세 미만의 아동과 인터넷으로 접촉하여 성행위를 의도한 그루밍 행위에 대하여 1년 미만의 구금형을 선고하도록 하였고, 법의 개정 당시 수백 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⁶⁷⁾되었으나, 실제로는 시행 후 6개월간 그루밍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단 한 건도 없었다⁶⁸⁾는 점에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66) "Swedish man convicted over 'online rape' of teens groomed into performing webcam sex acts", 2017.12.1.(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online-rape-conviction-bjorn-samstrom-grooming-webcams-sex-acts-victims-uk-us-canada-uppsala-court-a8086261.html) (2020.1.3. 최종검색)

67) 스웨덴에서 그루밍법이 개정되기 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데이터는 Shannon, D. (2008). Online sexual grooming in Sweden—online and offline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as described in Swedish police dat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9(2), pp.160-180를 참조하기 바람.

68) "Online sex 'grooming' law lacks teeth", 2010. 1. 24., (<https://www.thelocal.se/20100124/24556>)(2020.1.3. 최종검색)

제 3 장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소결 - 우리나라에서의 대응방안과 한계

김 현 숙

- 우리나라에서의 대응방안과 한계

이상에서 본 것처럼 아동과의 만남을 목적으로(또는 만남과 관계없이) 이뤄지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국가들은 비록 그 형태와 내용은 다양하지만 지향점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즉, 온라인에서 아동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그것이 추후의 직접적인 성범죄를 막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루밍이라는 행위 자체는 위에서 소개한 외국의 다양한 판례에서 피고인들 또는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죄가 아닌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아동을 만나서 실제로 무슨 행위를 하지 않았고(심지어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아동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단순히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형법상(또는 독립된 법률에 따라) 범죄로 처벌된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 성인은 일정 나이의 아동과 접촉을 제한하여야 한다면 미네소타 주법의 개정과정에서 불거진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적인 행동 등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럴 고의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선물이나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고 이에 '길들여져서'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의도한 대로 성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를 과연 완전한 동의 또는 합의에 의한 성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어떤 고의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하여 어떤 법 개정을 하고 정책을 구상해야 할지는 법률가와 국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방향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동의를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도록 기망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편이 옳다고 본다.

그렇다면 위에서 소개한 여러 나라의 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법제를 비교해 볼 때 성적 목적의 그루밍을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가, 또한 처벌한다면 어떤 단계, 어떤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 처벌하지 않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루밍 단계에서 행위를 처벌하자는 논의는 2003년 영국의 성범죄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차이가 몇 살이든, 성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나 강제가 없었던 것만 입증된다면 비록 성행위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다양한 사례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원조교제', '가출청소년의 일탈'과 같은 프레임에 갇혀서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고스란히 넘어오게 되면서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위 '자발적 성행위'로 이르기 전, 그 관계가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길들이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된 청소년의 보호자가 이를 신고하고 후에 성적 학대 또는 성관계를 위해 어떠한 유인이나 길들이미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더구나 온라인에서의 관계는 성적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로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진을 '자발적으로 보내게끔 유도하는 행위'만으로는 쉽게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스냅챗, 트위터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서 쉽게 삭제할 수 있는 대화방을 만들어 '대가 없이' 성행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소셜서비스매체에서 신고를 통해 계정정지를 하거나 자정을 요구하는 것 외에 사법처리를 하기 어려운 것이다.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행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현행법을 개정하여 성적 목적으로 아동과 접촉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범죄화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2019. 10. 29.에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2017638)'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범위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육기관,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도 적용함으로써 교육관계에서의 성범죄도 형법범으로 처벌하고자 하였다.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서는 '그루밍 성범죄'라고 표현하였으나, 여기에서도 '그루밍'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특히 예비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음 -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의도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자는 임재훈 의원 등 12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0176)은 현재까지 나온 개정안 중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법제에 가장 근접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동에게 오프라인으로 접근하여(학교나 놀이터 주변 같은 곳에서) 아동과 성적인 의사소통을 명시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필자는 정보통신망법 보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영국형 그루밍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영국식 모델을 취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목적 의사소통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적용할 때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그루밍 행위를 찾을 수 있는 '합정수사(또는 위장수사)' 기법을 제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성적 그루밍 행위는 당사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보호자가 매일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들여다봐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고수하다보면 오히려 더 깊이 숨기거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더 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데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대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앞서 제시하였던 여러 판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합정수사 또는 위장수사를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따로 문제삼고 있지는 않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합정수사에 대하여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며, 대법원은 이 중 범의유발형 합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의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범행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

을 용이하게 할 목적의 함정수사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그루밍 행위를 함정수사할 때에는 그 성적 의도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범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외국의 사례처럼 랜덤채팅에 위장수사를 하게 되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서 위법하게 될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2013. 3. 29. 여성가족부에서는 '수사관이 사이버공간에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여성청소년인 것처럼 위장활동을 하면서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현장으로 유인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선제적·예방적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⁶⁹⁾하기도 하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미 많은 그루밍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 외국의 사례들⁷⁰⁾을 떠올리면 온라인상의 아동에 대한 성적 그루밍 행위를 찾기 위해서는 경찰의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⁷¹⁾되지만, 그 한계와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미국 FBI의 경우 모든 그루밍에 대하여 위장수사를 하지 않으며, 특별히 국제(또는 주간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성매매, 아동을 그루밍하여 테러에 이용하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수사에서만 위장수사를 하고 있다.⁷²⁾

현재 우리나라에는 함정수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특별히 없고, 함정수사를 하지 않으면 드러내기 어려운 범죄(뇌물, 마약범죄 등)에서만 일부 수사기법으로 채용되고 있는데, 함정수사기법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우선 '그루밍 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을 전제해야 하므로 온라인 기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또는 착취행위를 먼저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69) 김한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형사법의 신동향 제42호, 대검찰청, 2014.3, 38쪽.

70) 예를 들면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는 미성년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의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법제화하거나 재판단계에서 그 위장수사의 내용을 증거로서 활용하고 있다: "Online grooming: Strike Force Trawler undercover police expose a dark world",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6.12.18(www.smh.com.au/national/nsw/online-grooming-strike-force-trawler-undercover-police-expose-a-dark-world-20161215-gtc6oo.html)(2020.1.3. 최종검색)

71) 같은 견해로는 김한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형사법의 신동향 제42호, 대검찰청, 2014.3; 김성현·석희진·김리원·이은정·서연주·이수정, "온라인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국내 및 국외 현행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14권제4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9; 이성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률적 규제방안", 형사정책 제31권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등이 있음.

72) Crimes Against Children/Online Predators(www.fbi.gov/investigate/violent-crime/cac)(2020. 1.3. 최종검색)

제 4 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결 론

윤 정 숙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일반 성범죄와 오프라인 성범죄, 온라인 성범죄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탐색해 볼 때,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하였다. 먼저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가지고 있고, 가해자 연령은 다소 젊은 경향을 보였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는 오프라인 성범죄자와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간의 차이가 적었다.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 41명 중 결혼(재혼)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해자는 20명(47.6%)이었다. 이는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 중 1명(8.3%)만이 기혼자이고, 일반 성범죄자 중 15명(27.8%)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의 직업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 성범죄자는 상대적으로 무직(53.7%)의 비율이 높은 반면,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모든 항목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범죄 지속 기간에서 세 가지 유형이 차이를 보였는데, 2일 이상 지속되는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의 약 4배 수준으로 많았고, 온라인 그루밍은 일반 성범죄의 약 3배 수준으로, 신뢰의 오용과 조종을 통한 지속적 성폭력은 오프라인 그루밍 성범죄에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지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긴 경우 친족관계 성폭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루밍 성범죄만을 놓고 볼 때 오프라인 그루밍의 경우 3년 이상의 그루밍 기간을 가진 사건의 비율은 40.4%로, 구체적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19.0%), 5년 이상(21.4%)으로 나타나, 온라인 그루밍에 비해 장기적으로 그루밍이 지속된 사건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온라인 그루밍에서는 1달 이상 3달 미만의 그루밍 지속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41.7%였다.

오프라인 그루밍이 성범죄 피해의 정도가 가장 심각하게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각 성범죄 유형 별 피해자의 동거인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오프라인 그루밍 피해자(86.1%)와 일반 성범죄 피해자(91.5%)의 대다수가 친족관계와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 것에 비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들은 35.7%가 친족 관계는 물론 친족 관계 외의 보호자도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가출상태, 또래끼리 모여 사는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각 성범죄 유형 별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그루밍에서의 피해자 음주상태(26.7%)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가 가출, 자취 등 보호자가 없는 거주 환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속해 있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는 O'Connell(2003)과 Williams, Elliott, Beech (2013)이 지적하였듯이 아동이 삶에서 그들을 지지해주거나 수용해주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즐기거나 감정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 등 보호자가 부재한 상태에 처해진 청소년들이 온라인 그루밍에 더 노출되어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조사한 사건들을 잠재 계층 분석한 결과, 2개의 잠재 계층이 일반 성범죄와 그루밍 성범죄를 구분하는 경향성을 보이었고 4개의 잠재 계층은 일반 성범죄 사건과 그루밍 성범죄 사건을 구분할 뿐 아니라 그루밍 성범죄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4개의 잠재 계층을 설정한 모형을 최종 채택하고, 각 잠재 계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분석하고 명명하였다. 잠재 계층이 4개인 모형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가 적었고, 대부분 비면식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저연령이라는 취약점 파악을 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가해자가 그루밍 단계를 거의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신뢰여부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루밍 단계의 대부분이 시행되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의 과반수는 면식 관계, 일부는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였다.

그루밍 성범죄 집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먼저 **[전형적 그루밍 유형]**은 그루밍 과정 1단계 욕구파악으로 주로 진로(43.4%)와 성적 호기심(21.7%), 취미, 관심사, 종교 등에 관해 피해자가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해자 직업의 과반수가 학교/학원/보육원(53.9%)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가해자는 그루밍 과정 6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행하여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의 패턴을 보였다. 또한, 성적 호기심과 진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적장애, 외로움 등의 취약성을 지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는 경향성이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대다수 가족관계(75.3%)인 사건은 [유사 그루밍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경우 가해자가 방임(17.4%), 폭력(8.7%) 상황 혹은 지적장애(17.3%)를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파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욕구파악을 하는 경향성은 거의 없었으며 유사하게 신뢰 얻거나 욕구 충족 단계도 다른 그루밍 범죄 계층에 비해 적게 시행하였다. 대신 이 유형의 가해자는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거나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하였다.

[온라인 그루밍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가해자의 경우 가출(58.8%), 빈곤(49.3%), 폭력(17.4%), 방임(17.3%), 외로움(11.8%)을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파악하였다. 즉 이에 해당하는 가해자는 온라인에서 가출 혹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의 아동·청소년 혹은 폭력, 방임, 외로움 등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가해자는 욕구 파악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아동·청소년의 신뢰 얻기, 욕구 충족 등의 단계를 높은 수준으로 시행하였고,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거나 통제를 유지하는 경향성은 다른 그루밍 범죄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 최근 그 개념이 도입되어 아직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의 세부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그루밍 연구와 관련 범죄 정책 마련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앞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에서 그루밍 관련 형사처벌 규정 및 적용의 예들을 확인한 결과, 많은 국가들이 그루밍을 성인이 의도적으로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하는 행위로 범죄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외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성적 그루밍 자체에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비범죄화하기 보다, 아동 성범죄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 과학적으로 이해하여 아동과의 성적 만남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되는 특정행동과 조건들은 그 자체로 분명히 범죄임을 형사사법당국은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그루밍 사건들은 지속기간이 몇 년 이상인 것이 상당하였으며

이러한 오랜 기간의 성적 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그루밍’이라는 과정을 ‘범죄화’하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은 요원할 것이 분명하다. 성인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신뢰관계를 오용하여 아동의 정신과 육체를 조종하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와 데이터 수집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그루밍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양형선고 및 가해자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등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기관적 협력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탁틴내일 (2017).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 어떻게 볼 것인가?**. (사)탁틴내일.
- 장다혜, 김수아. (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57.
- 정민철, 조영일. (2015).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개인 수준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지**, 15(3), 88-100.
- 정혜진, 박형준. (2010). 제도설계와 정책효과: 베이지언 (Bayesian) 게임이론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정책효과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 165-188.
- Bennett, N., O'Donohue, W. (2014). The Construct of Grooming in Child Sexual Abuse :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3(8), 957-976.
- Black, P. J., Wollis, M., Woodworth, M., & Hancock, J. T. (2015). A linguistic analysis of grooming strategies of online child sex offenders: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predatory sexual behavior in an increasingly computer-mediated world. *Child Abuse & Neglect*, 44, 140-149.
- Brackenridge, C.H. and Fasting, K. (2005). 'The Grooming Process in Sport: Narratives of Sexual Harassment and Abuse', *Autobiography*, 13, 33.
- Briggs, P., Simon, W. T., & Simonsen, S. (2011). An exploratory study of Internet initiated sexual offenses and the chat room sex offender: Has the Internet enabled a new typology of sex offender?. *Sexual Abuse*, 23.
- Burke, A., Sowerbutts, S., Blundell, B., & Sherry, M. (2002). Child pornography and the Internet: Policing and treatment issue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9(1), 79-84.
- Choo, K.-K.R. (2009). 'Online Child Grooming: A Literature Review on the Mis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for Grooming Children for Sexual Offences',

AIC Reports Research and Public Policy Series 103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Christiansen, J. and Blake, R. (1990). 'The Grooming Process in Father-Daughter Incest', in A. Horton, B. Johnson, L. Roundy, and D. Williams (eds), *The Incest Perpetrator: A Family Member No One Wants to Treat* (Newbury Park: Sage).
- Craven, S., Brown, S., and Gilchrist, E. (2006). 'Sexual Grooming of Children: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2, 287.
- Craven, S., Brown, S., & Gilchrist, E. (2006). Sexual grooming of children: Review of literatur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2(3), 287-299.
- Craven, S., Brown, S., and Gilchrist, E. (2007). 'Current Responses to Sexual Grooming: Implication for Prevention', 46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60.
- Davis, G., Hoyano, L., Keenan, C., Maitland, L., and Morgan, R. (1999). *An Assessment of the Admissibility and Sufficiency of Evidence in Child Abuse Prosecutions*, A Report for the Home Office by the Department of Law, University of Bristol (London: Home Office).
- De Santisteban, P., Bilbao, J. H., Alcázar-Córcoles, M., Gámez-Guadix, M. (2018). Progression, maintenance, and feedback of online child sexual grooming: A qualitative analysis of online predators. *Child Abuse & Neglect*, 80.
- De Santisteban, & Gámez-Guadix (2017a). Estrategias de persuasión en grooming online de menores: Un análisis cualitativo con agresores en prisión [Persuasion strategies in nline child grooming: A qualitative analysis with aggressors in prison]. *Psychosocial Intervention*.
- Eneman, M., Gillespie, A. A., Bernd, C. S. (2010). Technology and Sexual Abuse: A Critical Review of an Internet Grooming Case, ICIS 2010 Proceedings.
- Finkelhor, D., Mitchell, K.J., and Wolak, J. (2000). *Online Vicimization: A Report on the Nation's Youth*, Alexandria. VA: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 Gómez-Guadix, M., Borrajo, E., & Almendros, C. (2016). Risky online behaviors among adolescents: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roblematic Internet use,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meeting strangers online.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5*.
- Gillespie, A.A. (2004a). "Grooming": Definitions and the Law', 154 *New Law Journal, 586*.
- Gillespie, A.A. (2004b). 'Internet Grooming: The New Law', 204 *Childright, 10*.
- Gillespie, A.A. (2004c). 'Tackling Grooming', 77 *The Police Journal, 239*.
- Gillespie, A.A. (2005a). 'Tackling Child Grooming on the Internet: The UK Approach', 10 *Bar Review 4*.
- Gillespie, A.A. (2006b). 'Indecent Images, Grooming and the Law'. *Criminal Law Review, 412-21*.
- Gottschalk, P. (2011). 'Stage Model for Online Grooming Offenders'. in J. Davidson and P. Gottschalk (eds), *Internet Child Abuse: Current Research and Policy* (Abingdon: Routledge).
- Gupta, A., Kumaraguru, P., & Sureka, A. (2012). Characterizing pedophile conversations on the Internet using online grooming.
- Ioannou, M., Synnott, J., Reynolds, A.(2018), 'Comparison of Online and Offline Grooming Characteristic: An Application of the Victim Roles Mode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5, 291*.
- Kierkegaard, S. (2008), 'Cybering, Online Grooming and Ageplay', 24 *Computer Law and Security Report 41*.
- Kloess, J., Hamilton-Giachritsis, C., & Beech, A. (2017). Offense processes of online sexual grooming and abuse of children via internet communication platform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 Kool, R. (2011). 'Prevention by All Means: A Legal Comparison of the Criminalization of Online grooming and its Enforcement', 7 *Utrecht Law Review 46*.
- Kosaraju, A. (2008). 'Grooming: The Myth and Reality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246 *Childright 14*.

- Lorenzo-Dus, & Izura (2017). “cause ur special”: Understanding trust and complimenting behaviour in online grooming 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112, 68-82.
- Martellozzo, E. (2012). *Online Child Sexual Abuse: Grooming, Policing and Child Protection in a Multi-Media Worl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cAlinden, A. (2012). “Grooming’ and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Institutional, Internet, and Familial Dimensions”(Clarendon Studies in Crimin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McAlinden, A. (2006a). “Setting ’Em Up”: Personal, Familial and Institutional Grooming in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15 *Social and Legal Studies* 339.
- McLaughlin, S. (2009). Online Sexual Grooming of Children and the Law, *Communications Law*, 8.
- Mitchell, K. J., Finkelhor, D., & Wolak, J. (2005). The Internet and family and acquaintance sexual abuse. *Child Maltreatment*, 10(1), 49-60.
- O’Connell, R. (2003). A Typology of Child Cyber sexexploitation and Online Grooming Practices.
- Ormerod, D. (2011). ‘Case Comment—Sexual Offences: Meeting a Child Following Grooming’, *Criminal Law Review* 340.
- Ost, S. (2004). ‘Getting to Grips with Sexual Grooming? The New Offence under the Sexual Offences Act 2003’, 26 *Journal of Social Welfare and Family*, 147.
- Ost, S. (2009). *Child Pornography and Sexual Grooming: Legal and Societal Respon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ayle, E., Allegro, S., Hutton, L., Sheath, M., & Löf, L. (2014). Rapid skill acquisition and online sexual grooming of childre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9, 368-375.
- Ryan, T. J., Huss, M. T., & Scalora, M. J. (2017). Differentiating sexual offender type on measures of impulsivity and compulsivity.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24(1-2), 108-125.
- Salter, A. (1995). “Transforming Trauma: A Guide to Understanding and Treating Adult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 Sanderson, C. (2004). *The Seduction of Children: Empowering Parents and Teachers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Abuse*. London and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Shannon, D. (2008). Online sexual grooming in Sweden—online and offline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as described in Swedish police dat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9(2), 160-180.
- Spraitz, J., Bowen, K., Strange, L.(2018). 'Proposing a Behavioral Taxonomy of Priest Sexual Grooming', *International Journal for Crime, Justice and Social Democracy* 7, 1.
- Villacampa, C., & Gómez, M. (2017). Online child sexual grooming.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23, 105-121.
- Webster, S., Davidson, J., Bifulco, A., Gottschalk, P., Caretti, V., Pham, T., Grove-Hills, J., Turley, C., Tompkins, C., Ciulla, S., Milazzo, V., Schimmenti, A., and Craparo, G. (2012). *European Online Grooming Project: Final Report* (March 2012).
- Whittle, H., Hamilton-Giachritsis, C., Beech, A., & Collings, G. (2013). A review of online grooming: Characteristics and concer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 62-70.
- Whittle, H., Hamilton-Giachritsis, C., & Beech, A. (2015). A comparison of victim and offender perspectives of grooming and sexual abuse. *Deviant Behavior*, 36, 1-26.
- Williams, R., Elliott, I. A., & Beech, A. R. (2013). Identifying sexual grooming themes used by internet sex offenders. *Deviant Behavior*, 34, 135-152.
- Winters, G. M., & Jeglic, E. L. (2017). Stages of sexual grooming: Recognizing potentially predatory behaviors of child molesters. *Deviant behavior*, 38(6), 724-733.
- Winters, G., Kaylor, L., & Jeglic, E. (2017). Sexual offenders contacting children online: An examination of transcripts of sexual grooming. *The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23, 62-76.

2006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회의록, 2006.10.30.

A National Crime Agency Command/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www.ceop.police.uk/safety-centre)

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luring a child) (S.C. 2007, c. 20)
(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07_20/page-1.html)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0(NCJ 183014), 2000.8.(www.bjs.gov/index.cfm?ty=pbdetail&iid=408)

Child Sexual Abuse by K-12 School Personnel in Canada(protectchildren.ca/en/resources-research/child-sexual-abuse-by-school-personnel-in-canada-report/)

Criminal Code Amendment(Protecting Minors Online) Act 2017(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A00050)

Criminal Code Amendment (Protecting Minors Online) Bill 2017(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d/bd1617a/17bd100)

Details of Treaty No.185(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treaty/185)

House of Commons Home Affairs Committee,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the
Response to Localised Grooming, Second Report of Session 2013-14,
Vol.1, 2013.7.10.(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314/cmselect/cmhaff/68/68i.pdf)

Netclean Report 2018: A Report About Child Sexual Abuse Crime
(www.netclean.com/netclean-report-2018/)

OJJDP,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Crime, and Abuse: An Update”, 2015.9.
(ojjdp.ojp.gov/redirect-legacy/research/national-survey-of-childrens-exposure-to-violence.html(ojjdp.ojp.gov/sites/g/files/xyckuh176/files/pubs/248547.pdf)).

Sentencing Council, Sexual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2014, p.63.
(www.sentencingcouncil.org.uk/wp-content/uploads/Feb-2016-Sexual-Offences-Definitive-Guideline-web-1.pdf)

Sexual Offences Act 2003 Explanatory Notes Section 15, (www.legislation.gov.uk/ukpga/2003/42/notes/division/5/1/15)

The 2019 Florida Statues 847.0135 Computer pornography; prohibited computer

usage; traveling to meet minor; penalties—(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Search_String=&URL=0800-0899/0847/Sections/0847.0135.html)

Queensland Consolidated Acts, CRIMINAL CODE 1899 - SECT 218B(Grooming Children Under 16). (www5.austlii.edu.au/au/legis/qld/consol_act/cc189994/s218b.html)

18 U.S. Code Chapter 117 - Transportation for Illegal Sexual Activity and Related Crimes(www.law.cornell.edu/uscode/text/18/part-I/chapter-117)



Grooming in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and Future Policy Responses

Yoon, Jeongsook · Lee, Taehun · Kim, Hyunsook

'Sexual grooming' can be defined as a process in which a potential sexual abuser gains the trust of a targeted child and makes the child submissive to the abuse, subsequently. Sexual grooming occurs through the steps of 1) selection and 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child, 2) exclusiveness by introducing the idea of secret and isolation, etc., 3) sexual exploitation, and 4) control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On the sexual exploitation step, in particular, offenders often use specific strategies, such as (1) gently forming a relationship with the child to be portrayed as a 'romantic' liaison, (2) lowering the child's inhibitions with the objective of sexual abuse by exposing the child to obscene materials or by asking the child to send his/her photos to the offender, or (3) reinforcing the reciprocity by encouraging the child to participate in the sexual fantasies or by using a rather coercive or aggressive manner to re-strengthen the fantasies.

The present study aimed to identify in detail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grooming of children and juveniles.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analyzed relevant factors, including the offender's socio-demographic, psychological, victim-related, and sexual grooming factors by reviewing both relevant investigation and trial records.

Som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were found as the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sex crime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by classifying the cases into general,

offline and online sex crimes. First, online sexual grooming had relatively more victims than general sex crime and offline sexual grooming, and the offenders' ages were slightly younger in online sexual grooming. The age gap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was also narrower in online sexual grooming than in offline grooming and general sex crimes.

Out of the total 41 offline grooming offenders, 20 (47.6%) were married (remarried) or in a common-law relationship. This was a relatively high percentage than that of both online grooming, which had only 1 married offender (8.3%), and general sex crimes, which had 15 married offenders (27.8%). As for the offenders' occupation in each type of sex crimes, offline grooming offenders were more evenly spread among various types of employment while general sex offenders showed a relatively high percentage of unemployment (53.7%).

As for the duration of sex crime, a difference was noted among those 3 types of offenses. In terms of sex crime that went on for more than 2 days, offline grooming was clearly the most continuing type by means of misuse of personal trust and manipulation, while offline grooming had approximately 4 times more and online grooming had 3 times more cases than general sex crimes, respectively. Especially, in the cases of the long-term sex crimes which went on for more than 5 years, family or relatives of the victims were often the offenders. With the cases of sexual grooming alone, offline cases showed a higher percentage of relatively long-term grooming than online cases as 40.4% of the offline cases continued for more than 3 years' grooming process (more specifically, 19.0% of the cases continued for 3-5 years, and 21.4% continued for 5 years and longer), while 41.7% of online grooming continued for 1-3 months, in contrast. This indicates that offline grooming is likely to have the most lasting and damaging effects on the victims.

As for the persons cohabiting with the victims of each sex crime, while most of the offline grooming victims (86.1%) and general sex crime victims (91.5%)

were living with their family or relatives, 35.7% of online grooming victims were either a minor living alone or independently without any guardian, let alone family members, or a minor who had run away from home and was in a group living situation with peers. As for the victims' state of intoxication at the time of the crime committed against them, online grooming presented a relatively high percentage (26.7%). This is probably connected with the fact that the victims under this category were in many cases a runaway youth or a minor living apart from their family with no guardian. It further supports the argument, as O'Connell (2003) and Williams, Elliott, Beech (2013) noted, that children are more inclined to talk or establish an emotional connection with a stranger when there are no adults around to support and accept them in their lives. It can be also interpreted that juveniles such as teenage runaways who live without a guardian are potentially more vulnerable to online grooming.

The latent class analysis utilized by this study on the subject cases revealed that 2 latent classes tended to distinguish general sex crimes from sex crimes of grooming, and 4 latent classes not only distinguished general sex crimes from sex crimes of grooming, but also displayed different types of grooming in detail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selected the 4-class model and proceeded to analyze and designate the characteristics of sex crime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under each latent clas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4-class model analysis, in the [General Sex Crime Type] trust and confidence between the offenders and the victims were not observed, and in most cases the parties were strangers to each other. Moreover, the offenders rarely carried out the grooming steps although they recognized the victims' age of minority as vulnerability. In the sexual grooming cases, on the other hand, trust and confidence were commonly observed between the offenders and the victims, most of the grooming steps were carried out, and the majority of the parties were acquainted with each other, some of whom knew each other through internet.

To classify the types of grooming more in depth, in the [Typical Grooming Type] the victims were mostly interested in their career development (43.4%) and sexual curiosity (21.7%), followed by hobby, interest, and religion, etc. The majority of the offenders were working in the education field, such as schools/private academies/child-care centers (53.9%). The offenders under this type displayed the most typical grooming pattern as they carried out the 6 steps of grooming in the highest level. Moreover, they were capable of recognizing the needs of children and juveniles concerning sexual curiosity or career advice for future, and tended to target the most vulnerable groups of children and juveniles who were mentally challenged or exposed to loneliness and isolation.

The grooming cases in which the parties were mainly family members (75.3%) were designated as the [Quasi-Grooming Type]. In this category, the offenders often perceived neglect (17.4%), violence (8.7%), or mental disability (17.3%) as the victims' vulnerability. Also, the quasi-grooming offenders rarely recognized the victims' needs, and were not keen to establish a trusting relationship with their victims or try to meet the latter's needs compared to other types of grooming crime. Instead, the quasi-grooming offenders displayed a strong tendency to develop the relationship as a sexual one or keep it under control.

In the [Online Grooming Type], the offenders perceived running away from home (58.8%), poverty (49.3%), violence (17.4%), neglect (17.3%), and loneliness (11.8%) as the victims' vulnerability. Based on that, it is speculated that the offenders in this category targeted mainly children and/or adolescents who were experiencing economic difficulties or exposed to violence, neglect, or loneliness, etc. Also, the offenders in this category rarely recognized the victims' needs, while carrying out the steps of gaining trust of the child and/or juvenile victim and meeting their needs in high level. However, their tendency to develop the relationship as a sexual one, or keep it under control appeared relatively weak.

Through the examination of other countries' legislative cases and precedents

in which rules on the grooming-related criminal punishment were applied, the present study was able to confirm that in many countries grooming is criminalized as an adult's inappropriate approach to a child to engage in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child for sexual exploitation. Based on such findings, the present study proposed 2 methods to reduce the grooming of children and juveniles committed with a sexual intent. The first is to revise the current legislation in a manner to criminalize any contact with children by an adult for sexual purposes. Since current bills do not punish the act of sexual grooming itself, this study suggested to amend eith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o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have rules concerning punishment of grooming in place just as in the UK law. The second is to institutionalize the technique of decoy (or undercover investigation) with some restrictions, in order to detect sexual grooming of children and juveniles by potential offenders.

Many of the grooming cases that were examined in this study were of a long-term nature which continued for several years. Given that, eradicat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is likely to remain a remote possibility unless the process of 'grooming' that enables such continuing sexual violence and abuse is criminalized.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the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now take interests in conducting research and collecting relevant data on sexual grooming, based on which multidisciplinary and multi-agency cooperation should be further exercised to prepare comprehensive measures for investigation and persecution of grooming offenders, sentencing and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support for grooming victims, etc.

부 록

부록: 수사재판기록조사표

대상자 번호 _____ 조사자 ID _____		
※ 그루밍 사건여부: ①예 ②아니오 ③모호함(1회적 만남)		
I. 범죄개요		
1	사건번호(판결문기준)	연도 _____ 번호 _____
2	죄명1 (기소범죄명 기준)	_____
3	죄명2	_____
4	죄명3	_____
5	형량	_____년 _____개월
6	그루밍유형 (온오프라인)	①오프라인 그루밍 _____ ②온라인 그루밍 _____ ③온·오프라인 혼함(온라인에서 시작하여 오프라인으로 이어짐 등) _____
7	성폭력 사건발생지	①가해자의 집 ②피해자의 집 ③피해자 일하는 곳(일바생 등) ④학교 ⑤학원 (구체적 _____) ⑥기타 (구체적 _____)
8	가해자 성별	①남 ②여
9	가해자 연령(만)	_____ 세
10	판결(선고)과정	①1심: _____ ②2심: _____ ③3심: _____
11	최종판결	①무죄: _____ ②유죄: _____ (선고형량)
II. 사건개요		
○ 평소 가족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사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입		
12	본 사건에서 그루밍과정을 위해 사용된 방식 (중복 체크 가능)	① 피해자 고르기 · 욕구파악: 취미, 관심사, 진로, 종교, 성적 호기심, 기타 _____ (구체적 기입: _____) · 취약점 파악: 외로움, 가출, 빈곤, 지적 장애, 폭력, 방임, 저연령, 기타 _____ (구체적 기입: _____)

		<p>② 피해자 신뢰얻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 나누기: _____ ·친분 만들기: _____ ·기타: _____ <p>③ 욕구충족시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칭찬하기, 선물주기, 놀이공원에 데려가기, 기타 _____ (구체적 기입: _____) ·취미 공유: 게임정보 교환, 아이템 거래, 기타 _____ (구체적 기입: _____) ·성에 대한 정보 제공 (구체적 기입: _____) ·진로상담, 일자리 제공 (구체적 기입: _____)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용돈 제공 (구체적 기입: _____) ·기타: _____ (구체적 기입: _____) <p>④ 고립시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밀 만들기 (구체적 기입: _____) ·가해자에 대한 의존성 키우기 (구체적 기입: _____) ·기타: _____ (구체적 기입: _____) <p>⑤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정만들기: 신체사진 주고받기, 성적 대화 나누기 (구체적 기입: _____) ·학습시키기: 포르노그래피 보여주기, 일반화시키기, 연인간의 관계를 일반화 (구체적 기입: _____) ·훈련시키기: 성적인 행동에 익숙하게 함 (구체적 기입: _____) ·속이기: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안마하는 거야, 병원놀이 하는 거야 등 (구체적 기입: _____) ·기타: _____ (구체적 기입: _____) <p>⑥ 통제 유지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밀 유지 (구체적 기입: _____) ·조종하기(거부하지 못하게 하기) (구체적 기입: _____) ·체념시키기(이야기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거야, 네말을 믿지 않을거야 등) (구체적 기입: _____) ·협박하기(들 사이에 있던 일을 부모님께 이야기할거야) (구체적 기입: _____) ·의존성 강화 (구체적 기입: _____) ·기타: _____
--	--	--

		(구체적 기입: _____)
11	가해자 거주지	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농어촌 지역 ④도서산간지역
12	그루밍 지속기간 (기록 기준)	_____ 년 _____ 개월 _____ 일
13	성폭력 지속기간(기록 기준)	_____ 년 _____ 개월 _____ 일
14	범행당시 가해자 음주	①안함 ②음주 ③알수없음
15	범행당시 가해자 약물	①안함 ②약물사용 ③알수없음
16	피해자(아동·청소년) 유 발요인(가해자진술 기준 피해자와 성폭력 발생원 인 관련 해석이 다른 부분)	
III. 전과		
18	전과 이력	①있음 ②없음
19	범법횟수(현범죄 제외)	_____ 회 (유죄판결 기준)
20	주요 전과범죄명1	①살인 ②강도 ③폭력, 상해 ④성폭력/성매매 ⑤방화 ⑥사기/횡령 ⑦절도 ⑧재물손괴 ⑨음주운전/무면허/도로교통법 위반 ⑩기타 _____
21	주요 전과범죄명2	①살인 ②강도 ③폭력, 상해 ④성폭력/성매매 ⑤방화 ⑥사기/횡령 ⑦절도 ⑧재물손괴 ⑨음주운전/무면허/도로교통법 위반 ⑩기타 _____
22	주요 전과범죄명3	①살인 ②강도 ③폭력, 상해 ④성폭력/성매매 ⑤방화 ⑥사기/횡령 ⑦절도 ⑧재물손괴 ⑨음주운전/무면허/도로교통법 위반 ⑩기타 _____
23	주요 전과범죄명4	①살인 ②강도 ③폭력, 상해 ④성폭력/성매매 ⑤방화 ⑥사기/횡령 ⑦절도 ⑧재물손괴 ⑨음주운전/무면허/도로교통법 위반 ⑩기타 _____
24	주요 전과범죄명5	①살인 ②강도 ③폭력, 상해 ④성폭력/성매매 ⑤방화 ⑥사기/횡령 ⑦절도 ⑧재물손괴 ⑨음주운전/무면허/도로교통법 위반 ⑩기타 _____
25	최초 입건시 연령	_____ 세
26	성폭력 전력 여부 (기록 기준)	① 없음 ②있음(_____ 회)
27-1	성폭력 전력1	①기소유예(중지) ②벌금 ③집행유예 ④보호관찰 ⑤징역 ⑥알수없음
27-2	성폭력 전력2	①기소유예(중지) ②벌금 ③집행유예 ④보호관찰 ⑤징역 ⑥알수없음
27-3	성폭력 전력3	①기소유예(중지) ②벌금 ③집행유예 ④보호관찰 ⑤징역 ⑥알수없음
IV. 가해자 생활·환경 특성 (입소 전 기준)		
28	가족구성원 수 (가해자포함)	_____ 명
29	동거인 유형 (중복 가능)	①배우자 ②부모 형제 ④자녀 _____명 ⑤혼자 거주 ⑥알수없음

146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30	현재 혼인 상태	①미혼 ②결혼(재혼) ③동거 ④이혼(별거) ⑤사별 ⑥알수없음
31	이혼 경력	①없음 ②있음 (____ 회)
32	최종학력	①학교 다닌 적 없음 ②초졸 ③중졸 ④고졸 ⑤대재 혹은 대졸이상 ⑥알수없음
33	직업	①없음 ②있음(일용직 및 비정규직)_____ ③있음(정규직)_____ ④알수없음
34	월수입	①없음 ②100만원 미만 ③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④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⑤300만원 이상
34	가족의 생계책임자	①본인 ②배우자 ③부모 ④자녀 ⑤기타_____ ⑥알수없음
35	기소전 거주상태	①보호시설, 종교시설 ②고시원, 여관, 쪽방 ③아파트, 단독주택 등 전월세 ④본인 또는 가족소유의 집 ⑤친구 등 지인의 집 ⑦기타_____ ⑧알수없음
36	만성적 약물 혹은 음주 남용 여부	①없음 ②있음(종류:_____)
37	과거 정신질환력	①없음 ②진료경험 있음(병명:_____) ③입원경험 있음(병명:_____) ④알수없음
38	가해자 특이사항	
V. 피해자 (아동·청소년)		
38	피해자수	_____명
피해자 1(주 피해자)		
39-1	피해자 나이	_____세
40-1	피해자 학령	①초등학교 ()학년 ②중학교 ()학년 ③고등학교 ()학년
41-1	피해자 성별	①남 ②여
	피해자 가족구성형태(범 죄피해 당시)	①부모 동거 ②부 동거 ③모 동거 ④부모 모두 비동거일 경우 동거인_____
	피해자 부모로부터 학대 피해 경험 (학대: 신체적폭력, 성학대, 방임, 유기 등)	①학대 피해경험 없음 ____ ② 학대 피해경험 있음 ____ (구체적으로: _____) ③ 알 수 없음
	부모의 정신질환 유무 (자적장애 포함)	①없음 ②진료 혹은 입원 경험 있음(병명:_____) ③알수없음
	부모의 신체장애 여부	①없음 ②있음(구체적으로:_____) ③알 수 없음
	부모의 만성적 약물 혹은 음주 남용 유무	①없음 ②있음(종류:_____) ③알 수 없음
	가족의 경제적 상태	①상(가정형편이 부유함 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②중(맞벌이이거나 가정형편이 넉넉함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③하(일용직 외벌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형편이 어렵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42-1	피해자-가해자 관계 (가해자 입장)	①친자녀(손주) ②양자녀/동거애인의 자녀 ③형제/친척 ④친구/이웃의 아이 ⑤학원/학교/보육원생 ⑥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구체적_____) ⑦기타_____
43-1	피해이동과의 동거 여부	①동거 ②비동거 ③알수없음
44-1	피해 정도	①신체 피해 (전치____주) ②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③정신적 피해만 있음 ④사망
45-1	범행시 피해자 신체장애	①없음 ②있음(병명_____) ③알수없음
46-1	범행시 피해자 정신장애	①없음 ②있음(병명_____) ③알수없음
47-1	특이사항	
피해자 2		
39-2	피해자 나이	_____세
40-2	피해자 학령	①초등학교 ()학년 ②중학교 ()학년 ③고등학교 ()학년
41-2	피해자 성별	①남 ②여
	피해자 가족구성태(범 죄피해 당시)	①부모 동거 ②부 동거 ③모 동거 ④부모 모두 비동거일 경우 동거인_____
	피해자 부모로부터 학대 피해 경험 (학대: 신체적폭력, 성학대, 방임, 유기 등)	①학대 피해경험 없음 ____ ②학대 피해경험 있음 ____ (구체적으로: _____) ③알 수 없음
	부모의 정신질환 유무 (자적장애 포함)	①없음 ②진료 혹은 입원 경험 있음(병 명:_____) ③알 수 없음
	부모의 신체장애 여부	①없음 ②있음(구체적으로_____) ③알 수 없음
	부모의 만성적 약물 혹은 음주 남용 유무	①없음 ②있음(종류:_____) ③알 수 없음
	가족의 경제적 상태	①상(가정형편이 부유함 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②중(맞벌이이거나 가정형편이 넉넉함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③하(일용직 외벌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형편이 어렵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42-2	피해자-가해자 관계 (가해자 입장)	①친자녀(손주) ②양자녀/동거애인의 자녀 ③형제/친척 ④친구/이웃의 아이 ⑤학원/학교/보육원생 ⑥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구체적_____) ⑦기타_____
43-2	피해이동과의 동거 여부	①동거 ②비동거 ③알수없음
44-2	피해 정도	①신체 피해 (전치____주) ②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③정신적 피해만 있음 ④사망
45-2	범행시 피해자 신체장애	①없음 ②있음(병명_____) ③알수없음
46-2	범행시 피해자 정신장애	①없음 ②있음(병명_____) ③알수없음
47-2	특이사항	

148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피해자 3		
39-3	피해자 나이	_____세
40-3	피해자 학령	①초등학교 ()학년 ②중학교 ()학년 ③고등학교 ()학년
41-3	피해자 성별	①남 ②여
	피해자 가족구성형태 (범죄피해 당시)	①부모 동거 ②부 동거 ③모 동거 ④부모 모두 비동거일 경우 동거인_____
	피해자 부모로부터 학대 피해 경험 (학대: 신체적폭력, 성학대, 방임, 유기 등)	①학대 피해경험 없음 ____ ②학대 피해경험 있음 ____ (구체적으로: _____) ③알 수 없음
	부모의 정신질환 유무 (자적장애 포함)	①없음 ②진료 혹은 입원 경험 있음(병명: _____) ③알수없음
	부모의 신체장애 여부	①없음 ②있음(구체적으로 _____) ③알 수 없음
	부모의 만성적 약물 혹은 음주 남용 유무	①없음 ②있음(종류: _____) ③알 수 없음
	가족의 경제적 상태	①상(가정형편이 부유함 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②중(맞벌이이거나 가정형편이 넉넉함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③해(일용직 외벌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정형편이 어렵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42-3	피해자-가해자 관계 (가해자 입장)	①친자녀(손주) ②양자녀/동거애인의 자녀 ③형제/친척 ④친구/이웃의 아이 ⑤학원/학교/보육원생 ⑥온라인에서 맺어진 관계(구체적 _____) ⑦기타 _____
43-3	피해이동과의 동거 여부	①동거 ②비동거 ③알수없음
44-3	피해 정도	①신체 피해 (전치 _____ 주) ②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③정신적 피해만 있음 ④사망
45-3	범행시 피해자 신체장애	①없음 ②있음(병명 _____) ③알수없음
46-3	범행시 피해자 정신장애	①없음 ②있음(병명 _____) ③알수없음
47-3	특이사항	

연구총서 19-BB-04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그루밍(grooming)의 특성 및 대응방안 연구

발행 | 2019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한인섭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가 | 7,000원

인쇄 | (주)계문사 02-725-5216

I S B N | 979-11-89908-50-8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함.